
공개SW 라이선스 가이드

Open Source Software License Guide

2014. 03.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발간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박수용

그 어느때보다 IT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이미 모든 산업의 근간으로 IT 산업뿐만 아니라 국방·항공·보안·환경 등 모든 산업분야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서비스는 공개SW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고, 하둡이나 NoSQL은 빅데이터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지는 네트워크, SDN은 오픈플로우를 통해 현실화 되었으며,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역시 대표적인 공개SW입니다.

이처럼 공개SW 기반의 오픈 테크놀로지는 IT 업계에 혁신을 이루는 조력자(Enabler)로써 다양한 분야에 오픈 이노베이션을 이루는 혁신의 동력이 되어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저작권 문제입니다. 공개SW도 소프트웨어의 한 분류로 엄연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라이선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공개SW는 이제 더 이상 검토대상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를 이끌어 가는데 본 가이드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4년 3월 28일

요약문

공개SW 라이선스 가이드는 공개SW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개SW 라이선스를 준수하여 공개SW를 안전하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공개SW 라이선스 가이드는 공개SW 라이선스 개요, 공개SW 라이선스 이해, 공개SW 라이선스 위반사례,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공개SW 라이선스 개요에서는 공개SW 라이선스의 정의 및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의 필요성을 통하여 공개SW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개SW 라이선스 이해에서는 공개SW 라이선스의 의무사항, 2차적 저작물 재산권 확보 방안, 소스제공 및 고지의무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프로젝트 수행 시 공개SW 라이선스 준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개SW 라이선스 위반사례에서는 해외 및 국내의 라이선스 위반사례를 소개하였고,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에서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사례 및 방안을 소개하여 중소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서비스에서는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절차, 방법, 검증도구에 대해 소개 하였으며, 중소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무료 라이선스 검증 서비스에 대해 소개 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개SW의 성공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공개SW 라이선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품출시 이전에 라이선스 위반 여부를 라이선스 검증을 통해 확인하여야 향후 법적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공개SW 역량프라자 소개

신뢰성 있는 공개SW 발굴 및 활용체계를 마련하고 정보화 예산 심의 지원을 위해 5개의 전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역할>

◆ 공개SW 적용모델 수립

- 공개SW 수요 창출을 위한 공개SW 참조모델 수립 및 도입 컨설팅

◆ 우수 공개SW 발굴

- 공개SW 테스트 지원, 공개SW 기술참조모델 개발

◆ 안전한 공개SW 활용체계 마련

-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서비스 (검증/교육/컨설팅)

◆ 공개SW 지식 정보 제공

- 공개SW 포털 사이트(<http://www.oss.kr>), 기술세미나(Open Technet), 성공사례발굴 및 홍보, 공개SW 커뮤니티 지원

◆ 공공부문 공개SW 적용지원센터 운영

- 정보화 예산 심의 지원 (공개SW 도입 계획서 및 적용검토서 작성지원)

목 차

I. 공개SW 라이선스 개요	1
1. 공개SW란 무엇인가?	1
2. 공개SW 라이선스란 무엇인가?	1
II. 공개SW 라이선스 이해	7
1. 주요 공개SW 라이선스별 의무사항	7
2. 주요 공개SW 라이선스 비교	19
3. 공개SW의 양립성	24
4. 공개SW 라이선스의 의무사항 적용 범위	27
5. 듀얼 라이선스	27
6. 특허 조항 및 침해 유형	28
7. 공개SW 소스제공 및 고지의무 방법	31
III. 공개SW 라이선스 위반사례	36
1. 해외 위반사례	36
2. 국내 위반사례	44
3. FSF의 라이선스 위반 관리 절차	47

목 차

IV.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49
1.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49
2.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방안	51
3.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사례	55
V.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서비스	58
1. 공개SW 역량프라자 소개	58
2.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필요성	59
3.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절차	60
4.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방법	61
5.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도구	63

[붙임1]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결과 예시

[붙임2] FSF 재단의 GNU 라이선스 FAQ

[붙임3] 국내 공개SW 사용자 라이선스 FAQ

[붙임4] 주요 공개SW 라이선스 전문(한글 번역본)

I. 공개SW 라이선스 개요

1 공개SW란 무엇인가?

- (공개SW 정의)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수정, 재배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소프트웨어(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FOSS)¹⁾이다. 단, 공개SW에도 저작권이 존재하며 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림 I-1. 공개SW 정의]

2 공개SW 라이선스란 무엇인가?

공개SW 라이선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SW에 관한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R)과 라이선스(License)의 의미부터 이해해야 한다.

우선 SW는 SW에 관한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 받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저작권자만이 해당 SW에 대한 독점 사용 권리를 갖는다. 라이선스(License)는 이러한 독점 사용 권리에 대해 SW 개발자와 사용자간의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대역 규칙을 정의해 놓은 사용 허가권(License)으로 대역의 방법은 유료 및 무료로 구분된다.

상용SW 판매 시 SW에 포함되는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협정(End User License Agreement)을 대표적인 유료 사용 허가권(Proprietary

1) FOSS(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 자유SW와 오픈소스SW가 결합된 단어로 국내에서는 공개SW로 통칭한다.

License)으로 볼 수 있으며, 공개SW에 포함되어 배포되는 GPL, Apache 등의 라이선스가 대표적인 무료 사용 허가권(FOSS License)이다.

공개SW 라이선스는 1998년 공개SW의 활성화 및 인증을 관장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기관인 오픈소스 이니셔티브(Open Source Initiative, OSI)에서 제시한 10가지 의무사항(Open Source Definition, OSD)을 충족해야 한다.²⁾³⁾

[표 I-1. OSI에서 제시한 Open Source Definition(OSD)]

번호	의무사항
1	Free Redistribution : 공개SW는 자유롭게 재배포 할 수 있어야 한다.
2	Open the Source Code :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한다.(난독화 ⁴⁾ 금지)
3	Derived Works : 동일한 규정에 따라 2차 저작물의 배포를 허용하여야 한다.
4	Integrity of The Author's Source Code : 원 저작권자의 소스코드는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원 저작권자 정보 삭제 금지)
5	No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or Groups : 사용 대상을 차별할 수 없다.
6	No Discrimination Against Fields of Endeavor : 사용 분야를 차별 할 수 없다.
7	Distribution of License : 라이선스(전문)를 배포하여야 한다.
8	License Must Not Be Specific to a Product : 특정 제품에 의존성을 갖지 말아야 한다. (다른 제품에 사용 가능해야함)
9	License Must Not Restrict Other Software : 서로 다른 라이선스를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특정 라이선스 제한 금지)
10	License Must Be Technology-Neutral : 명시적 동의가 필요한 경우 특정 기술 및 인터페이스 스타일에 의존성을 갖지 말아야 한다.

※ 2014년 1월 현재 OSI(<http://www.opensource.org>)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한 공개SW 라이선스는 GPL, LGPL, Apache, BSD, MIT 등 약 70여개임

2) OSI의 인증을 받으면 OSI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3) OSI의 인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무료 사용(Loyalty Free)을 허락한 SW는 공개SW(Free and Open Source Software)로 볼 수 있다.

4) 소스코드 난독화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언어를 제 3자가 읽기 어렵게 만드는 작업을 지칭한다.

□ (지적재산권 정의) 지적재산권(IPR)은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으로 SW에 관한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첨단산업권(영업비밀) 등으로 구성된다.

※ 단,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공공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일정 보호기간이 지나면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⁵⁾으로 공공에 기여된다.

□ (저작권 정의) 저작권(copyright)이란 어문저작물(시, 소설, 논문 등), 음악저작물(노래 등), 연극저작물(연극, 무용, 무언극 등),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 저작물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즉, 어떤 프로그래머가 SW를 개발하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며, 그 권리가 부여된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위해 저작권법(법률 제9785호)에 의해 보호하고 있다.⁶⁾

□ (특허권 정의) 특허권(Patent)이란 발명을 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를 말하며, 발명이란 특허법(법률 제11117호)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허권은 저작권과는 달리 발명을 하면 자연적으로 부여되지 않으며 특허청에 특허출원하여 심사를 받고 설정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발생한다.⁷⁾

이상과 같이 저작권과 특허권은 발생시점, 내용, 효력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상세 비교는 [표 I-2]와 같다.

5)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 저작권이 없는(혹은 소멸된) 저작물을 지칭한다.

6) 저작권(Copyright)은 저작물의 창작 시점부터 창작자 사후 70년까지 권리를 보장한다.

7) 특허권(Patent)은 발명에 대한 특허 설정 등록 시점부터 20년간 권리를 보장한다.

[표 I-2. 저작권과 특허권의 비교]

	저작권	특허권
권리 발생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작과 동시에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출원하여 심사 통과 후 설정등록을 하였을 때 발생
권리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원 등)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
권리 존속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이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 (상표권 정의) 상표권(Trademark)이란 상표권자가 지정 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독점적인 권리로서, 상표란 상표법(법률 제11113호)에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상표권은 상표등록 출원하여 심사를 받고 설정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발생한다.

□ (영업비밀 정의) 영업비밀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12호)에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SW 분야에서 대표적인 영업비밀은 소스코드를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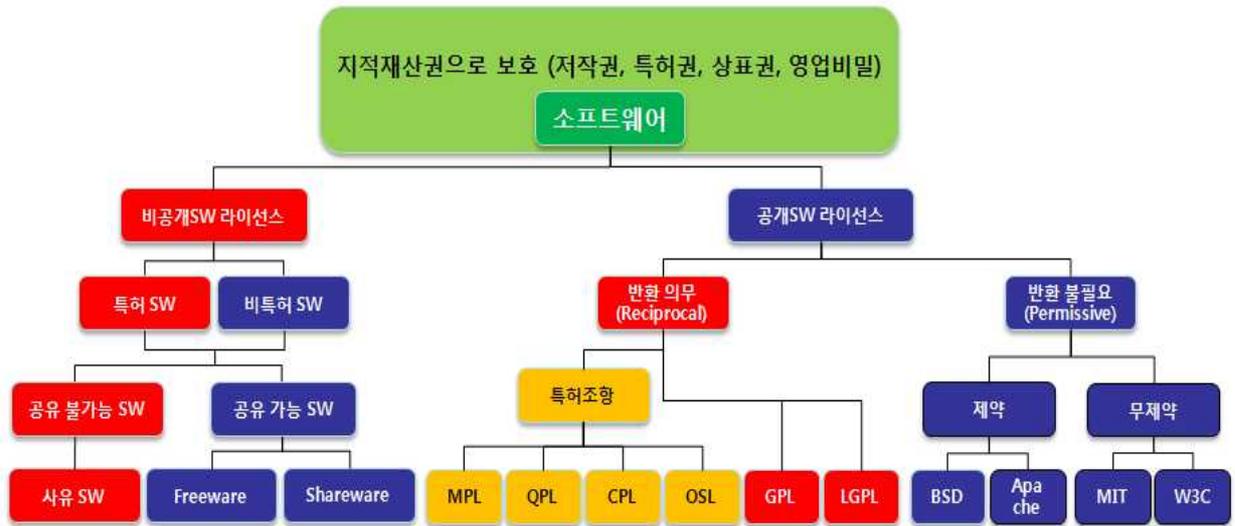
□ (라이선스 정의) 상기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라이선스(License)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 중 일부분(사용, 복제, 배포 등)을 일정내용의 조건으로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허가권이다. SW의 경우 SW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일정한 범위와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은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어 이를 위반할 때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라이선싱(Licensing, 사용허락계약)은 저작권자(Licensor, 라이선서)가 저작권 또는 특허권 자체는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계약기간 동안 일정한 지불조건(유·무상)으로 사용이 허가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한 제한된 권리를 제 3자(Licensee, 라이선시)에게 허락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즉, 라이선서가 가치 있는 상업적 자산권의 일정 영역을 라이선시에게 계약기간 동안 양도하는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SW는 저작권과 특허권으로 중복하여 보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동일 라이선스 내에 저작권과 특허권에 관한 사항을 함께 기재할 수 있다. 그림 [I-2]는 SW 개발단계에 따른 법적 보호범위를, 그림 [I-3]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범위와 SW 라이선스의 구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I-2. SW 개발 단계에 따른 법적 보호 범위]



[그림 I-3. 지적재산권의 보호범위와 SW 라이선스의 구분]

- (공개SW 라이선스 정의) 공개SW 라이선스란⁸⁾ 공개SW 개발자와 이용자 간의 사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공개SW를 이용하려면 공개SW 개발자가 만들어놓은 조건의 범위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라이선스 위반 및 저작권 침해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⁹⁾

8) 대표적인 공개SW 라이선스로는 GPL(GNU General Public License), LGPL(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Apache License,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License 등이 있다.

9) 반복하여 말하지만, 공개SW도 SW의 범주 안에 속하는 저작권법 보호대상이다.

II. 공개SW 라이선스 이해

1 주요 공개SW 라이선스별 의무사항

공개SW 라이선스는 소스코드 공개 의무 및 독점 SW와의 결합방식을 기준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표 [II-1]은 공개SW의 라이선스 유형을 설명하고 있다.

[표 II-1. 공개SW의 라이선스 유형]

free-for-all	원 저작물(original)에 대한 저작권 표시만 한다면, 자유롭게 독점SW와 결합이 가능한 유형의 라이선스
keep-on	독점 라이선스 등 다른 라이선스 조건하의 소스코드와 결합 가능하지만, 공개SW를 이용하여 만든 개작물은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유형의 라이선스
share-alike	원 저작물 및 개작 저작물 모두를 무조건 공개해야하는 유형의 라이선스

이상과 같은 공개SW의 분류는 각 공개SW 라이선스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요 공개SW 라이선스에 대해 알아보겠다.

□ GPL(GNU General Public License) 2.0

○ 주요 내용

- GPL 2.0은 현재 가장 많은 공개SW가 채택하고 있는 라이선스로 자유소프트웨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 FSF)¹⁰에서 만들고 배포하였다. 공개SW 라이선스들 중에서 의무사항이 매우 강력한 라이선스이다.
- GPL 2.0의 주요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 * 복제와 배포가 이루어 질 때는 본 허가서와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되었던 모든 내용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하며, 영문판 GPL 라이선스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 * 파일을 개작할 때는 파일을 개작한 사실, 내용 및 그 날짜 등을 파일 안에 명시해야 한다.
 - * SW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링크(Static과 Dynamic linking 모두)시키는 경우 GPL에 의해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한다.
 - * 프로그램의 일부를 본 허가서와 배포 기준이 다른 자유 프로그램과 함께 결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자신의 특허를 구현한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을 GPL 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없으며, 제3자의 특허를 구현한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가 GPL 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하여 특허사용료를 받지 않을 때에만 그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하는 것이 가능하다.

○ 저작권 표시 등 의무사항

-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배포한 사람에게 전자 메일과 서면으로 연락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GPL 2.0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본 제품 소프트웨어는 GPL 라이선스하에 배포된다.”와 같은 문구를 매뉴얼 혹은

10) 자유소프트웨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 FSF) : 리처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이 자유SW의 생산과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1985년 설립한 재단으로, 자유SW(GNU 프로젝트)의 개발뿐만 아니라 공개SW 라이선스를 개발 및 배포하여 공개SW 저변 확보에 힘쓰고 있다. GNU GPL 라이선스 등이 이 재단에서 제정한 대표적인 라이선스이다.

그에 준하는 매체(웹사이트, 프로그램 내부 등)에 포함시키고 GPL 전문(영문)을 첨부해야 한다.

- 소스코드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소스코드를 CD-ROM 등의 매체에 담아서 제품판매 시 함께 배포하거나 매뉴얼에 소스코드를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입하여두거나 혹은 FTP 서버, 웹서버 등에 소스코드를 업로드 해두고 매뉴얼에 해당주소를 기입해야 한다.
- GPL 2.0 라이선스를 보면 GPL 2.0으로 배포하는 경우 소스코드의 시작부분에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주석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 * 프로그램에 대한 이름과 용도를 한 줄 정도로 설명해야 한다.
 - ex) Define project name
 - * Copyright (C) 20yy년 <프로그램 저작자의 이름>
 - ex) Copyright (C) 2000, 2000-2007,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 * GPL 라이선스 내용 글을 유지해야 한다.
 - “이 프로그램은 자유소프트웨어이다. 소프트웨어의 피양도지는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GNU 일반 공중사용허가서 2판 또는 그 이후 판을 임의로 선택해서 그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작하거나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 “이 프로그램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서 배포되고 있지만 특정한 목적에 맞는 적합성 여부나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묵시적인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GNU 일반 공중사용허가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GNU 일반 공중사용허가서는 이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 된다. 만약 이문서가 누락되어 있다면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9 Temple Place - Suite 330, Boston, MA 02111-1307, USA)

-
-
- 각각의 파일에는 최소한 저작권을 명시한 행과 본 사용 허가서의 전체 내용을 참고할 수 있는 위치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 공개의 범위
 - GPL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개발 중인 프로그램 코드에 삽입하거나 링크 시켜 이를 배포하는 경우에 개발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도 공개해야 한다.
 - 다만 원본 프로그램과 별개의 독립된 프로그램을 GPL 프로그램과 같이 배포하는 경우에는 GPL 2.0이 아닌 다른 라이선스 조건에 의해 배포 할 수 있다.
 -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파생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독립된 프로그램의 단순한 집합물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 FSF는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GPL FAQ를 통하여 몇 가지의 구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상세 내용은 [붙임2] “FSF 재단의 GNU 라이선스 FAQ”를 참고하기 바란다.

※ 출처 : 상세내용은 붙임4의 GPL 2.0 라이선스 전문 참고

□ GPL(GNU General Public License) 3.0

○ 주요내용

- 기본적인 내용은 GPL 2.0과 비슷하지만 GPL 3.0에서는 DRM¹¹⁾ 관련 내용, 소프트웨어 특허문제, 양립성 문제 등이 추가되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GPL 3.0의 소스코드를 사용자 제품에 포함시키거나 혹은 그와 함께 배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스에 설치정보(Installation Information)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 * ‘설치정보(Installation Information)’란 소프트웨어를 수정하여 해당 제품에 설치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방법 (methods), 절차(procedures), 인증키(authorization keys) 혹은 여타 정보 모두를 의미한다.
 - * 다만 소프트웨어가 롬(ROM)에 설치된 경우처럼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나 여타 제 3자도 수정된 코드를 제품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 * 특허와 관련해서 원래의 소스코드를 개선하여 배포한 기여자의 경우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차별적이고 특허 사용료가 없다는 내용의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
 - * 특허와 관련해서 라이선스 등으로부터 특허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날에 특허소송을 제기한 라이선스의 공개SW 라이선스는 종료 된다.
 - *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고자 할 경우 기존에 만들어진 코드를 재사용하거나 결합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합되는 각 코드의 라이선스가 상호 상충되는 경우 같이 사용할 수 없다.

○ 저작권 표시 등 공개의 범위는 GPL 2.0과 같다.

※ 출처 : 상세내용은 붙임4의 GPL 3.0 라이선스 전문 참고

11)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 저작권자가 디지털 기술의 사용을 제어하고 의도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기술을 지칭한다.

□ LGPL(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2.1

○ 주요내용

- FSF에서 LGPL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공개SW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이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상용 라이브러리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공개SW 라이브러리에 GPL과 같은 엄격한 라이선스를 적용하게 되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SW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하기 때문에 상용SW 개발자들은 공개SW 라이브러리의 사용을 꺼려할 것이다.
- * 오히려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용라이브러리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공개SW 라이브러리를 LGPL로 배포하여 원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고, 이에 사용된 해당 공개SW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만 공개하게 함으로써 공개SW 라이브러리의 사용을 장려하고 사실상의 표준으로 유도하는 한편 관련된 다른 공개SW를 보다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LGPL은 '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였으나, 'Library'란 단어가 라이선스 이름에 포함되어 개발자들이 모든 라이브러리를 위한 라이선스로 오인하는 경향이 있었다.
- 이러한 오해는 일부 한정된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만 LGPL을 사용하려는 것이 FSF의 의도와는 맞지 않아 LGPL 버전 2.1에서는 이러한 오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Library'를 'Lesser'로 수정하였다.
-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 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L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 LGPL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 수정한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 공개해야 한다.
- LGPL 라이브러리에 응용프로그램을 링크시킴(Static과 Dynamic Linking 모두) 경우 해당 응용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

-
-
- 다만 사용자가 라이브러리 수정 후 동일한 실행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Static Linking시에는 응용프로그램의 Object Code를 제공해야 한다.
 - 특허의 경우 GPL과 동일하다.

○ 저작권 표시 등 의무사항

- 복제와 배포가 이루어 질 때는 본 허가서와 라이브러리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되었던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하며, 영문판 LGPL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 파일을 개작할 때는 파일을 개작한 사실과 그 날짜를 파일 안에 명시해야 한다.
- LGPL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파일을 개작할 경우 수정했다는 사실과 수정일자를 명시하여야 하고 라이브러리 전체를 다시 LGPL로 공개해야 한다.
-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본 허가서와 배포 기준이 다른 자유 프로그램과 함께 결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LGPL 라이선스의 예는 아래와 같다.

* 라이브러리의 이름과 용도를 한줄 정도로 설명

· ex) Define Project name.

· This file is part of the GNU C Library.

* Copyright (C) 20yy년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이름>

· ex) Copyright (C) 2001, 2001-2005, 2003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 LGPL 라이선스 내용 글 유지

· “이 라이브러리는 자유소프트웨어이다. 소프트웨어의 피양도자는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GNU 약소 일반 공중사용허가서 2.1 판

또는 그 이후 판을 임의로 선택해서 그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작하거나 재배포 할 수 있다.”

- “이 라이브러리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서 배포되고 있지만 특정한 목적에 맞는 적합성 여부나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묵시적인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GNU 일반 공중사용허가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 “GNU 약소 일반 공중사용허가서는 이 라이브러리와 함께 제공된다. 만약 이 문서가 누락되어 있다면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9 Temple Place - Suite 330, Boston, MA 02111-1307, USA)

○ 공개의 범위

- 어떠한 경우에도 LGPL 소프트웨어 자체는 공개해야 하지만 LGPL 소프트웨어와 링크되는 부분의 소프트웨어 소스코드는 공개해야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LGPL 소프트웨어를 좀 더 선호하게 되었다.
- 사용여부 명시 등은 GPL과 동일하게 반영하면 되고 공개해야할 소스코드의 공개 역시 GPL과 동일한 방식을 이용하면 된다.
- LGPL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LGPL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프로그램, 다시 말해 링킹(linking)을 통해 LGPL 라이브러리와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 출처 : 상세내용은 붙임4의 LGPL 2.1 라이선스 전문 참고

□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License

○ 주요내용

- BSD 라이선스는 SW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공개SW 라이선스이다.
- BSD 라이선스의 허용범위가 넓은 이유는 BSD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프로젝트가 미국정부에서 제공한 재원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SW에 대한 대가를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미리 지불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만들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다.
- 따라서 BSD 라이선스의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도 새로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BSD가 아닌 다른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판매할 수 있다.
- SW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표시, 보증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 수정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상용SW에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다.

○ 저작권 표시 등 의무사항

- 소스코드를 재배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저작권표시와 문구 그리고 면책조항을 유지하여야만 한다.
 - * Copyright (c) <연도>, <소유권자> All rights reserved.
 - ex) Copyright (C) 2001, White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 *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한, 소스형식과 바이너리형식을 통한 재배포와 사용은 수정여부에 관계없이 허용된다.
 - 소스코드의 재배포는 위의 저작권표시와 여기 나열된 조건들, 그리고 아래의 보증부인 고지를 포함해야 한다.
 - 바이너리형식으로 재배포 할 때는 위의 저작권표시와 여기 나열된

조건들 그리고 아래의 보증부인 고지를 배포할 때 제공되는 문서 및 기타자료에 포함해야 한다.

- 사전에 서면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기관>의 이름이나 기여자의 이름이 본 SW에서 추출한 제품을 보증하거나 홍보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공개의 범위

- BSD 라이선스의 경우 의무사항만 준수한다면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 출처 : 상세내용은 붙임4의 BSD 라이선스 전문 참고

□ Apache License 2.0

○ 주요내용

- 아파치 라이선스는 아파치 웹서버를 포함한 아파치재단(ASF: Apache Software Foundation)의 모든 SW에 적용되는 라이선스로 BSD 라이선스와 비슷하여 소스코드 공개 등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Apache”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야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고 특허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BSD 라이선스보다는 좀 더 법적으로 완결된 내용을 담고 있다.
- 특히 아파치 라이선스 2.0은 특허를 주장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어 GPL 2.0으로 배포되는 코드와 결합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GPL 3.0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 아파치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코드가 GPL 3.0으로 배포되는 코드와 결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 수정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상용SW에 무제한 사용이 가능하다.

○ 저작권 표시 등 의무사항

- 아파치 라이선스로 만들어진 SW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표시와 보증 책임이 없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아파치 라이선스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Copyright [해당년도 [저작권소유자의 이름]

· ex) Copyright 1999-2004 The Apache Software Foundation.

* 이 프로그램은 아파치 라이선스2.0에 의해 라이선스 되었다.

* 당신은 이 라이선스에 따르지 않고 이 파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아래 사이트에서 라이선스의 복사본을 얻을 수 있다.

· <http://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 적용 가능한 법 또는 합의된 바에서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이 라이선스 하에서 배포될 소프트웨어는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어떠한 종류의 보증 또는 이용조건 없이 “합의된바”대로에 기초하여 배포되었다.

* 이 라이선스 하에서의 허가사항들과 제한사항들에 대해서는 특정언어의 라이선스를 참고하기 바란다.

※ 출처 : 상세내용은 붙임4의 Apache License 2.0 라이선스 전문 참고

2 주요 공개SW 라이선스 비교

□ (자주 사용되는 상위 20개 라이선스) 자주 사용되는 상위 20개 공개SW 라이선스는 아래 [표 II-2]와 같다.

[표 II-2. 자주 사용되는 공개SW 라이선스 Top 20]

Rank	라이선스 명	점유율
1.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 2.0	33%
2.	Apache License 2.0	13%
3.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 3.0	12%
4.	MIT License	11%
5.	BSD License 2.0(3-clause, New or Revised) License	7%
6.	Artistic License (Perl)	6%
7.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LGPL) 2.1	3%
8.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LGPL) 3.0	2%
9.	Eclipse Public License (EPL)	1%
10.	Code Project Open 1.02 License	1%
11.	Microsoft Public License (Ms-PL)	1%
12.	Mozilla Public License (MPL) 1.1	< 1%
13.	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 (CDDL)	< 1%
14.	BSD 2-clause "Simplified" or "FreeBSD" License	< 1%
15.	Common Public License (CPL)	< 1%
16.	zlib/libpng License	< 1%
17.	Academic Free License	< 1%
18.	GNU Affero GPL v3	< 1%
19.	Microsoft Reciprocal License (Ms-RL)	< 1%
20.	Open Software License (OSL)	< 1%

※ 출처 : <http://osrc.blackducksoftware.com/data/licenses/>

□ (라이선스별 의무사항 비교) 표 [II-3]은 공개SW 라이선스별 복제, 배포, 수정, 저작권고지사항, 책임의 제한 등의 의무사항을 비교한 내용이다. 라이선스는 알파벳순 정렬이다.

[표 II-3. 공개SW 라이선스별 의무사항 비교]

라이선스의 주요내용 라이선스 종류	복제, 배포, 수정, 권허용	배포 시 라이선스 첨부	저작권 고지사항 또는 Attribution 고지사항 유시	배포 시 소스 코드 제공 의무와 범위	조합적 저작물 및 라이선스 적용	수시 정정용시 수내고	명시적 특허 라이선스 허용	라이선스가 허용하지 않는 라이선스 종류	이성상호에 한용한	보증 부인	책임 제한
Academic Free License		○	○		○	○	○	○	○	○	○
Adaptive Public License	○	○	○	모듈 단위	○	○	선택	선택	○	○	○
Affero GNU General Public License 3.0	○	○	○	네트워크 서비스 포함 전체 코드		○	○	○	○	○	○
Apache License 1.1	○		○		조건부				○	○	○
Apache License 2.0	○	○	○		○		○		○	○	○
Apple Public Source License	○	○	○	파일 단위	○	○	○	○	○	○	○
Artistic license 1.0	○		○			○			○	○	
Artistic License 2.0	○		○	○(표준버전)	○	○	○	○	○	○	○
Attribution Assurance Licenses	○	○	○		조건부				○	○	○
Boost Software License (BSL1.0)	○	○	○		조건부					○	○
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	○	○	○	파일 단위	○	○	○	○	○	○	○
Common Public Attribution License 1.0 (CPAL)	○	○	○	파일 단위	○	○	○	○		○	○
Common Public License 1.0	○	○	○	모듈 단위	○	○	○	○		○	○
Computer Associates Trusted Open Source License 1.1	○	○	○	모듈 단위 2차 저작물	○	○	○	○	○	○	○
CUA Office Public License Version 1.0	○	○	○	파일 단위	○	○	○	○	○	○	○
Eclipse Public License	○	○	○	모듈 단위	○	○	○	○		○	○
Educational Community License	○	○	○		조건부	○			○	○	○

Eiffel Forum License V1.0	○	○	○		조건부					○	○
Eiffel Forum License V2.0	○	○			조건부					○	○
Entessa Public License	○		○		조건부				○	○	○
EU DataGrid Software License	○		○		조건부				○	○	○
Fair License	○		○							○	
Frameworkx License	○		○	○		○				○	○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v2)	○	○	○	전체 코드	조건부					○	○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0 (GPLv3)	○	○	○	전체 코드		○	○	○		○	○
GNU Library or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LGPLv2)	○	○	○	2차 저작물	○	○				○	○
GNU Library or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0 (LGPLv3)	○	○	○	2차 저작물	○	○	○	○		○	○
Historical Permission Notice and Disclaimer	○		○		조건부					○	○
IBM Public License	○	○	○	모듈 단위	○	○	○	○		○	○
Intel Open Source License	○		○		조건부				○	○	○
ISC License	○	○	○		조건부		○	○	○	○	
Jabber Open Source License	○	○	○	파일 단위	○	○	○	○	○	○	○
Lucent Public License (Plan9)	○	○	○		○	○	○	○		○	○
Lucent Public License Version 1.02	○	○	○		○	○	○	○		○	○
Microsoft Public License (Ms-PL)	○	○	○		조건부		○	○	○	○	
Microsoft Reciprocal License (Ms-RL)	○	○	○	파일 단위	○		○	○	○	○	
MirOS License	○	○	○							○	○
MIT license	○	○	○		조건부					○	○
MITRE Collaborative Virtual Workspace License (CVW License)	○	○	○		조건부				○		

Motosoto License	○	○	○	파일 단위	○	○	○	○	○	○	○
Mozilla Public License 1.0 (MPL)	○	○	○	파일 단위	○	○	○	○		○	○
Mozilla Public License 1.1 (MPL)	○	○	○	파일 단위	○	○	○	○	○	○	○
Multics License	○		○						○		
NASA Open Source Agreement 1.3	○	○	○	2차 저작물	○	○	○		○	○	○
Naumen Public License	○		○		조건부				○	○	○
Nethack General Public License	○	○	○	○		○					
New and Simplified BSD licenses	○		○		조건부				○	○	○
Nokia Open Source License	○	○	○	파일 단위	○	○	○	○		○	○
Non-Profit Open Software License 3.0	○		○	2차 저작물		○	○	○	○	○	○
NTP License	○		○		조건부				○	○	
OCLC Research Public License 2.0	○		○	파일 단위	X		○	○	○	○	○
Open Software License	○		○	2차 저작물		○	○	○	○	○	○
PHP License	○		○		조건부				○	○	○
Python license (CNRI Python License)	○	○				○			○	○	○
Python Software Foundation License	○	○				○			○	○	○
RealNetworks Public Source License V1.0	○	○	○	파일 단위	○	○	○	○	○	○	○
Reciprocal Public License 1.0	○	○	○	파일 단위 2차 저작물		○	○	○	○	○	○
Reciprocal Public License 1.5 (RPL1.5)	○	○	○	파일 단위 2차 저작물		○	○	○	○	○	○
Ricoh Source Code Public License	○	○	○	파일 단위	○	○	○	○	○	○	○
Simple Public License 2.0	○	○	○	2차 저작물		○			○	○	○
Sleepycat License	○		○	동봉 SW						○	○
Sun Industry Standards Source License (SISSL)	○	○	○	파일 단위	○	○	○		○	○	○

Sun Public License	○	○	○	파일 단위	○	○	○	○	○	○	○
Sybase Open Watcom Public License 1.0	○	○	○	파일 단위	○	○	○	○	○	○	○
The Qt Public License (QPL)	○	○	○	○		○				○	○
University of Illinois/NCSA Open Source License	○		○		조건부					○	○
Vovida Software License v. 1.0	○		○		조건부					○	○
W3C License	○	○	○		조건부	○				○	○
wxWindows Library License	○	○	○	2차 저작물		○				○	○
X.Net License	○		○							○	○
zlib/libpng License	○	○	○		조건부	○				○	○
Zope Public License	○		○		조건부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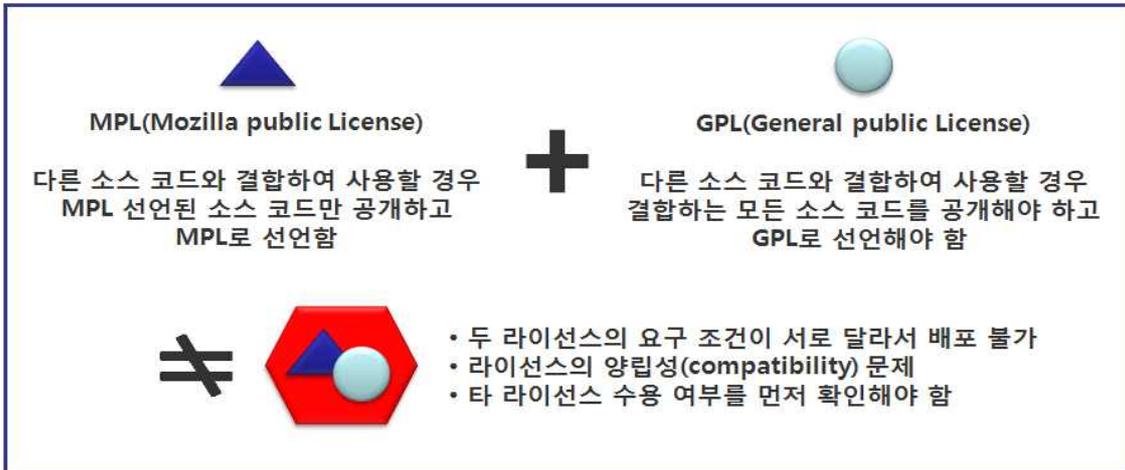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olis.or.kr/oss/license/compareGuide.do>)

○ 참고사항

- 기여자(contributor)의 범위에는 최초개발자도 포함한다.
- 배포에서의 상호주의(Reciprocity)란 라이선스 적용코드를 제3자에게 배포할 때 원 라이선스와 동일한 라이선스로 배포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말하며, 보통 Copyleft 조항이라고도 한다.
- 조합저작물(Larger Work)이란 라이선스 적용 코드 전체나 그 일부를 본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지 않는 코드와 결합한 저작물을 의미한다.
- 빈칸은 해당 라이선스에 명시적으로 언급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언급이 없더라도 묵시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란다.

3 공개SW 라이선스의 양립성

- (개요) 서로 다른 의무사항을 가진 공개SW 라이선스는 의무사항 충돌로 인해 양립(Compatibility)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공개SW 활용 시 주의해야 한다.



[그림 II-1. 공개SW 라이선스의 양립성]

- (GPL과 호환성 비교) 현재 공개SW 라이선스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라이선스는 GPL이다. 프로젝트 개발 시 GPL 라이선스와의 호환성만 검토하여도 상당부분의 라이선스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표 [II-4]는 주요 공개SW 라이선스와 GPL 라이선스의 호환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4. 주요 공개SW 라이선스의 GPL 호환성]

공개SW 라이선스	GPL 2.0 호환	GPL 3.0 호환
Academic Free License	No	No
Affero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0	No	Yes
Apache License version 1.0	No	No
Apache License version 1.1	No	No
Apache License version 2.0	No	Yes
Apple Public Source License version 1.x	No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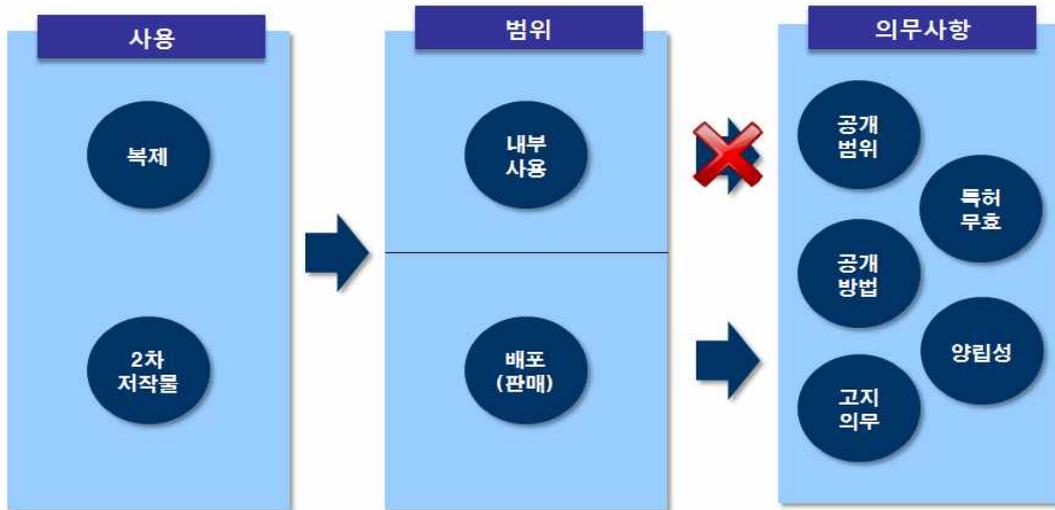
Apple Public Source License version 2.0	No	No
Artistic License 1.0	No	No
Clarified Artistic License (draft 2.0)	Yes	Yes
Artistic License 2.0	Yes	Yes
Berkeley Database License	Yes	Yes
original BSD license	No	No
modified BSD license	Yes	Yes
Boost Software License	Yes	Yes
CeCILL	Yes	Yes
Common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License	No	No
Common Public License	No	No
Creative Commons licenses (Tags: by &sa)	No	No
Creative Commons licenses (Tags: nc &nd)	No	No
Cryptix General License	Yes	Yes
Do What The Fuck You Want To Public License (WTFPL)	Yes	Yes
Eclipse Public License	No	No
Educational Community License	No	Yes
Eiffel Forum License version 2	Yes	Yes
Fair Licence	Yes	Yes
GNU General Public License 2.0	Yes	No
GNU General Public License 3.0	No	Yes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Yes	Yes
Hacktivismo Enhanced-Source Software License Agreement	No	No
IBM Public License	No	No
Intel Open Source License	Yes	Yes
ISC license	Yes	Yes
LaTeX Project Public License	No	No
Microsoft Public License	No	No
Microsoft Reciprocal License	No	No
MIT license	Yes	Yes

Mozilla Public License version 1.1	No	No
Mozilla Public License version 2.0	Yes	Yes
Netscape Public License	No	No
Open Software License	No	No
OpenSSL license	No	No
PHP License	No	No
POV-Ray-License	No	No
Python Software Foundation License 2.0.1, 2.1.1 and newer	Yes	Yes
Q Public License	No	No
Sun Industry Standards Source License	No	No
Sun Public License	No	No
W3C Software Notice and License	Yes	Yes
XFree86 1.1 License	No	Yes
zlib/libpng license	Yes	Yes
Zope Public License version 1.0	No	No
Zope Public License version 2.0	Yes	Yes

※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Comparison_of_free_software_licenses

4 공개SW 라이선스의 의무사항 적용 범위

공개SW는 사용 범위에 따라 의무사항 적용이 달라지는데, 내부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의무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외부에 배포 및 판매할 경우에 의무사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림 II-2. 공개SW 라이선스의 의무사항 적용 범위]

5 듀얼 라이선스

공개SW는 원래의 라이선스 외에 예외적 사용을 허용하는 듀얼 라이선스(Dual License) 정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자신이 개발하는 SW의 라이선스 정책에 유리한 라이선스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라이선스 정책이다.

- ※ 예를들어 ‘GPL or MIT’ 형식의 듀얼 라이선스는 해당 소스코드를 GPL로 가져오거나 MIT로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로, 자신이 개발하고 있는 SW가 상용SW 일 경우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는 MIT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 ‘GPL or Commercial’ 형식의 듀얼 라이선스는 Commercial 라이선스의 구입을 통해 GPL의 소스코드 공개 등 의무사항 적용 없이 상용SW에 포함할 수 있다.
- ※ 실 예로 MySQL은 GPL 2.0으로 배포되고 있으나, 상용SW에 MySQL(Connector 포함)을 포함할 경우에는 상용 라이선스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6 특허 조항 및 침해 유형

□ (특허 조항) GPL 3.0, Apache License 2.0 등 OSI에서 인증한 34개의 라이선스에는 상세한 특허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준수해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특허권에 대한 제 3자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용

- 특허가 있는 공개SW를 제 3자가 사용 시 비용부담 없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 GPL 3.0, Apache License 2.0, MPL 2.0 등

② 라이선시가 기여자 등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보복

- 특허가 있는 공개SW를 사용한 자에게 특허권자가 소송 제기 시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회수 및 그동안의 라이선스 사용 비용 청구 등 보복 조치를 진행한다.

※ GPL 3.0, MPL 2.0 등

③ 제 3자가 소유한 특허의 취급 확인

- 제 3자가 소유한 특허 사용 시 무상 제공 가능한 특허인지 확인해야 한다.

※ GPL 3.0 등

□ (특허 침해 유형) 공개SW는 원저작권자가 자신이 개발한 SW를 공개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의도치 않게 제 3자의 특허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공개SW 개발자(원 저작권자)가 어떤 라이선스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라이선스는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라이선스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다.

특히, 동종 분야의 SW 개발 시 SW의 알고리즘이 비슷해 질 수 있는데, 이러한 알고리즘을 선행 연구자가 특허권을 등록해 놓았을 경우 의도치 않게 특허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공개SW 라이선스는 소스코드의 제공 등 소스코드의 사용방법 및 범위를 규정한 사용허가권이며, 특허권은 SW 개발 시 활용한 알고리즘 등 이론적 발명에 발명자의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이다.

○ 라이선서(Licensor: 원저작권자)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¹²⁾

- 공개SW의 원저작권자가 특허권도 함께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각 공개SW 라이선스의 의무사항만 준수하면 된다.
- MPL 2.0, Apache License 2.0은 라이선서가 SW를 공개SW로 배포하는 경우 특허권도 무상으로 제공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 GPL 2.0과 LGPL 2.1은 이를 의무사항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GPL 3.0에서는 개발자 및 기여자가 자신이 기여한 부분과 관련된 특허가 있을 경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라이선시(Licensee:사용자)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 공개SW를 활용하여 개발하는 사용자(2차 저작물의 개발자)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공개SW를 사용하여 개작한 2차 저작물에 자신이 가진 특허를 활용했을 경우 이를 공개SW 라이선스 의무사항에 저촉되지 않게 제 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 만약 2차 저작물 개발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근거로 제 3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최초 참조했던 공개SW 라이선스 의무사항에 저촉되므로 라이선스를 종료시키고, 그동안 라이선스를 사용했던 기간, 이익 등을 산출하여 로열티를 부과하는 등의 특허 보복조항을 발동한다.¹³⁾

12) 그러나, GPL에 포함되어 무상으로 배포되는 특허라고 할지라도, 상용SW에 활용될 경우에는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상용SW에 사용할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된다.

13) Apache License 2.0, MPL 2.0, GPL 3.0 등이 비슷한 취지의 명시적 특허권리 허용조항을 가지고 있다.

○ 공개SW에 사용된 특허가 제 3자의 특허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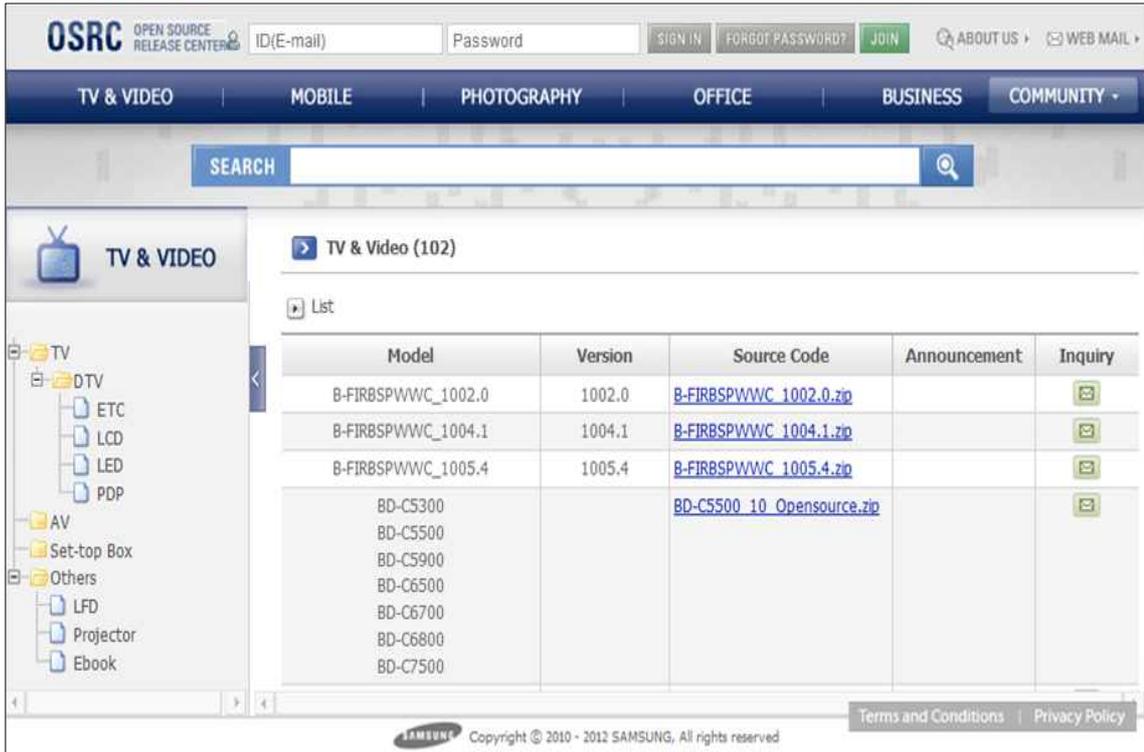
- 특허 소유자와 이를 SW로 구현한 주체가 다를 경우 SW를 구현한 주체 및 이를 활용한자는 특허권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¹⁴⁾
- GPL의 경우 특허 소유자가 무상(Loyalty Free) 조건으로 제공한 특허가 아닐 경우 이를 GPL SW 구현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 ※ 그러나, 이를 명시하지 않은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이로 인한 특허권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 ※ 또한, 제 3자 특허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의도치 않은 특허 침해에 해당 될 수 있으나, 이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 ※ 사실 특허는 대부분 표준 기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이므로 상용SW도 포함되는 문제이나, 공개SW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으므로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 비슷한 분야의 SW는 알고리즘에 유사성이 있을 수 있으며, 선행 연구자가 이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을 경우 특허 침해에 해당 할 수 있으나, 이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최근 들어 특허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 애플, MS, 구글 등의 특허권 침해 소송을 보면, 1차 승소 후 2차 패소하는 등 그 결과를 쉽게 판별하기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7 공개SW 소스코드 제공 및 고지의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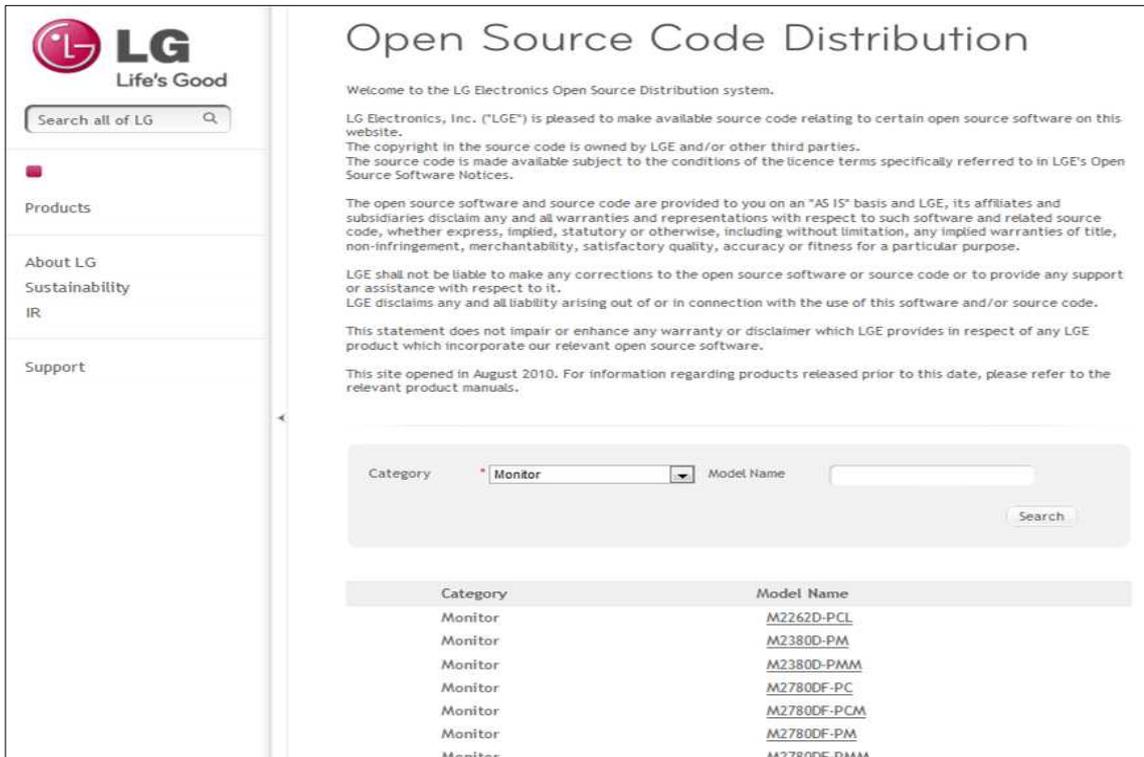
- (공개SW 소스코드 제공 방법) 공개SW는 라이선스 의무사항에 따라 소스코드 제공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소스코드 제공 방법은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과 웹사이트에 소스코드의 정보를 제공하고, 요청 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그 외에 CD,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별도의 공개SW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자사에서 개발하는 모든 제품에서 사용한 공개SW 소스코드를 제공하고 있다.
 - 사이트 주소 : <https://opensource.samsung.com/index.jsp>



[그림 II-3. 삼성전자 공개SW 웹사이트]

- (LG전자) LG전자 역시 별도의 공개SW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자사에서 개발하는 모든 제품에서 사용한 공개SW 소스코드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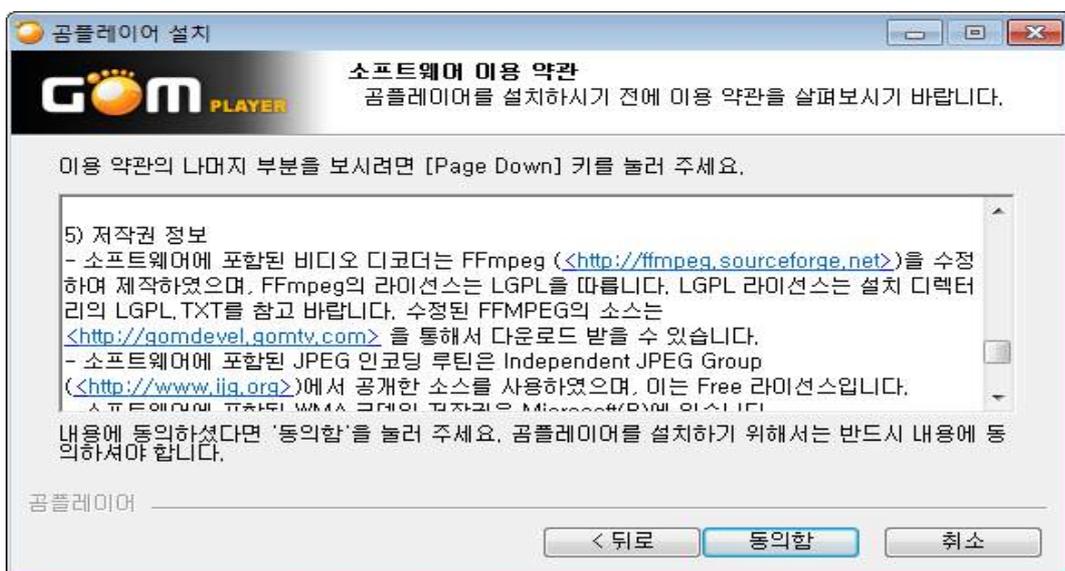
- 사이트 주소 : <http://www.lg.com/global/support/opensource/opensource.jsp>



[그림 II-5. LG전자 공개SW 웹사이트]

- (공개SW 라이선스 고지방법) 공개SW는 배포 시 고지의무가 발생하는데 저작권정보, 라이선스 정보 등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곰플레이어) 곰플레이어는 설치 시 아래와 같이 공개SW 라이선스 및 저작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비디오 디코더는 FFmpeg을 수정하여 제작하였으며, FFmpeg의 라이선스는 LGPL을 따릅니다. LGPL 라이선스는 설치 디렉터리의 LGPL.TXT를 참고 바랍니다. 수정된 FFMPEG의 소스는 <http://gomdevel.gomtv.com>을 통해서

-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JPEG 인코딩 루틴은 Independent JPEG Group (<http://www.ijg.org>)에서 공개한 소스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Free 라이선스입니다.
 -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WMA 코덱의 저작권은 Microsoft(R)에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에 사용된 zlib 압축 라이브러리는 <http://www.zlib.net>에 공개된 소스를 사용하였으며, 라이선스는 zlib License를 따릅니다.
 - 소프트웨어에 사용된 OGG(VORBIS) 라이브러리는 Xiph.org에서 공개한 소스(<http://www.vorbis.com>)를 사용하였으며, 라이선스는 'BSD-like license'를 따릅니다.
 - 소프트웨어의 설치 파일은 NSIS (<http://nsis.sourceforge.net>)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NSIS의 라이선스는 zlib License를 따릅니다.
 -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http://www.gretech.com>)에 있으며 관련법령 및 국제조약에 의해 보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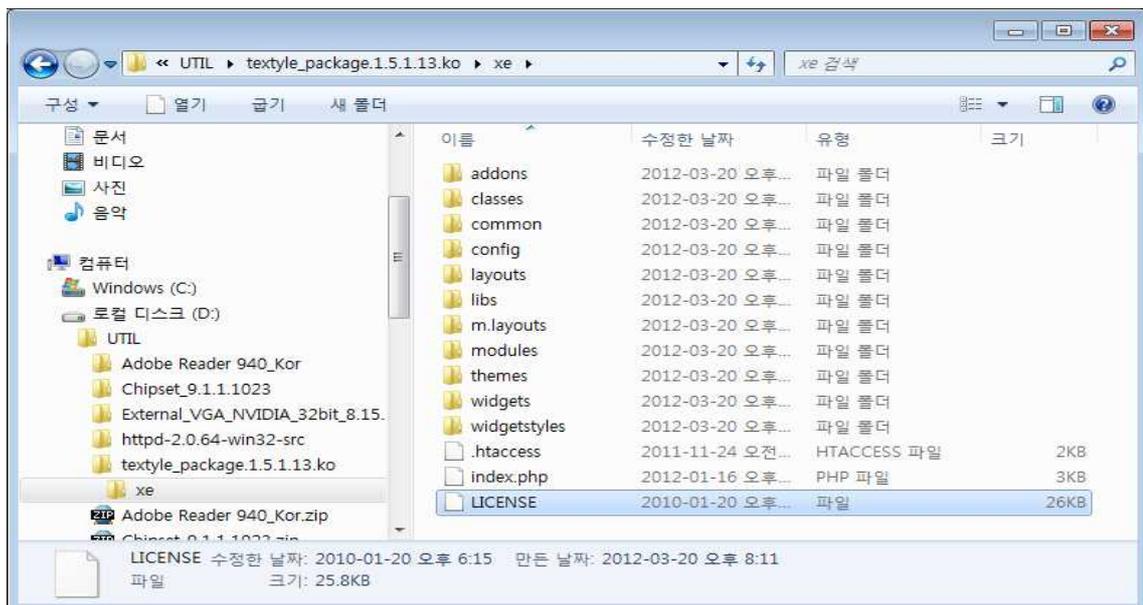
[그림 II-6. 곰플레이어 라이선스 고지 사례]

- (XpressEngine, XE) XE는 웹페이지에 간략한 공개SW 라이선스 정보를 고지하고 소스코드와 함께 상세 라이선스 전문을 제공하고 있다.
- 사이트 주소 : <http://www.xpressengine.com/>



[그림 II-7. XpressEngine 라이선스 고지 사례]

- 그림 [II-8]은 XE 소스코드 다운로드 시 함께 포함되어 있는 LICENSE 파일이다.



[그림 II-8. XE에서 제공하는 라이선스 파일]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전자정부프레임워크는 웹페이지에 라이선스 전문을 제공하고 있다.

- 사이트 주소 : <http://egovframe.go.kr>



[그림 II-9. 전자정부프레임워크 라이선스 고지 사례]

III. 공개SW 라이선스 위반사례

1 해외 위반사례

□ (Skype) Skype는 인터넷 전화인 P2P VoIP(voice over IP) 소프트웨어로 유명한 회사로 자사가 판매하는 SMC 네트워크 VoIP 전화기가 있다.

- (사건 개요) SMC 네트워크 VoIP 전화기에는 벨테(Welt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GPL 2.0으로 배포된 소프트웨어 2개를 포함한 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제품은 GPL 2.0의 요구조건인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GPL 라이선스 문구를 붙이지도 않았다. 이에 벨테는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 라이선스 위반으로 고소를 했다.

법원은 “송수화기의 제조업체는 SMC지만, 스카이프가 이 제품을 실제로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했으므로 라이선스 요건 충족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2007.7.29)

법원이 GPL 위반을 결정 내린 배경은 GPL 기반 제품은 유통할 때, 사용자들이 소스 코드를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해당 제품이 GPL 기반 제품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카이프는 모두 지키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Skype는 이번 결정으로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벌금도 지불했다. 금번 소송은 GPL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조직인 ‘gpl-violations.org’ 산하 독일지부에서 제기됐고 이 조직은 2005년에도 보안업체 포리넷(Forinet)가 GPL을 어겼다고 소송을 제기, 소스 코드를 공개토록 유도한 바 있다.

- (시사점) 이번 사례는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에도 GPL 위반 책임을 물었으며, 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GPL 위반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했다.

※ 출처 : <http://edri.org/edriagram/number5.15/gpl-skype-trial>

□ (Jacobsen v. Katzer)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인 Robert Jacobsen (이하 “Jacobesen”이라 함)은 공개SW 공동체인 JAVA Model Railroad Interface(이하 “JMRI”이라 함)를 운영하고 있다.

Jacobsen은 2000년 JMRI(Java Model Railroad Interface) 공개SW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Artistic 라이선스 1.0으로 배포하였다.

JMRI는 Java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프로젝트로, 개인용 PC에서 철도 레이아웃 모델을 컨트롤하기 위하여 개발된 SW이며, Perl 커뮤니티에서 모형 기차에 취미를 가진 사람들에게 널리 이용되었다.

○ (사건 개요) Matthew Katzer와 그의 회사인 KAMIND Associate가 모형기차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JMRI 프로젝트의 일부를 사용하였는데, JMRI에 적용된 Artistic 라이선스의 요구사항인 저작권 문구 및 고지사항 포함 등을 준수하지 않고 SW를 배포하였다.

결국, JMRI의 저작권자인 Jacobsen은 Katzer의 행위를 Artistic 라이선스의 위반 및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례이다. Artistic 라이선스는 별도의 금전적인 대가 없이 '사용, 복제, 수정, 배포'등을 허용하지만, 원본의 저작권 문구와 관련된 부인 조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등의 일부 요구사항이 존재하며, 이러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Artistic 라이선스로 배포된 SW의 수정 및 재배포를 허가하지 않는다.

Artistic 라이선스의 조건을 위반한채 JMRI를 이용한 행위가 저작권 위반이라는 Jacobsen의 주장에, Katzer는 JMRI 프로젝트의 일부를 이용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미 대중에 공개되어있는 소스코드를 이용한 것뿐이고 단지 저작권 문구 표시 등의 요구사항만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단순한 라이선스 조항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은 "사용, 복제, 수정, 배포를 허용하는 일반 허가로 배포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공개SW 라이선스는 그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하여 계약위반 외에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없으며 Artistic 라이선스의 준수사항은 단지 계약상의 규정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Katzer의 행위는 계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등법원의 항소심에서는 "Artistic 라이선스는 저작권 라이선스이며, 라이선스 요구사항은 이용허락을 받기 위한 조건이므로 요구사항의 불이행은 결국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Katzer의 공개SW 라이선스 위반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 (시사점) FSF(Free Software Foundation)의 법률 고문이자 SFLC (Software Freedom Law Center)의 의장인 Eben Moglen은 예전부터 "라이선스는 계약이 아니다(Licenses are not contracts)"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공개SW 라이선스 요구조건 불이행이 단순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에도 해당하며, 법적인 책임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번 판례와 일맥상통한다.

※ 출처 : 공개SW 라이선스 위반과 저작권 침해, 김병일, 2009, 계간 저작권

- (Bracken) Bracken社는 GNU/Linux 운영시스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판매하는 제품은 주로 OEM 벤더들에 판매되며 응용장치에 설치되어 인터넷 브라우징 역할을 하는 장치 같이 단일한 용도로 쓰인다.

Bracken社의 제품은 거의 100%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이며, 대부분 GPL이나 관련된 자유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따라 생산된 것이었다.

- (사건 개요) FSF는 Slashdot(뉴스제공 및 토론 사이트) comment에 게재된 리포트를 통해 위반내용을 인지하였으며, 이후 동일한 위반내용을 발견한 다른 자유소프트웨어 저작권자들로부터 통지를

받았다.

Bracken社의 GNU/Linux 상품은 웹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는 형식으로 배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한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

- 배포된 GNU/Linux 시스템의 많은 구성요소에 대한 소스코드나 소스코드를 요청하는 과정과 관련한 내용이 없었으며, 단순히 Binary만이 이용가능 하도록 되어 있었다.
- 최종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서는 GPL에 의해 승인된 허용범위와는 모순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FSF는 Bracken社에 자세한 위반내용을 전달하였고, Bracken社는 즉시 제품의 배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였다.

그리고 Bracken社는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으로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발표하였다.

- Bracken社의 대리인은 EULA를 GPL에 맞게 재작성할 것이며, 새로운 EULA의 이용 전 FSF를 통한 심사를 거친다.
 - Bracken社의 엔지니어들은 GNU/Linux 배포판에 관한 소스를 제공한다.
 - Bracken社의 대리인은 소스공개와 관련한 이러한 사태가 장래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GPL의 준수를 위한 내부세미나를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 Bracken社는 FSF가 공식적으로 당사의 배포권을 회복시킨 이후에만 상품의 배포를 재개한다.
- (시사점) 배포판과 일치하는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하며, 소스코드 제공 방법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출처 : <http://www.olis.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 (Davrik) Davrik社의 주요상품 중 하나는 특정 유형의 가전기기를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프로그래머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개발킷(Software Development Kit:SDK)이다.

- (사건 개요) FSF는 Davrik社의 SDK가 GNU Compiler Collection (FSF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C, C++ 및 기타 언어를 이용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툴의 집합)에 기초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보고를 받았고, GNU GCC와 명백하게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한 후, 위반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FSF의 Compliance Engineer는 보고자들이 표준테스트를 통해 위반내용을 확인 했는지의 여부와 Davrik社의 SDK가 사실상 GCC로부터 파생된 제품으로 확인되었는지를 문의했다.

Davrik社는 Windows와 연계하여 많은 기능을 추가했는데, 이 기능들에는 특정 소비자 장치의 칩셋을 지원하는 기능이나 그러한 특정장치에 대한 연결과정(the linking process: LP)을 보조하는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FSF는 GPL이 소비자들에게 부여한 권리에 대해 설명한 바 있는데, 그러한 권리란 예를 들자면 Davrik社는 Binary가 포함된 소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들 또한 그러한 소스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Davrik社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FSF는 이러한 문제를 Davrik社 측에 제기했으며, Davrik社는 이 문제를 그들의 법률대리인에게 전달했다.

긴 협상과정 이후 Davrik社는 자신들의 SDK가 사실상 GCC의 2차적 저작물임을 인정하였다.

Davrik社는 대부분의 소스를 공개했으나, LP가 GCC의 2차적 저작물인지에 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

그러나 반복된 FSF의 조사이후, Davrik社는 소스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FSF의 분석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LP가 GCC code-base로부터 카피된 상당량의 소스파일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소프트웨어의 완전한 공개가 있는 후, FSF는 위반사항을 보고했던 사람들에게 관련문제가 해결 되었는지를 문의했으며, 보고자들은 소스가 적절하게 빌드(build)되지 않았다고 회신했다.

FSF는 Davrik社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다 나은 빌드 명령어를 제공할 것과 그러한 설정 명령어가 이후의 소프트웨어 배포시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FSF의 요구사항에서는 또한, Davrik社측이 이전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웹사이트나 뉴스레터를 통해 현재 관련 소스들이 이용가능하다는 사실을 공지할 것을 요구했다.

Davrik社는 특허문제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소프트웨어의 배포시에 완전히 GPL에 의해 인정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특허권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표현을 담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특허권 주장이 GPL에 의해 인정되는 어떠한 권리에도 우월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 (시사점) 공개SW 소스 제공시 소스가 적절하게 빌드(Build)될 수 있도록 빌드 명령어를 제공해야 하며, 특허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공개SW 사용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활용해야 한다.

※ 출처 : <http://www.olis.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 (Vigorien) Vigorien社는 유닉스와 같은 컴퓨터 파일시스템의 암호화 백업 솔루션 상품을 배포하는 회사이다. 이 백업 솔루션은 표준 유닉스 유틸리티인 "tar"를 대체한 백업 유틸리티인 GNU tar에 기초한 상품으로서, 몇몇 추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Vigorien社의 백업 솔루션은 암호화 기능을 GNU tar에 추가했으며, 백업을 편리하도록 하기위한 유틸리티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었다.

○ (사건 개요) FSF는 이용자 리포트를 통해 위반내용을 인지하였으며, 추가된 암호화 기능은 단순히 GNU tar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제품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결정했다.

FSF는 Vigorien社에게 암호화 기능이 추가된 수정내용과 함께 GNU tar의 소스를 소비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GPL 규정의 준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Vigorien社는 GNU tar의 원소스는 공개했지만, 암호화 기능이 추가된 수정내용은 자신들의 재산권으로서 유보했다.

Vigorien社는 자신들의 시스템 보안의 문제는 소프트웨어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으며, 또한, USA 수출제한 규정에서 암호화된 소프트웨어가 공개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FSF는 그들의 첫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Vigorien社가 소스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오직 하나의 방법 외에는 해결책이 없으며, 그것은 GNU tar를 소프트웨어상에서 제거하고 이후에도 더 이상 그것을 배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Vigorien社는 GNU tar가 제품에 일체로 결합된 부분이어서 GNU tar가 없이는 보안성과 관련한 수정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제안을 거절했다.

두번째 수출규제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FSF는 그러한 규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Vigorien社의 해외지사에게 공개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으나, Vigorien社는 자신들이 주로 미국내에서 운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두번째 문제에 대한 교착상태는 암호화와 관련한 수출규제가 해제되면서 해결되게 되었다.

또한, FSF는 재차 Vigorien社측에 첫번째 문제를 제기하였고, 결국 Vigorien社는 자신들의 주장을 철회하였고, 나머지 소스 모듈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하기로 동의하였다.

Vigorien社는 FSF의 모든 요구사항을 반영하였고, 분쟁은 해소되었다.

- (시사점) 공개SW를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개발시 원소스 및 변경소스 모두를 공개 하여야 하며, 소스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는 원소스 자체를 모두 제거하고 다시 개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사용 라이선스를 정하고 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 출처 : <http://www.olis.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2 국내 위반사례

□ (엘림넷 & 하이온넷) 국내 최초의 GPL 라이선스 관련 소송 사건으로 경쟁사간 법정 소송입니다.

- (사건 개요) H씨는 엘림넷 재직 당시 엘림넷의 VPN 서비스와 고객용 장비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ETUN을 개발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VTun(<http://vtun.sourceforge.net/>)이라는 GPL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100% 그대로 원용하고 여기에 일부 기능을 추가시킨 것입니다. 엘림넷은 ETUN을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로 홍보하며 2004년 4월부터 사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H씨는 엘림넷 퇴사 후 HnP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ETUN을 개량한 HL을 개발하였으며, 엘림넷과 동종의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 하이온넷 측에 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HnP와 하이온넷은 HL이 GPL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을 숨긴채 이를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처럼 홍보하며 2005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05년 3월, 엘림넷은 자사 직원 10여명을 영입해 사업을 시작한 H씨와 하이온넷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추가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시켰습니다.

2005년 7월 중순, ETUN이 GPL 소프트웨어이므로 이에 따른 독점적인 권리 및 영업비밀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는 H의 요청이 자유소프트웨어재단과 이의 한국내 대리인 GNU Korea 앞으로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과 GNU Korea는 ETUN과 HL에 대해 계속되고 있는 양측 모두의 GPL 위반을 조건없이 즉각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였고, GPL 준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VTun의 원저작권자 Maxim Krasnyansky와 함께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대응에 착수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밝히며 본 소송에 직접 개입하였습니다.

- (시사점) 법원 결과와 관련 없이 양사 모두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으며, 사건의 핵심 솔루션에 대한 소스가 GPL임을 인정하고, 엘림넷과 하이온넷은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였고 GPL 규정에 따라 2006년 11월 1일 웹사이트(<http://etun.kldp.net/projects/etun>)에 소스코드를 공개하였다.

※ 출처 : <http://kldp.org/node/55839>

□ (게임기 개발업체 A사) 국내 게임기 개발업체인 A사는 공개SW 소스코드를 활용해 개발한 휴대용 게임기를 유럽시장에 출시한 뒤 유럽의 한 공개SW 개발자 측으로부터 GPL을 준수하고 향후 GPL 미준수 시 벌금을 내라는 각서를 요구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사건 개요) A사는 당초 GPL에 따라 소스코드를 공개하면서 일부 추가개발 부분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 항의를 받은 뒤 이를 모두 공개했지만, 주석(사용한 모든 공개SW 소스코드의 이력을 명시한 것) 등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또 다시 개선을 요구받았다. 또 해당 게임기에 특정 소스코드 적용 여부를 파악하는데 투입된 조사비 명목의 비용청구도 받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공개SW를 사용하면 GPL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추가 개발한 SW의 소스코드나 정확한 주석 명시 등의 요구에는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지만, 문제를 제기한 개발자 측이 앞으로 GPL의 추가 위반(공개SW를 사용했음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을 경우 건당 벌금을 내라는 무리한 요구까지 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SW 개발자는 "외국의 공개SW 소스코드 개발자가 A사의 경우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예는 거의 없겠지만, 다른 국내 기업들도 공개SW를 활용하면서도 관련 라이선스 제도를 제대로 모르거나 크게 신경 쓰지 않아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저작권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 (시사점) 외국에서 개발된 공개SW 사용하여 출시된 제품을 외국 개발자가 직접 라이선스 위반을 제기 하였으며, 벌금 등의 요구사항이 있었다.

※ 출처 : 공개SW 라이선스 알보면 '큰코', 디지털타임스, 2006.06.14

□ (삼성전자, 휴맥스 등) SFLC(Software Freedom Law Center)는 오픈소스 개발자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로, 이번 소송은 리눅스 툴 패키지인 '비지박스(BusyBox)'의 개발자를 대신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 (사건 개요) SFLC는 소장을 통해 삼성전자, 휴맥스 등이 HDTV, 셋톱박스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비지박스'를 사용했지만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 'GPL 버전2' 라이선스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SFLC는 삼성전자의 LCD HDTV인 LN52A650와 LA26A450, 휴맥스의 HDTV DVR 제품인 'iCord HD' 등을 언급하며 여기에 사용된 소프트웨어(SW)의 소스코드 공개와 함께 이들 제품의 판매금지, 이익배분,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 (시사점) 개발 당사자가 아닌 감시단체(SFLC 등)가 대신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추후 개발 당사자가 아닌 감시단체로부터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을 통해 업계에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 출처 : <http://www.bloter.net/archives/22387>

3 FSF의 라이선스 위반 관리 절차

- (FSF 소개) FSF(Free Software Foundation)는 GNU 프로젝트에 의해 개발된 많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GNU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GPL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상담, 지도, 감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 (라이선스 위반 관리 절차) 라이선스 위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FSF는 이를 위반자에게 통지하고, 이들이 라이선스를 적절히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상세 절차는 Violation reports, Confirmation, Initial Contact, Compliance Work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 (Violation Reports) 이 단계에서는 3가지의 기본정보가 필요하며,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면 더 좋다고 한다. 3가지 기본정보는 Who, What, How이다.
 - (Who) 회사, 조직(단체) 또는 개인 등 누가 라이선스를 위반했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 (What) 라이선스 위반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 (How) 라이선스 어떤 요구조건을 위반 했고,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정보이다.
 - (Confirmation) 이 단계에서는 Violation Reports에서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배포시 라이선스를 포함하고 있는가? 제공되는 소스코드는 완전한가? 등과 같은 내용을 점검한 후 분명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 한다.
 - (Initial Contact) 위반 사항이 확실하면 위반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가장 먼저 E-Mail을 보내 라이선스 위반 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E-Mail로 진행이 안되면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진전이 없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 해결을 진행한다.

- (Compliance Work) 마지막 단계로 라이선스 위반자와 연락을 취해 라이선스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공유하고 실행한다. 최종적으로 조치사항 등에 대한 실행결과를 확인하고 종료한다.

※ 출처 : <http://www.fsf.org/licensing/compliance>

□ (GPL 라이선스 위반 확인 방법) FSF는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가 GPL (또는 LGPL 또는 GFDL) 위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배포판에 GPL 원문이 포함되어 있는가?
- GPL에 의해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가? GPL로 선언된 소프트웨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GPL에 의한 소프트웨어라는 인상을 줄만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가?
- 배포판에 소스 코드가 함께 제공되고 있는가?
- 배포판이 바이너리, 즉 실행 파일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네트워크를 통한 배포와 같이 별도의 방법으로 소스 코드를 제공한다는 명시적인 약속이 있는가?
- 제공되는 소스 코드가 완전한 형태이거나 GPL 이외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르는 모듈들과 함께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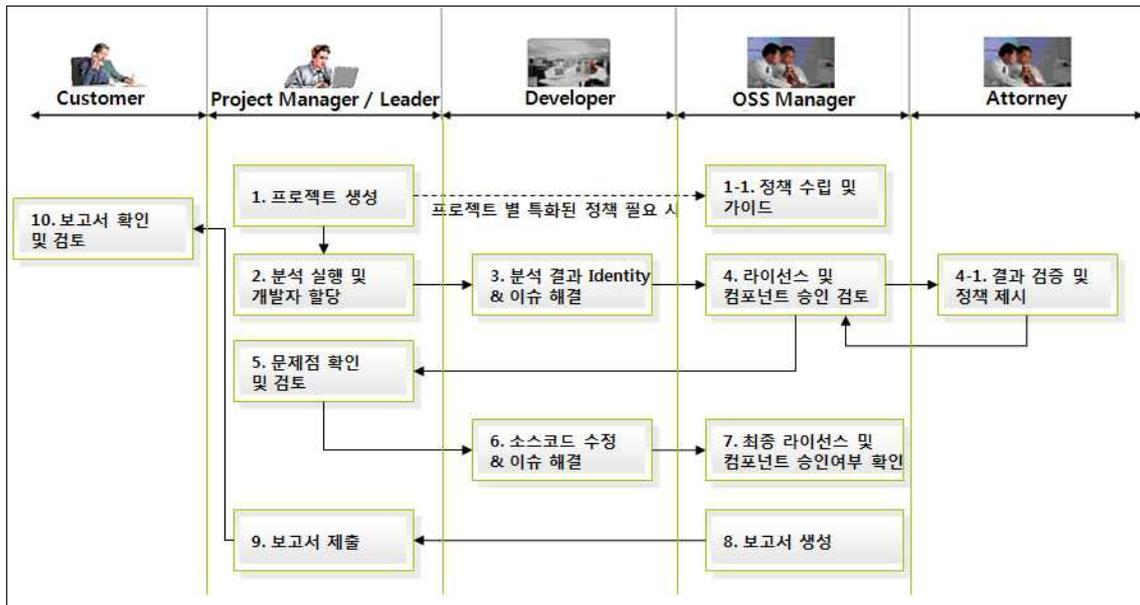
※ 출처 : <http://www.gnu.org/licenses/gpl-violation.html>

IV.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1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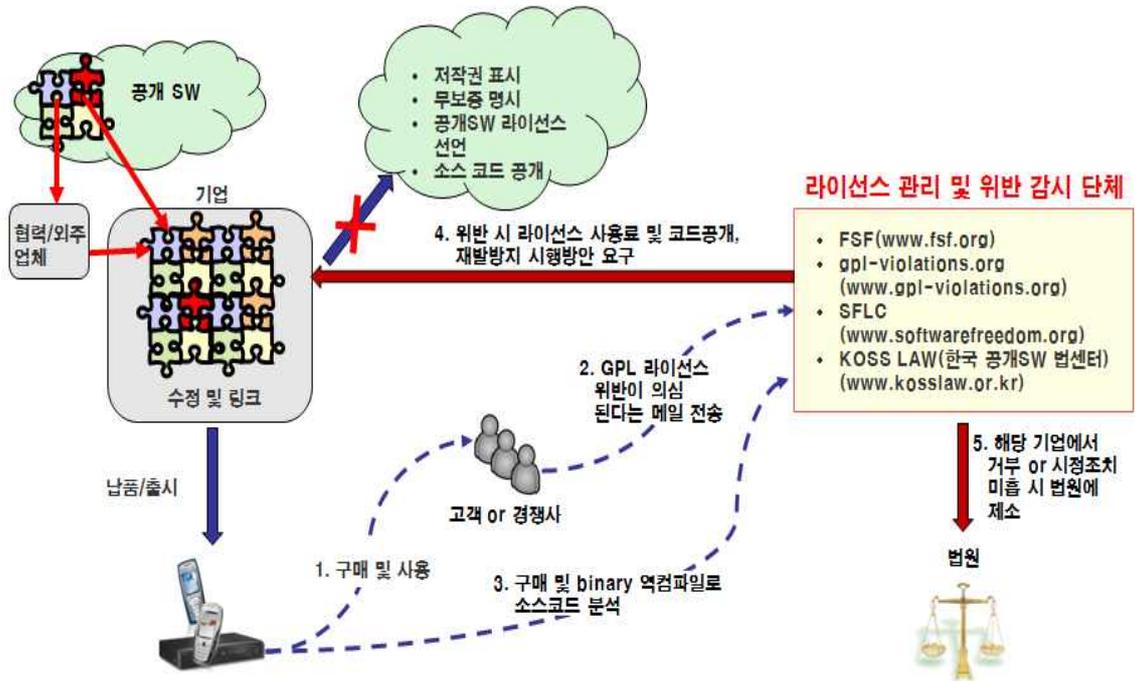
상기 위반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개SW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되는 SW이므로 이의 준수가 필요하나, 다양한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저작권 위반이 발생하기 쉽다. 그러므로 전담 관리조직의 구축 및 체계적인 라이선스 관리가 필요하다.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체계 구축은 공개SW 라이선스 정책의 미 준수 시 저작권법 위반에 따라 초래되는 위험성을 예방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한다.



[그림 IV-1.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프로세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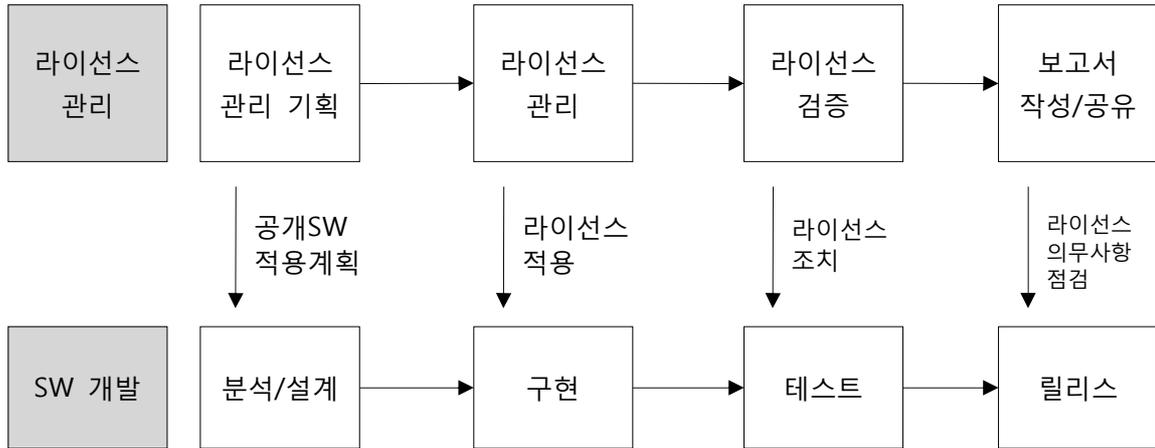
특히, 공개SW 라이선스 위반사항은 전 세계 공개SW 단체에 의해 모니터링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그림 IV-2. 공개SW 라이선스 위반 감시 단체]

2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방안

-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절차) 공개SW 라이선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관리 기획, 라이선스 관리, 라이선스 검증, 보고서 작성 및 공유의 단계를 거쳐 관리되어야 한다.



[그림 IV-3. 프로젝트에서 라이선스 관리 절차 예시]

- (라이선스 관리 기획) 공개SW 라이선스 관련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분석/설계 시점부터 이를 고려해야 한다.
 - 해당 프로젝트에 공개SW를 활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 지를 판단해야 한다.
 -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하는 공개SW를 사용할 경우에는 결과물의 소스코드 공개가 요구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Component별로 소스코드 공개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소프트웨어 구현 방법을 달리하여야 한다.
- (라이선스 관리) 자체 개발한 소스코드를 공개해도 무방한 경우는 특별히 구현 방법에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소스코드를 공개할 경우 회사보유의 지적재산권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 소스코드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는 사용하는 공개SW의 라이선스 의무사항과 활용하고자 하는 형태(Kernel, Application, Device Driver 등)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발생한다.
 -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라이선스 혹은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공개SW 역량프라자에서는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 라이선스 삭제 금지
 - 개발자는 공개SW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라이선스를 삭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거의 대부분의 공개SW의 경우에는 소스코드 시작부분에 해당 라이선스를 표시하고 있다.
 - 이러한 라이선스는 공개SW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검색을 통해 해당 공개SW의 사용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 라이선스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 공개SW 사용 목록 작성
 - 공개SW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개SW 사용목록을 작성하여 개발자에게 라이선스(법적인 문제) 이슈가 있음을 인식시킬 수 있으며, 향후 공개SW 사용으로 인한 라이선스(법적인 문제) 이슈가 발생했을 때도 해당 목록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다.
 - SW의 일부를 아웃소싱하는 경우 SW를 개발하는 업체에 대해 공개SW 사용목록을 작성하도록 해야 나중에 이로 인한 라이선스(법적인 문제) 이슈 발생 시 책임문제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 공개SW 라이선스 확인

- 일부 공개SW의 경우 라이선스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웹사이트(Github, Google Code Search, Freshmeat, SourceForge 등)나 소스코드(COPYING, README, LICENSE 등의 파일 또는 소스코드의 상위 코멘트에서 확인이 가능)를 이용하여 라이선스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소스코드와 공개SW 사용목록에 추가하여야 한다.

□ (라이선스 검증) 개발이 완료되면 개발 계획에는 없더라도 실제 구현과정에서 개발자가 검증 없이 사용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스코드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

- 간단한 스트링 검색(\$ grep -r 라이선스이름)으로 라이선스를 확인할 수 있지만 검증의 한계(개발자가 라이선스 삭제 등)와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 서로 다른 라이선스 조합 금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개SW 소스코드 간 결합 이슈 확인이 필요하다.
- 공개SW 소스코드 내 포함된 제품명, 상표명에 대한 중복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 구현 과정에서의 개발자 실수 또는 사용되었으나 고려되지 않은 공개SW가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 라이선스 검증 서비스를 활용하여 라이선스 검증도 가능하다.
 - 공개SW 역량프라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라이선스 검증이 가능하다.
 - 공개SW인 Fossology를 설치하여 직접 검증도 가능하다.
 - 검증 도구에 대한 설명은 본 가이드 V-5의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도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
-
- (보고서 작성/공유) 사용된 공개SW들을 라이선스별로 분류하고 각 라이선스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실제로 릴리즈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소스코드 공개 및 사용여부 명시 등은 릴리즈 단계에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다.
 - 소스코드 공개는 공개 의무가 발생하는 소스코드를 제품을 배포할 때 함께 배포한다거나(예: CD롬 등), 연락처를 기재하고 해당 연락처로 요청하게 한다거나, 혹은 별도의 웹사이트 등에 업로드 하여 두고 받아 가도록 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 사용여부 명시는 해당 의무가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을 사용자 매뉴얼 등에 기재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GPL, LGPL 등에서 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공개SW를 사용하였음을 고객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3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사례

□ (A사) A사의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프로세스는 [그림 IV-4]와 같으며 기획, 구현, 검증, 제품화, 라이선스 준수 강제화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림 IV-4. A사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절차]

○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단계별 상세 내용

- 기획단계

- * 3rd party 계약 및 체크리스트 전달
- * 공개S/W 활용여부 판단
- * 공개 라이선스별로 자체 IPR 공개의무를 최소화하는 S/W 구현 방법 설계

- 구현단계

- * 저작권 및 라이선스 문구 삭제 금지
- * 공개 라이선스 확인
- * 공개 사용 목록 작성

- 검증단계

- * Protex로 공개 검증
- * 시스템을 통한 관리(결합관리시스템, 소스관리시스템)

- 제품화단계

- * 공개 라이선스 문구 포함
- * 공개해야할 소스코드 취합

- 라이선스 준수 강제화 단계
 - * 매 프로세스 통과 기준
 - * 제품 양산 전 체크리스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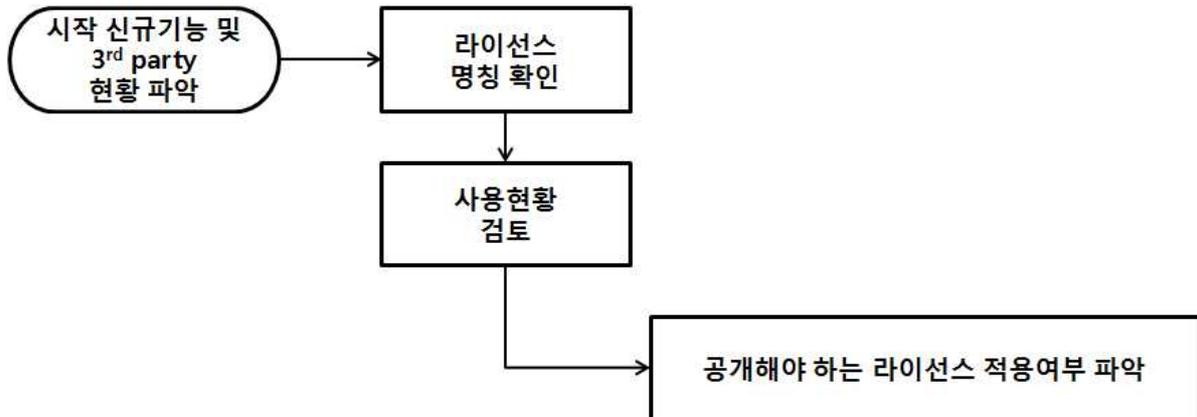
□ (B사) B사의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프로세스는 [그림 IV-5]와 같으며 기획, 구현, 검증, 제품화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림 IV-5. B사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절차]

○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단계별 상세 내용

- 기획단계
 - * 3rd party와 신규기능 등에 적용된 공개 파악



[그림 IV-6.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기획단계 절차]

- 구현단계
 - * 신규 공개S/W 선정 및 공개 라이선스 확인
 - * 파생물 공개 여부, 라이선스 호환성 및 대체 공개S/W 검토

- 검증단계

* 두 차례에 걸친 검증을 통해 최종 공개 소스 확정



[그림 IV-7. B사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 제품화단계

* 제품 매뉴얼 상에 공개 라이선스를 준수하고 있음을 명시

※ 출처 : OSS Compliance 핵심역량 구축 세미나

V.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서비스

1 공개SW 역량프라자 소개

- (공개SW 역량프라자 조직) 신뢰성 있는 공개SW 발굴 및 활용체계를 마련하고 정보화 예산 심의 지원을 위해 5개의 전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역할>

◆ 공개SW 적용모델 수립

- 공개SW 수요 창출을 위한 공개SW 참조모델 수립 및 도입 컨설팅

◆ 우수 공개SW 발굴

- 공개SW 테스트 지원, 공개SW 기술참조모델 개발

◆ 안전한 공개SW 활용체계 마련

-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서비스 (검증/교육/컨설팅)

◆ 공개SW 지식 정보 제공

- 공개SW 포털 사이트(<http://www.oss.kr>), 기술세미나(Open Technet), 성공사례발굴 및 홍보, 공개SW 커뮤니티 지원

◆ 공공부문 공개SW 적용지원센터 운영

- 정보화 예산 심의 지원 (공개SW 도입 계획서 및 적용검토서 작성지원)

2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필요성

- (라이선스 검증 필요성) 공개SW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여 사용이 증가하는 반면 공개SW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하여 공개SW 사용으로 법적분쟁 발생, 기업 이미지 하락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 공개SW도 저작권이 있으며 공개SW 라이선스별로 사용과 배포 등에 관련된 다양한 의무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을 통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라이선스 검증 효과)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을 통해 사업위험 감소, 생산성 증가(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의 상세효과는 아래 [표 V-1]과 같다.

[표 V-1.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효과]

사업위험 감소 측면	개발 생산성 증가(비용절감)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라이선스 검증을 통하여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선스 검증을 통하여 재사용 가능한 공개SW의 재사용으로 개발 생산성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기업이미지 손실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지적재산 관리 및 보호가 가능하여 수익창출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조치(또는 고소)로 인한 출시지연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된 표준 준수(de facto standard)에 따른 재개발 비용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철수, 리콜, 판매금지가처분, 손해배상 등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시점부터 체계적인 검증을 통한 라이선스 위반에 따른 재개발 비용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여 특정 SW에 대한 종속성 탈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프로그램에 내재된 원천 기술 습득이 가능하여 개발 생산성 증가

3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절차

□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절차) '신청 및 접수 > 분석 > 검증 > 검증보고서 > 컨설팅'의 절차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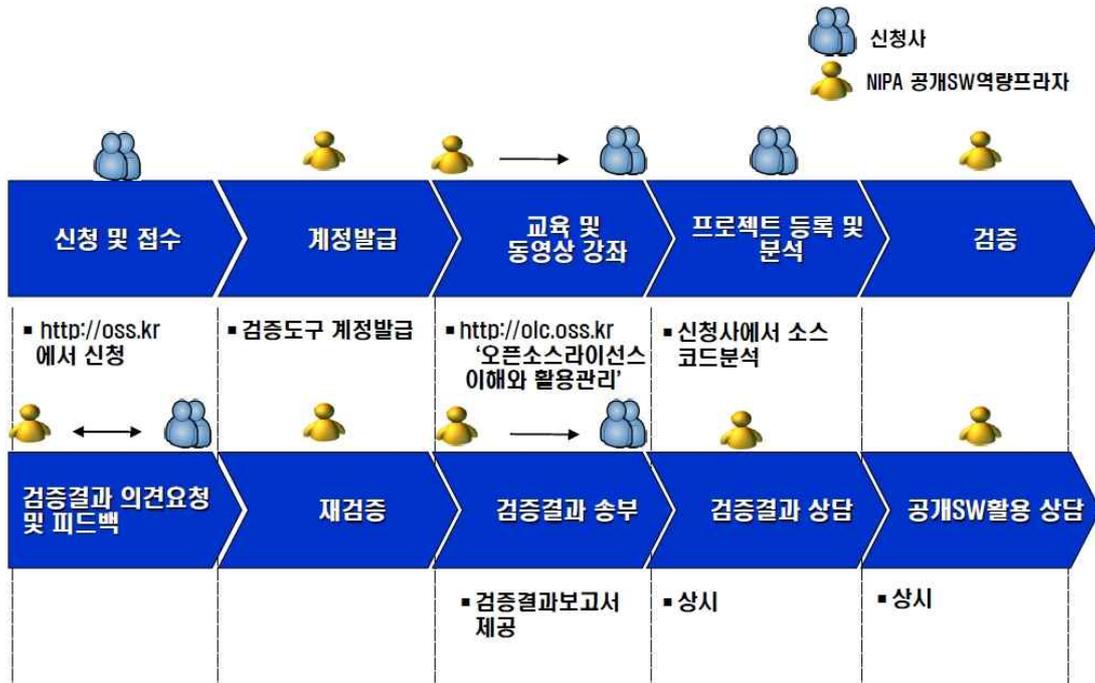
[그림 V-1. 라이선스 검증 진행 절차]

[표 V-2. 라이선스 검증 절차별 세부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서비스 대상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 3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개인, 대학 등 비영리 단체가 개발한 SW
신청	공개SW 포털사이트(http://www.oss.kr)를 통한 신청 및 접수
분석	라이선스 검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신청사의 해당 소스코드를 검증도구에 프로젝트를 생성하여 등록하는 과정
검증	분석된 프로젝트 소스코드에 대하여 해당 프로그램 개발 시 사용된 공개SW 컴포넌트 및 라이선스 현황을 식별하는 과정
검증보고서	프로젝트 구성요소 목록, 라이선스 충돌 현황, 검증 확인된 파일현황, 공개SW 라이선스 구성 비율 그리고 종합의견을 결과보고서로 제공
컨설팅	분석·검증과정에서 신청사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최종 산출물인 검증보고서를 제공하고 공개SW 라이선스 구성요소 목록과 준법성 이슈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상시적으로 공개SW 라이선스에 대한 활용 상담 수행

4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방법

-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방법) '라이선스 검증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며, 특히 검증결과에 대해 신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검증이 이루어진다.



[그림 V-2.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진행 방법]

- (계정 발급/프로젝트 등록 및 분석) 검증 신청사는 프로젝트를 등록하여 분석할 때 계정 발급형과 소스코드 제공형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표 V-3. 프로젝트 등록 방법 및 분석]

구분	내용
계정 발급형	계정을 발급받아 신청사에서 직접 소스코드를 업로드 하는 방식
소스코드 제공형	신청사에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방식

- (실무자 교육 및 동영상 강좌) 신청사의 검증업무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개SW 라이선스의 이해 및 프로젝트 등록과 분석 과정에 대한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웹사이트(<http://olc.oss.kr>)를 통하여 동영상 강좌도 제공한다.

[표 V-4. 실무자 교육 커리큘럼]

주요 내용	세부 내용
공개SW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SW 정의 및 특징
공개SW 라이선스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SW 라이선스 개요 및 특징 주요 라이선스 의무사항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SW 라이선스 위반 사례 공개SW 라이선스 충돌에 따른 개선 방안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 (의견 요청 및 피드백) 1차 검증 결과에 대하여 신청사에 의견을 요청하고 재검증이 필요한 경우 재검증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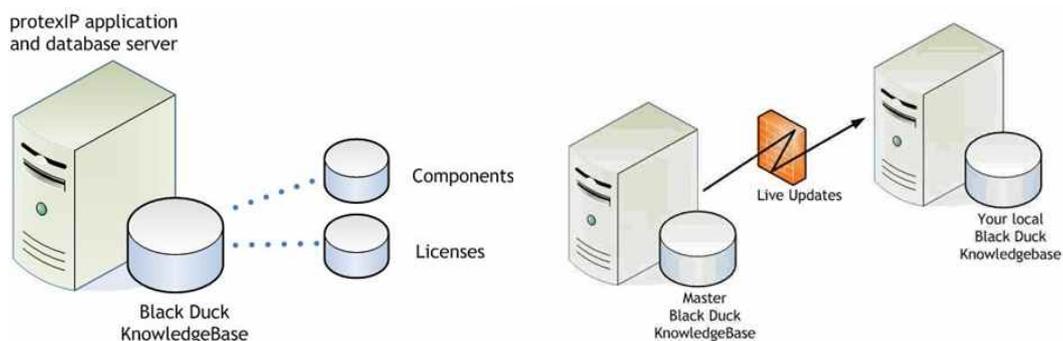
※ 최대 3회 검증

- (검증보고서 제공 및 컨설팅) 최종 산출물인 검증보고서를 제공하고 신청사의 요청 시 공개SW 라이선스 구성요소 목록과 준법성 이슈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상시적으로 공개SW 라이선스에 대한 활용 상담을 수행한다.

5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도구

- (검증도구 소개) 라이선스 검증 도구는 Protex, FOSSology 등이 있으며, 공개SW 역량프라자에서는 Protex와 FOSSology를 이용하여 라이선스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 (Protex™) 2002년 미국 Black Duck Software, Inc에서 개발한, 프로젝트 코드와 일치하는 공개SW 코드를 분석하여 검증하기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이며 공개SW DB인 KnowledgeBase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한다.

2,500개 이상의 공개SW 사이트와 1,000여개 벤더들을 통해 수집된 공개SW와 기타 소유권이 있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가진 광범위한 KnowledgeBase를 기반으로 바이너리 코드, 이미지, 폰트 등과 Java, C, C#, Visual Basic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언어로 개발된 소스코드들에 대한 분석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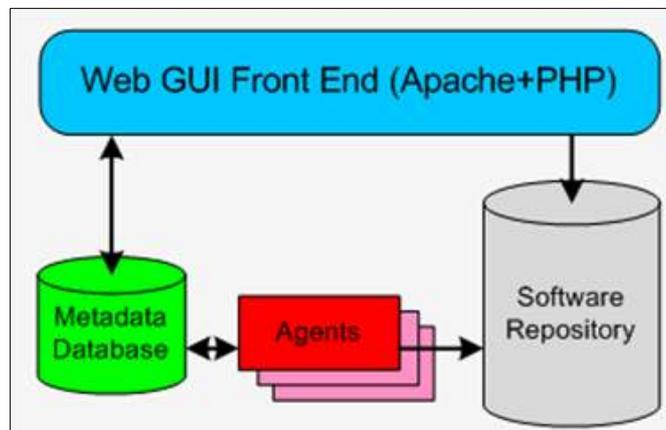


[그림 V-3. Protex 서비스 구조도]

-
- **(FOSSology)** 2007년 HP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공개SW 저장소인 소스포지(www.sourceforge.net)에 GPL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소스코드의 다운에서 이용까지 모든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파쉴로지(Fossology)는 소스코드 주석부분의 공개SW라이선스 관련 문자열 검색을 통해 공개SW 사용여부를 확인한다.

그러나, 개발자 임의로 주석 삭제 등이 있을 경우 공개SW 여부를 판별할 수 없으므로 신뢰성은 없다.



[그림 V-4. Fossology 서비스 구조도]

[붙임1] 공개SW 라이선스 검증결과 예시

□ 프로젝트 검증 개요

- 검증된 프로젝트명, 적용라이선스, 프로젝트 개요, 분석파일 수, 공개SW 파일 수(비율), 준법성 위반 파일 수(비율)등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명	Demo Sample Project
프로젝트 라이선스	Basic Proprietary Commercial License
분석 파일 수	145
분석된 바이트 수	36.2 MiB (37,919,613 bytes)
공개SW사용 파일 수	87 (60.00%)
준법성 위반 파일 수	26 (17.93%)

□ 프로젝트 구성요소 목록(Bill of Materials)

- 검증된 프로젝트의 전체 공개SW라이선스 사용현황 및 준법성 현황

1	준법성 현황	컴포넌트	버전	홈페이지	라이선스	6 결합형태	해당 파일수
2	N/A	My Project	1.0	www.nipa.or.kr/oss	GPL 2.0	Original Code	1457
3	프로젝트에 선언된 라이선스와 충돌	Apache Xerces Java XML Parser	2.4.0	http://xml.apache.org/xerces2-windex.html	Apache License Version 2.0	Component	1
4	충돌없음	JavaScript Vector Graphics Library	Unspecified	http://www.walterzorn.com/isgraphics/isgraphics_e.htm	MIT License V2	File	1
5	다른 컴포넌트 라이선스와 충돌	JavaScore - Regatta scoring for sailing	Unspecified	http://sourceforge.net/projects/javascore/	LGPL 2.0	Snippet	1

- ① 검증결과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공개SW목록으로 준법성 현황, 컴포넌트명, 버전, 등록 홈페이지 정보, 해당 라이선스, 검증 프로젝트에 결합 사용된 형태와 준법성 현황별 일치하는 파일 개수를 표시항목으로 구성

-
-
- ② 검증 프로젝트 상태를 표시하며, 프로젝트명(My Project), 버전 1.0, 프로젝트 등록 홈페이지 정보, 프로젝트 라이선스, 결합형태(Original Code는 공개SW가 아닌 순수 창작 코드를 말함), 해당 파일 1,457은 순수창작 코드가 1,457개임을 표시
 - ③ 검증결과 사용된 공개SW명세이며 해당 준법성(프로젝트에 선언된 라이선스와 충돌)은 프로젝트 라이선스인 GPL 2.0과 사용된 Apache License Version 2.0라이선스의 의무사항이 서로 배치됨을 표시
 - ④ 검증결과 사용된 공개SW명세이며 해당 준법성(충돌 없음)은 프로젝트 라이선스인 GPL 2.0과 사용된 MIT License V2의 의무사항이 상호 배치됨이 없음을 표시
 - ⑤ 검증결과 사용된 공개SW명세이며 해당 준법성(다른 컴포넌트 라이선스와 충돌)은 해당 공개SW라이선스인 LGPL 2.0이 프로젝트 라이선스인 GPL 2.0과는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상호 배치됨이 없으나 프로젝트에 구성되어 있는 다른 공개SW라이선스 의무사항과 상호 배치되어 동일한 프로젝트에 결합사용하는데 있어서 제약조건이 있음을 표시(상호 충돌되는 라이선스 및 코드는 라이선스 충돌 현황에서 확인)
 - ⑥ 동일한 공개SW컴포넌트를 사용하더라도 프로젝트의 결합형태에 따라 라이선스 의무사항에 대한 적용범위가 상이함으로 분석된 공개SW에 대해 개발자 피드백을 받아 결합형태를 반영(File 및 Snippet Match는 자동분석)

□ 라이선스 충돌(License Conflicts) 현황

- 프로젝트에 사용된 공개SW 컴포넌트 별 라이선스 사용에 대한 준법성 위반 의무사항을 확인

컴포넌트	버전	라이선스	충돌되는 컴포넌트	충돌되는 컴포넌트 버전	충돌되는 컴포넌트 라이선스	컴포넌트 의무사항	충돌되는 컴포넌트 의무사항
5 MY Project	104	GPL 2.0	Apache Xerces Java XML Parser	2.4.0	Apache License Version 2.0	코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제한을 들 자격이 없다	추가적인 제한이 있다.
6 zxing		Apache License Version 2.0	012		LGPL 3.0	추가적인 제한이 있다	코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제한을 들 자격이 없다

- ① 검증 프로젝트와 검증 프로젝트에 사용된 공개SW컴포넌트 내역(My Project, GPL 2.0과 Zxing, Apache 2.0이 사용되었음)
- ② 검증 프로젝트에 사용되었고 ①의 검증프로젝트 및 공개SW 컴포넌트와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충돌되는 공개SW컴포넌트 내역
- ③ ①번 검증프로젝트 및 공개SW컴포넌트에 적용된 라이선스 의무사항
- ④ ②번 충돌되는 공개SW컴포넌트에 적용된 라이선스 의무사항
- ⑤ 검증프로젝트와 직접 충돌 되는 공개SW컴포넌트와 라이선스 의무사항
- ⑥ 검증프로젝트에 사용된 공개SW컴포넌트 라이선스 간의 의무사항이 상호 배치되어 함께 결합하여 사용하는데 제약조건이 있는 공개SW 컴포넌트 내역

□ 검증 확인된 파일 현황

○ 검증 확인 및 식별된 공개SW가 사용된 파일 현황

1	2	3	4	5	6	7	8	9
File/Folder	Size	File Line	Total Lines	Component	Version	License	Usage	%
/smp-1.0.1/src/C GIHTTPServer.py	12714	1	363	Inkscape		GPL 2.0	Snippet	98%
/smp-1.0.1/src/m kpasswd.py	4247	28	45	Trac		Trac License	Snippet	27%

- ① 검증프로젝트 사용된 공개SW코드가 위치한 폴더 및 파일
- ② 해당 파일의 크기
- ③ 해당 파일에서 공개SW코드가 사용된 코드 시작 라인
- ④ 해당 파일에서 사용된 공개SW코드의 총 라인 수
- ⑤ 해당 파일에 사용된 공개SW컴포넌트명
- ⑥ 해당 파일에 사용된 공개SW버전
- ⑦ 해당 파일에 사용된 공개SW 라이선스스
- ⑧ 해당 파일에 사용된 공개SW의 결합형태
- ⑨ 해당 파일에 사용된 공개SW일치 비율

□ 프로젝트 검증분석 종합의견

- 전체 프로젝트의 폴더 및 파일별 검증 특이사항 및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코멘트

라이선스 의무사항		프로젝트 라이선스	총돌라이선스	
No.	의무사항 라이선스	Proprietary Commercial License	EPL 1.0	LGPL 2.1
1	배포권리(오브젝트/바이너리코드 배포)	X	X	X
2	배포(소스코드배포에 의해서만 부여되는 의무사항)	X	◎	◎
3	소스코드배포/강제적 공유 의무사항	X	X	◎
4	복제 권한 허용	X	X	◎
5	수정(개작)권한 허용	X	X	◎
6	역설계 권한 허용	X	X	◎
7	차별적 제한 금지 ○ or 차별적 제한 있음 ●	X	◎	◎
8	추가 복제에 대한 로열티 및 수수료 금지	X	◎	◎
9	특허보복(특허소송 제기시 라이선스 종료)	X	◎	X
10	명시적 특허라이선스(특허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X	◎	X
11	DRM금지	X	X	X
12	고지(특정법률 혹은 속성)	X	X	◎
13	변경사항 고지	X	◎	◎
14	변경사항에 대해 원저작자에게 사용허가	X	◎	X
15	다른사람을 대신한 보증의 부인	◎	◎	◎
16	다른사람의 책임의 제한	◎	◎	◎
17	배포/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원저작자의 클레임에 대한 배상	X	◎	X
18	배포시 라이선스 사본 포함	X	◎	◎
19	광고/홍보시 배포자,저작자, 특정상표사용 금지	X	X	X
20	원코드와 동일조건 허가	X	◎	◎
21	라이선스 확장 범위(공개범위)	X	모듈 (per EPL/CPL)	동적 라이브러리 (per LGPL)

종합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라이선스인 Proprietary Commercial License는 일반적인 상용 독점 라이선스로서 코드 공개를 허용하지 않고 사용자들로 하여금 해당 코드에 대한 수정 및 복제,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허용하지 않는 라이선스 임 • 본 프로젝트 분석결과 프로젝트 라이선스 정책과 충돌되는 공개SW 라이선스로서 EPL 1.0, LGPL 2.1 코드가 일부 복제 사용되었음 • EPL 1.0은 해당 공개SW 소스코드를 개작 사용할 시 해당 코드가 포함된 프로젝트의 소스코드를 모듈단위로 공개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요구하고 있으며, LGPL 2.1은 소스코드를 개작 사용할 시 모든 연결된 소스코드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음 • 또한 본 프로젝트에는 Apache License Version 2.0 코드가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사용자들에게 변경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 및 특허권리 포기과 같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함 • 따라서, 본 프로젝트를 상용 라이선스로 출시하기 위해서는 상기 충돌되는 공개SW 라이선스 코드를 삭제하거나 다른 코드로의 대체가 요구됨 • 다만, GPL 2.0 코드를 소켓, 리모트콜, 파이프 라인등과 같은 분리된 저작물의 형태로 결합사용하거나 LGPL 2.1코드를 개작없이 라이브러리 형태로 결합사용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소스코드 공개 의무사항은 발생되지 않음(이에 대한 내부 검토가 요구됨)
------	--

[붙임2] FSF 재단의 GNU 라이선스 FAQ

[질문] GNU 소프트웨어들은 모두 GNU GPL을 라이선스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답변] 대부분의 GNU 소프트웨어들은 GNU GPL을 사용하고 있지만, 몇몇 종류의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의 일부들은 GNU Lesser GPL과 같은 보다 유연한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위한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이중적인 라이선스 적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프로그램에 GPL을 적용하면 모두 GNU 소프트웨어가 되는 것입니까?

[답변] 누구나 자신의 프로그램을 GPL로 공표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GNU 패키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프로그램을 GNU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만든다는 것은 명시적으로 GNU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기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의 개발자와 GNU 프로젝트 양자가 서로 동의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을 GNU 프로젝트에 제공하고자 한다면 <maintainers@gnu.org> 앞으로 영문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메일의 경우에는 <maintainers@korea.gnu.org> 앞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질문] GPL이 사용자들에게 자신이 개작한 버전을 공표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자유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측면은 사용자들이 서로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버그를 수정하고 개선된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형태를 허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작된 버전은 프로그램의 원저작자에게 보내지도록 하는 규정을 GPL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합니다. 원저작자가 프로그램을 관리할 필요를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방법이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원저작자가 다른 일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다른 사용자들이 느끼는 필요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문제 이외에,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사용자들이 서로를 돕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용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버전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작된 버전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때때로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그러한 혼동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종류의 Emacs 변종 버전들이 GNU 프로젝트 외부에서 개발되어 졌지만, 사용자들은 그것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GPL은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개작할 때, 다른 버전을 만든 개발자들의 명성을 보호하고 다른 버전들이 서로 구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버전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GPL은 개작된 버전의 소스 코드를 공중(公衆,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까?

[답변] GPL은 개작된 버전 각각이 모두 공표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GPL 프로그램을 개작한 뒤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개작된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것은 개인뿐 아니라 단체나 법인, 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나 법인, 기업은 개작한 프로그램을 외부로 공표하지 않고 오직 내부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개작된 버전을 공표하고 있다면, 사용자들이 개작된 버전의 소스 코드를 GPL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GPL은 개작한 프로그램을 GPL이 규정한 방식에 따라서 공표할 수 있는 허가를 제공하는 것이며, 개작한 버전을 공표하느냐 마느냐는 여러분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질문] GPL 제3조 (b)항에 언급된 “제3자에게도 유효한 서면(written offer valid for any third party)”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전세계에 있는 누구에게도, 어떠한 GPL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그 소스 코드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답변] “제3자에게도 유효한”이라는 말의 의미는 서면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가 누가 되었든지 서면상의 약속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스 코드가 동반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상업적으로 배포한다면, 소스 코드를 별도로 제공할겠다는 약속이 명시된 서면을 함께 배포할 것을 GPL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용자가 그 프로그램을 비상업적으로 재배포할 경우에는 그들이 받은 서면을 복사해서 같이 배포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최초의 배포자인 여러분으로부터 프로그램을 직접 구입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소스를 제공할겠다는 약정서 또는 그 복사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소스 코드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면 약정서가 제3자에게도 유효하도록 하는 이유는 바이너리 프로그램을 간접적으로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최초의 상업 배포자에게 소스 코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 소스 코드 없이 바이너리만 배포할 경우, 소스 코드를 메일이나 서면 주문에 따라 제공하는 대신 단순히 FTP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답변] 만약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소스 코드를 물리적인 매체에 담아서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메일이나 서면 주문을 받았을 경우에 소스 코드를 보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메일 주문 방법에 덧붙여서 FTP를 통해서 사람들이 소스 코드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FTP를 통한 방법은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불 편리한 방법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FTP에 의한 방법이 충분히 편리하다면 메일을 통해서 소스 코드를 주문하는 방법을 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소스 코드를 발송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는 상업 배포자들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메일이나 서면을 통해서 소스 코드를 주문했다면, 배포자는 그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질문] GPL에 의하면 개작된 버전을 공표하게 되면 임의의 제3자 또는 공중에게 라이선스를 허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3자란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답변] GPL은 개작된 버전을 배포할 때 개작된 버전에 대한 라이선스를 임의의 제3자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의의 제3자(any third party) 또는 불특정 다수 또는 공중(公衆)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물리적으로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GPL에 의해서 배포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문] GPL은 돈을 벌기 위해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합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GPL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프로그램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의 일부입니다.

[질문] GPL은 소프트웨어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비용을 징수하거나 소프트웨어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형식을 허용합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요구 사항은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못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구했을 때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거나 그 사실을 통지해야만 한다면 그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GPL은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입니다. 따라서 GPL 소프트웨어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사용하거나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저는 제 저작물에 제 이름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제가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GPL을 사용해도 이러한 사항이 유효할 수 있습니까?

[답변] 영문으로 보통 credit으로 표시되는 성명 표기 사항은 여러분의 저작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법률상으로는 저작권법 제12조에 따른 성명표시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GPL은 모든 복제물에 적절한 저작권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왜 GPL 프로그램의 모든 복제물에 GPL 사본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까?

[답변] 저작물에 라이선스의 사본을 포함시키는 것은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취득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우 필수적인 일입니다. 라이선스를 포함시키는 것보다 라이선스를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상의 URL을 명기하는 것은 손쉬운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특정한 URL에 대해서 5년이나 10년 뒤까지 유효한 지속성을 보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년 뒤에는 현지점에서 유효한 URL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상의 변화에 무관하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취득한 사람들이 라이선스를 계속해서 읽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라이선스 사본을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질문] 저작물이 라이선스 문서 자체보다 작은 양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그러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상의 모든 권리를 허용한다는 언급을 담은 간단한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지면이나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GPL의 전문(preamble)이나 규정들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Appendix: How to apply these terms to your new programs) 부분을 생략해도 무방합니까?

[답변] 전문과 GPL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은 GPL 전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통합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생략될 수 없습니다. GPL 전체를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GPL 그 자체는 카피레프트가 아니라 저작권이 설정된 카피라이트이기 때문에 단지 GPL을 있는 그대로 복제하는 것만이 허용됩니다.

서문과 GPL 규정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이 설명된 부분은 5천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GPL 크기의 1/3에 조금 못 미치는 양입니다.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크기가 GPL 보다 작지 않은 경우에는 영향을 미칠 만한 크기는 아니며 만약, 그러한 경우에는 GNU GPL을 사용하기 보다 모든 권리를 허용한다는 간단한 언급을 담은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 두개의 라이선스가 호환(compatible)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답변] 두개의 프로그램이나 핵심 부분들을 결합해서 보다 큰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개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따른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두개의 프로그램에 대한 각각의 라이선스가 이러한 형태를 허용한다면 이들은 서로 호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개의 라이선스를 동시에 만족시킬 방법이 없다면, 이들은 서로 호환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정한 라이선스들은 프로그램 간의 결합이 이루어 지는 방식이 호환성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개의 모듈이 서로 링크되는 것은 허용하지만 이들을 하나의 모듈로 병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 어떤 라이선스가 GPL과 호환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답변] 어떤 라이선스가 GPL과 호환된다는 것은 GPL로 배포된 코드와 그렇지 않은 코드를 결합해서 보다 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GPL은 이러한 형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특정한 라이선스 또한 이러한 형태를 허용하고 있다면 해당 라이선스는 GPL과 호환되는 것입니다.

[질문]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GPL을 라이선스로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법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답변] 링크하려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GPL이 규정하는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링크하고자 하는 라이브러리가 독점 운영체제의 주요 구성요소로 함께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GPL 프로그램을 링크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예외의 하나로서 자신이 배포할 프로그램의 실행물에 컴파일러나 커널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실행될 운영체제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소스나 바이너리의 형태로) 운영체제와 함께 배포되는 부분들이 함께 포함되어 배포되지 않는 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소스코드는 배포할 소스 코드 안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무방하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라이브러리에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을 링크하고자 한다면, GPL에 덧붙여서 다음과 같은 형식의 예외 조항을 여러분이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C) yyyy년 <저작권자의 이름>

이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의 피양도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GNU General Public License의 규정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작된 2차적 프로그램과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서 배포되고 있지만 제품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GNU General Public License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NU General Public License는 이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됩니다. 만약 이 문서가 누락되어 있다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1 Franklin St, Fifth Floor, Boston, MA 02110-1301, USA

특별한 예외로, <저작권자의 이름>은 이 프로그램의 코드를 FOO 라이브러리나 FOO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FOO의 수정 버전과 링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두개가 링크된 형태로 함께 배포되는 것도 허용됩니다. FOO 라이브러리에 사용된 코드를 제외한 모든 코드들은 GNU General Public License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 파일을 수정하게 되면, 이 파일에 규정된 예외 조건들을 수정된 파일에 맞게 확장해야 될 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수정된 버전에서 예외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는 이 문구를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만이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이러한 예외 규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프로그램의 전부를 직접 만들었고 여러분의 고용주나 학교가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바로 저작권자이며 이러한 예외 규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GPL 프로그램의 일부를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에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 규정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GPL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들로부터 이러한 사항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외 규정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개작할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예외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외 규정이 추가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위와 같이 예외 규정을 추가하면 법률적인 문제는 없앨 수 있겠지만,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따른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자유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완벽하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프로그램이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라이브러리에 의존해야 한다면, 자유 소프트웨어 세계에서는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자유 라이브러리가 아닌 라이브러리가 있어야만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GNU와 같은 자유 운영체제에는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자유 세계를 제한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와 그러한

라이브러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는 없을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도록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상태라면, 아마도 결정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프로그램을 공표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 상태로 공표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README 파일 등에 자유 소프트웨어 대체물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포함시키고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라이브러리가 없어도 동일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항도 제안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tasks@gnu.org> 앞으로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라이브러리의 이름과 그 역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일한 기능을 가진 자유 라이브러리를 개발하도록 개발자들을 격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GPL에 따라 공표(公表 - 공개적으로 발표함) 하고자 하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바른 협약에 따라서 모든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저작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오지 않는한,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별도로 취해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10조 2항에 따라서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동일한 내용의 조항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미국내에서 저작권 분쟁이 일어날 경우, 보다 확실한 영향력을 갖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저작권에 대해서 누군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여러분이 학생이거나 피고용인이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학교나 고용자는 여러분이 피고용인의 신분으로 회사와 학교를 위해서 일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그들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착되는가의 여부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의 실정법과 근로 계약서 그리고 여러분이 한 일이 무엇인가와 같은 정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문의 여지가 있다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학교나 회사가 저작권 주장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회사나 학교에서 적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저작권 포기 각서에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속 상관이나 교수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저작권 포기 각서에 적법한 서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질문] 어떤 사람이 GPL 프로그램을 GPL이 아닌 다른 라이선스로 취득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답변] GNU GPL은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에 다른 종류의 라이선스를 추가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몇 종류의 라이선스를 함께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 중 하나가 GNU GPL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내에서 배포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OpenOffice가 이러한 예를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한 복제물에 포함되어 있는 라이선스는 저작권자에 의해서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고,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복제물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제물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질문]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GNU GPL로 공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코드를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사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을 공표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볼 때 언제나 좋지 못한 것이지만,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데 따른 어떠한 장애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해당 코드의 저작권자라면 여러번에 걸쳐서 다른 종류의 라이선스로 프로그램을 공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 GPL로 프로그램을 배포했던 개발자가 후에 누군가에게 그 프로그램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을 줄 수가 있습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GPL에 의해서 공중이 이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는 철회될 수 없습니다.

[질문] GPL로 배포되는 에디터를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또한 GPL을 따르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코드들을 컴파일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답변] 가능합니다. 에디터와 개발 도구들에 대한 저작권은, 도구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몇몇 프로그램들은 기술적인 이유로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출력 결과에 복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Bison의 경우에는 표준 파서 프로그램을 출력 파일로 복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출력에 포함된 복사 부분이 최초의 라이선스를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프로그램의 입력으로부터 파생된 출력은 입력의 저작권 상태를 동일하게 갖습니다.

그러나 Bison은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Bison 출력 파일에 포함될 표준 파서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을 제한없이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게된 이유는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는, Bison과 경쟁이 될만한 도구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GPL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에도 “공정 사용(fair use)”이 적용될 수 있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공정 사용(fair use)이란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공공 도서관이나 교육 기관에서의 사용과 같이 공적 목적이거나 학술적 발전을 위해서 저작물의 복제 및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장 6절 저작권재산권의 제한” 부분에 이러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 사용의 경우에는 GPL이나 기타 다른 종류의 라이선스에서 개발자가 어떠한 종류의 제한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개발자의 승인없이 소스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 사용에 대해서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종류의 사용이 공정 사용인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그 기준이 다릅니다.

[질문] 제가 만든 프로그램의 작업 결과물이 GPL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하드웨어를 디자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든 디자인을 자유 소프트웨어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일반적으로 이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작권법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출력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개발에 사용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2개의 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만약 프로그램의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변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하면 출력물에 대한 저작권은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입력을 단지 다른 형태로 번역하는 형태였다고 하면 출력을 만들어 내는데 사용된 입력 자료의 저작권 설정이 출력 결과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출력물의 사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출력물의 핵심 부분이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복사하는 형태로 만들어 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전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이 Bison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은 모두 GPL이 됩니다. 하지만 Bison의 경우에는 전략상의 이유로 우리가 특별한 예외 기준을 설정해 놓았다는 것을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가능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해야할 기술적인 이유가 특별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의 의도와 같은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프로그램의 일부가 결과물로 복사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사된 부분이 실제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단지 나머지 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복사된 부분에 적용될 배포상의 조건과 규정들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어떤 경우에, GPL 프로그램이 만든 결과물에도 GPL이 적용됩니까?

[답변] 프로그램의 일부분이 결과물로 복사될 때만 가능합니다.

[질문] GPL 모듈에 제가 만든 모듈을 추가했을 경우에, 제가 만든 모듈에 대한 라이선스로 GPL을 사용해야만 합니까?

[답변] GPL은 결합된 프로그램 전체가 GPL로 공표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든 모듈의 라이선스는 GPL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든 코드를 사용하는데 따른 보다 많은 허가 사항을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원한다면, GPL과 호환되는 보다 유연한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만약 라이브러리가 LGPL이 아닌 GPL로 공표되어 있다면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GPL 프로그램이 되어야 합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이 라이브러리를 포함한 상태로 실행되기 때문에 GPL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Visual C++ (또는 Visual Basic)으로 윈도우즈용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GPL로 만들려고 하는데 GPL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Visual C++ (또는 Visual Basic)의 라이브러리와 다이내믹 링킹되는 것을 허용합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런타임 라이브러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와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는 가능합니다.

[질문] 최초의 BSD 라이선스가 GPL과 호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GPL에는 없는 특정한 제한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BSD 라이선스에는 프로그램의 홍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GPL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또는 2차적 프로그램)을 양도할 때는 피양도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별항으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홍보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제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GPL 호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BSD 라이선스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되는 구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질문] 플러그인 (plug-in)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GPL로 공표한다고 할 때, 플러그인의 라이선스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까?

[답변] 그것은 프로그램이 플러그인을 어떤 방식으로 실행시키는 지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프로그램이 플러그인을 실행하기 위해서 fork와 exec를 사용한다면 플러그인은 별도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라이선스에는

플러그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프로그램이 플러그인과ダイナ믹하게 링크되는 형식으로 실행되어 서로 함수를 호출하고 자료 구조를 공유하게 된다면 이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형성하게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플러그인은 메인 프로그램이 확장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플러그인에도 GPL이나 GPL과 호환되는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프로그램이 플러그인과 다이내믹하게 링크되는 형태이지만, 프로그램이 플러그인의 메인 함수를 몇가지 옵션과 함께 호출하고 여기에 대한 리턴값을 기다리는 형태로 만들어 졌다면, 매우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됩니다.

[질문]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플러그인을 GPL로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까?

[답변] 프로그램이 플러그인을 실행하기 위해서 fork와 exec를 사용한다면 플러그인은 별도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라이선스에는 플러그인에 대한 요구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플러그인을 GPL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프로그램이 플러그인과 다이내믹하게 링크되는 형식으로 실행되어 서로 함수를 호출하고 자료 구조를 공유하게 된다면 이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형성하게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플러그인은 메인 프로그램이 확장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GPL이 적용된 플러그인을 메인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GPL 위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적 문제는 여러분이 만든 플러그인의 라이선스에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과 링크하는 것을 허용하다는 예외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질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코드를 GPL 프로그램과 링크시켜야만 제가 만들고자 하는 독점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GPL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링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Lesser GPL 라이선스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에게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저자들은 굳은 자세를 유지할 것이고 거절할 것입니다. GPL의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만든 코드를 여러분의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 또한 자유 소프트웨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을 공동체의 일부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우리가 만든 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저는 다양한 라이선스가 적용된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과 링크되어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만든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컴포넌트들의 이름과 각각의 라이선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라이브러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컴포넌트를 호출하는 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예와 같은 설명이 포함된 질문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작동하기 위해서 FOO라는 라이브러리와 링크되어야 합니다. FOO의 라이선스는 Lesser GPL입니다.

제 프로그램은 BAR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시스템 콜을 수행하는데 BAR 프로그램은 QUUX와 링크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이 추가된 GPL 프로그램입니다.

[질문] GNU GPL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의 일부를 개작해서 제가 만든 새로운 프로그램에 포함시켰을 경우에, 이 프로그램을 상업적으로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답변] 개작한 프로그램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GNU GPL의 기준에 따라서 판매 및 배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GPL에 규정된 대로 사용자들이 소스 코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들이 프로그램을 재배포하거나 개작하는 것 또한 허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여러분의 프로그램에 GPL 코드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요구 조건입니다.

[질문]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X가 프로젝트의 V1 (첫번째 버전)을 GPL로 공표했습니다.

Y가 V1에 기반한 새로운 코드를 작성하고, V1을 개작하는 작업으로 두번째 버전인 V2의 개발에 기여했습니다.

이제, Y가 V2를 GPL이 아닌 라이선스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X는 Y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Y는 GPL 프로그램이었던 V1을 기반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가 만든 개작물은 GNU GPL로 공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Y가 V2를 다른 라이선스로 공표하기 위해서는 X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 GPL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 없이 바이너리 형태로만 배포하려고 합니다. 판매 후에 소스 코드를 제공해 줄 것을 주문하는 사용자들에게 소스 코드를 보내주는 대신에, 단지 인터넷상에 소스 코드를 올려놓으면 안될까요?

[답변] GPL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익명 FTP 사이트에 올려놓는 것은 언제나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GPL에 규정된 제3항을 충족시키지는 못합니다.

사용자가 소스 코드를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한 사용자가 익명 FTP를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FTP를 이용한 소스 코드의 제공이 서로에게 편리하겠지만, 모든 사람이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는 사용자들도 소스 코드를 제공받을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스 코드를 원하는 사용자로부터 서면 요청이 도착한다면 디스크나 테이프 등의 저장 매체에 소스 코드를 담아서 보내주어야만 합니다.

물론,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이너리를 배포할 때 소스 코드를 함께 배포하는 것입니다.

[질문] 바이너리와 소스 코드를 인터넷 상의 다른 사이트에 올려놓아도 괜찮습니까?

[답변] GPL에는 바이너리가 제공되는 곳과 같은 위치로부터 소스 코드를 복사해 갈 수 있도록 해놓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스 코드를 다른 사이트에 올려놓은 뒤에 이들에 대한 링크나 상호 참조 정보를 명시해서, 각각의 바이너리에 대한 소스 코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면 우리는 이러한 형태도 “같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이트 어딘가에서 소스 코드를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XX 사이트를 참고하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 사이트에서 해당 소스 코드가 내일 삭제될 수도 있으며 동일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업그레이드된 다른 버전의 소스 코드로 대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GPL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스 코드가 있는 사이트와의 협의를 통해서 바이너리가 제공되는 동안 해당 바이너리에 대한 소스 코드가 함께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만 GPL을 충족시키는 것이 됩니다.

[질문] 바이너리는 익명 FTP를 통해서 공개하지만, 소스 코드는 이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만 보내주고 싶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허용됩니까?

[답변] GPL은 바이너리를 소스 코드와 함께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소스 코드를 요청하면 소스 코드를 제공하겠다는 서면 약정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용자들로 하여금 소스 코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익명 FTP를 통해서 바이너리를 배포하고자 한다면 서명 약정서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므로 소스 코드를 FTP로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배포할 사이트를 찾으려고 한다면, 소스 코드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가진 사이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배포되고 있는 바이너리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이전 버전이나 최신 버전의 소스 코드가 아닌 바이너리를 만드는데 사용된 동일한 버전의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바이너리와 소스 코드의 배포는 상호간의 연결 및 접근이 용이하게 이루어 지는 한, 다른 머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허용되며 이 경우, 바이너리의 다운로드 정보 근처에 해당 소스 코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질문] GPL과 호환되지 않는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인터프리터가 있다면, GPL 프로그램을 이러한 인터프리터 상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인터프리터가 단지 언어를 인터프리트하는 역할만을 수행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인터프리트된 프로그램은 인터프리터의 입장에서 볼 때, 단순한 데이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GPL은 프로그램을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툴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터프리터가 라이브러리와 같은 다른 요소와의 바인딩을 제공하도록 확장된 경우에는, 인터프리트된 프로그램은 바인딩 과정에서 사용된 요소와 사실상 링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 JNI와 자바 네이티브 인터페이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되는 라이브러리들은 자바 프로그램이 이들을 호출할 때, 다이내믹하게 링크됩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요소들이 GPL과 호환되지 않는 라이선스로 공표되어 있다면, 이것은 GPL과 호환되지 않는 라이브러리와 링크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GPL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공표할 경우에는 GPL과 호환되지 않는 저작물과 링크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킵니다.

GPL과 호환되지 않는 저작물과 함께 작동하도록 만든 코드를 GPL로 공표할 경우, 사람들은 이를 GPL과 호환되지 않는 저작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묵시적인 허용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의도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GPL 코드는 이런 방법으로 링크해서 사용할 수 없고 예외를 설정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해당 코드의 저작권자만이 예외 규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자바와 같은 객체 지향 언어에 있어서 GPL로 공표된 클래스를 수정없이 사용해서 서브 클래스를 생성했을 경우, 서브 클래스가 포함된 전체 프로그램에는 GPL이 적용되니까?

[답변] 서브 클래스를 만드는 것은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GPL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클래스로부터 파생된 서브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전체 프로그램에는 GPL이 적용됩니다.

[질문] 자신들이 직접 만들지 않은 GPL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공개하지 않고, 비용을 받고 제공해 주는 업체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GPL 위반이 아닙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GPL은 프로그램을 배포하는데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인에게 프로그램을 재배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재배포할 것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특정인에게 배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GPL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가 원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복제물을 배포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저작권자가 프로그램을 배포한 뒤에는, 복제물을 받은 사람은 그가 원하는 누구에게도 프로그램을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http://www.gnu.org/licenses/gpl-faq.html>

[붙임3] 국내 공개SW 사용자 라이선스 FAQ 모음

[질문] 전 세계의 공개SW 유관 단체들이 궁금합니다.

[답변] 전 세계의 대표적인 공개SW 유관 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Linux Foundation(<http://linuxfoundation.org>) : 리눅스 표준 재정 등 공개SW 선도
- Software Freedom Law Center(<http://www.softwarefreedom.org>) : 법적 자문기관
- GPL-Violations(<http://gpl-violations.org>) : GPL 위반 모니터링
- Open Source Initiative(<http://opensource.org>) : 공개SW 라이선스 인증 관리
- Open Invention Network(<http://openinventionnetwork.com>) : 리눅스 및 공개SW 특허관리 등
- 한국오픈소스법센터(Korea Open Source Software Law Center, <http://www.kosslaw.or.kr>) : 법률 자문기관

[질문] 공개SW는 아무나 자유롭게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까?

[답변] 네. 해당 라이선스 의무사항만 준수한다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장 강력한 copyleft 라이선스인 GPL도 복제와 개작, 배포와 수익 사업 등의 가능한 모든 형태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저작권자는 선택 사항으로 독자적인 유료 보증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듀얼 라이선스) 단, 제품 자체에 비용을 부과하는 듀얼 라이선스는 원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이고, 공개SW 자체에는 비용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 공개SW의 저작권 보호 범위가 궁금합니다.

[답변] 공개SW도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소프트웨어로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보호하게 되고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게 됩니다. 저작권의 보호범위는 어떤 공개SW 라이선스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상이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공개SW 라이선스를 강한 copyleft, 약한 copyleft, 비copyleft로 구분할 수 있고 각각의 라이선스에 따라 보호범위에 차이는 있으나 사용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고 있고 저작권 고지 등 일정한 의무사항만 준수하면 소스코드를 개작하고 배포하는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일반적으로 SW 라이선스는 SW 복제방지 및 비용 지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W 라이선스를 만들 때 자신이 원하는 보장범위를 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일정조건의 보장범위만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서는 저작권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장 및 보증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공개SW 라이선스의 경우 일반적인 라이선스와 달리 복제방지 및 비용지불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보증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개SW 라이선스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일반적인 라이선스와 비교할 때 전속성, 보증부인, 책임제한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 공개SW를 단순 사용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일반 프로그램에 공개SW의 일부를 가져와 사용할 때 각각의 법적 허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답변] 각각의 법적 허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수정없이 사용만 한 경우: 배포를 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라이선스에서 아무런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2) 수정하여 사용한 경우: 배포를 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라이선스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배포한 경우 라이선스에 따라 수정한 부분도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 3) 공개SW 일부를 복사하여 자체개발 프로그램에 사용한 경우: 비copyleft 계열의 라이선스라면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copyleft계열의 라이선스인 경우 전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배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런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 잘 쓰고 있던 공개SW가 유료로 전환해 버린다면, 차기버전부터 유료화를 선언하면 이에 대한 대책이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공개SW에는 취소 불가능한 조항이 있어 이미 공개되어있는 프로젝트를 회귀적으로 유료화 할 수는 없습니다.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고 무상으로 공급되고 있는 프리웨어의 경우에는 사용자 및 프로그램 보호를 위한 조항 및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저작권자가 임의로 유료화할 위험도 있으나, 이는 원래 비공개SW(소스코드 미제공, 라이선스 없음)이므로 가능한 일입니다.

차기버전부터 유료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라이선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기버전의 정의가 모호한 면이 있어 차기버전이 구버전을 포함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저작권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기버전에서 구버전의 내용까지 포함하는 유료화의 경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분리가능한 차기버전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유료화가 가능합니다. 저작권자의 의도에 따라 듀얼 라이선스 등의 유료화 도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자사 SW에 특정 공개SW 도입을 원하는 SW 개발업체의 입장에서는 해당 공개SW의 라이선스 제약(소스코드 공개 등)으로 인해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듀얼 라이선스로 유료버전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 듀얼 라이선스가 무엇인가요?

[답변] 듀얼 라이선스는 하나의 코드를 2가지 혹은 그 이상의 라이선스로 배포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GPL과 같이 엄격한 공개SW 라이선스로 배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MIT 등의 약한 공개SW 라이선스 혹은 의무사항이 없는 상용 라이선스로 배포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가능합니다.

공개SW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수정, 복제, 배포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2차 저작물 소스코드 공개 등의 강력한 의무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용SW를 개발하는 SW 업체에서는 해당 공개SW가 아무리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공개SW를 활용하여 개발하게 되면, 자사 SW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공개SW의 저작권자는 공개SW 버전과 별도로 상용버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상용버전은 공개SW가 아닌 저작권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한 것이므로 소스코드 공개 의무 등이 없어집니다.

또 다른 경우로 공개SW에 특정 기능을 추가하여 유료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듀얼 라이선스로 제품을 유료 판매하는 행위는 원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입니다.

[질문] 회사에서 SW 점검 시 저작권 문제가 종종 발생하므로 최근에는 공개SW 포털 사이트의 "공개SW 설치/활용" 코너에 소개된 공개SW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전산팀에서는 이러한 공개SW도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못쓰게 하는데, 진짜인가요?

[답변] 공개SW 활용코너에서는 사용자들이 공개SW를 활용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분야별 대표적인 공개SW와 라이선스, 개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기업에서 공개SW를 단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공개SW를 사용함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인지 내부 배포를 하는지, 2차 저작물(개작)을 만들어서 외부에 배포하는 경우 인지 등 사용범위 및 결합 형태에 따라 저작권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개SW를 단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 공개SW 라이선스의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개발한 SW를 사업화 시키고 싶습니다. 이 경우 사용가능한 라이선스가 무엇이며, 유의점이 궁금합니다.

[답변] 상용SW에 활용하기 적절한 라이선스는 아무래도 permissive한 라이선스로서 BSD, MIT등과 같이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되지 않는 공개SW 라이선스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즈니스 모델을 서비스 모델로 가져갈 경우 시장점유 확보 측면에서 GPL과 같은 Copyleft 라이선스 정책을 취하여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독점을 금지하면서 나름대로의 개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핵심서비스를 상용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질문] 상용SW 개발 시 특정 부분의 기능을 구현할 때 공개SW를 차용하였을 경우 SW 라이선스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용 라이선스정책을 유지하면서 소스코드 공개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활용 공개SW 라이선스를 BSD, MIT등과 같은 Permissive 라이선스로 배포된 코드를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상용 프로젝트 중에 일부 기능을 GPL, LGPL등과 같은 공개SW 라이선스 코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 해당 코드의 결합 형태를 검토하여 상용코드를 보호하면서 해당 공개SW 코드만을 공개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SI 프로젝트와 같은 상용 프로젝트의 경우에 고객과 협의를 통해 소스코드 공개가 가능하다면 공개의무가 있는 공개SW 라이선스 또한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자체적으로 개발한 SW에 GPL 라이선스의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경우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나요?

[답변] GPL 적용을 받는 라이브러리를 적용할 경우 해당 라이브러리와 linking 되는 SW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일부 라이선스의 경우 이용방식(dynamic or static, snippet)에 따라 소스코드 공개 범위가 상이해질 수 있으나 GPL의 경우 독립된 프로그램이 아닌한 결합방식에 관계없이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 A 개발자가 만든 a SW를 활용하여 B 개발자가 a'(조건 완화)을 만들었습니다. C 개발자는 a에 비해 조건이 완화된 a'를 가지고 a''를 만들었는데, 이 경우 C 개발자는 A 개발자의 조건을 위반한 것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a와 a' 및 a''에 적용되는 라이선스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B 개발자가 A 개발자와의 라이선싱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a'를 만든 경우 C 개발자는 B 개발자가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A 개발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C 개발자와 B 개발자와의 관계는 두 개발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a, a', a'' 이 모두 공개SW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고 a는 copyleft 인데 반하여 a'은 비copyleft 계열의 라이선스라고 가정할 경우에도 B가 정당한 저작권자가 아니므로 a'에는 B가 정한 비copyleft 조건이 아닌 A가 정한 copyleft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B가 a를 개작/추가한 부분이 있을 경우 B가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a'의 조건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건 완화라 함은 copyleft 조건이 완화되었음을 가정합니다.

[질문] Java Script로 쓰여진 공개SW를 사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품 배포 시에 공개SW에 대한 사용 고지문과 라이선스 사본 첨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스코드는 따로 공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 Java Script 코드를 난독화 시켰다면, 원본 소스코드를 따로 공개해야 하나요?

[답변]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적용되는 라이선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 copyleft 계열의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소스코드를 공개할 의무가 없으나 copyleft 계열의 라이선스라면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소스코드에 대한 정의를 보면 일반적으로 변경하기 좋은 형태(예를 들어 GPL 2.0의 경우, preferred form of the work for making modification으로 정의됨)라는 점을 정하고 있어 고의로 난독화 시킨 경우 라이선스상에서 소스코드 공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원본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난독화에 대한 규정은 구체적인 라이선스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적용되는 구체적인 라이선스의 개별 조항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질문] 자사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 A사의 제품을 납품받아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A사에서는 A사의 자체 SW(비공개)에 공개SW를 활용해서 저희 회사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위한 추가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A사에서 공개SW를 사용하여 개발했기 때문에 이 제품을 납품받는 행위 자체가 배포(판매)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추가 개발 부분에 대한 소스코드를 외부에 공개해야 하나요?(활용한 공개SW는 GPL, Apache 등입니다.)

[답변] 개발자로부터 납품을 받아 배포한 경우 직접개발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포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배포한 경우 라이선스에 따라 공개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나 변경 또는 결합한 부분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해당 SW를 접한 경우 이므로 사용자에게 해당 소프트웨어가 배포되었다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GPL 3.0의 경우 convey(우리말로 배포에 해당)의 정의 부분에서 네트워크상에서 사용자와 사본의 전송 없이 interaction만 하는 경우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상에서 서비스하는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라이선스가 GPL 또는 아파치 라이선스인 경우에는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적용되는 라이선스가 AGPL인 경우 해당 부분 및 결합되는 부분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AGPL의 경우 제13조에서 Remote Network Interaction 조항을 두고 있어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GPL 라이선스의 공개SW가 포함된 In-house 프로그램을 상용 판매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또한, 새로만든 In-house 프로그램이 GPL 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는 공개SW를 일부 사용하였다면, 이 In-house 프로그램을 타인에게 배포할 경우 공개SW 뿐만 아니라 In-house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도 공개해야 하나요?

[답변] GPL 적용을 받는 공개SW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 공개SW 라이선스 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제품에 추가적인 보증 또는 A/S

조건을 추가하여 유료화하여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자체를 유료화하여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예를 들어 GPL 2.0에서는 제2조 b항에서 프로그램을 유료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조에서 배포비용(CD 제작, 우편비용 등) 또는 추가보증 제공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GPL 적용을 받을 경우 In-house SW의 소스코드도 공개하여야 합니다.

[질문] GPL 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는 공개SW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한 보조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사용하도록 공개SW를 수정한다면, 추가한 보조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나요? 라이브러리 바이너리만 공개해도 되나요? (공개SW 프로그램이 다른 In-house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변경한 경우)

[답변] GPL과 결합된 라이브러리의 경우에도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스템 라이브러리인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되나 자체 수정/작성한 라이브러리인 경우 공개 대상으로 보입니다.

[질문] GPL을 사용하여 개발한 SW에서 실수로 공개하지 않은 파일에 저작권자가 이에 대해 공개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이를 공개하면 소송을 당하는 등의 문제가 없나요?

[답변] 실수로 라이선스를 위반했을 때 소송을 당할지의 여부는 해당 공개SW의 권리가 결정하겠지만, FSF 등 많은 권리자들은 단순한 실수이고 즉시 시정한다면 문제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 GPL 3.0 의무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답변] GPL 3.0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복제본에 저작권 고지와 보증책임이 없음을 명시
- GPL 3.0의 조건 및 제7조의 조건에 관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유지
- 프로그램을 양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프로그램과 함께 GPL 라이선스 사본 제공
- 수정 시 수정사실 및 일시를 명시
- 원본저작물과 파생저작물을 GPL3.0에 의해 배포
- 원본저작물 및 파생저작물에 대한 소스코드를 제공하거나, 요청 시 제공하겠다는 약정서 제공
- 사용자제품에 대한 인증키 등 설치정보의 제공
- 차별적인 특허라이선스 계약체결의 금지

[질문] GPL v2와 GPL v3의 구체적인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답변] GPL 3.0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GPL 2.0과 차이가 있습니다.

- '배포(distribution)'를 '컨베이(convey)'라는 용어로 대체
- 복제, 수정, 배포행위 등을 포함하는 '프로퍼게이트(propagate)' 용어 사용
- '해당 소스(corresponding source)에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저작물의 서브프로그램과 다른 부분들 사이의 제어 흐름이나 밀접한 데이터 통신 등을 통해 저작물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동적 링크된 하위 프로그램과 공유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를 포함
- 기술적보호조치의 보호에 관한 법적 권리의 포기(제3조)
- 사용자제품에 대한 설치정보의 제공. "설치 정보"란 해당 소스의 수정본으로부터 발생한 사용자 제품 내의 저작물의 수정된 버전을 설치하고 실행하기 위한 모든 방법과 절차, 인증키, 기타 필요한 정보를 말함.(제6조)
- 차별적인 특허라이선스 계약체결의 금지(제11조)
- Affero GPL과 결합하거나 연결하여 하나의 저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제13조)

[질문] GPL incompatible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GPL incompatible 이란 특정한 라이선스로 배포되는 코드를 GPL로 배포되는 코드와 결합시킬 경우 GPL과 해당 라이선스를 동시에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이 경우 GPL incompatible SW를 GPL이 적용되지 않는 형태로 분리하여 상호 통신할 수 있도록 하든가,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결합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 MPL과 GPL은 의무사항 충돌로 인해 같이 사용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양립성 충돌) 만약 MPL과 GPL을 같이 사용해서 개발하였을 경우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한 상태)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라이선스는 GPL로 선언해도 되고 MPL로 선언해도 됩니다.

[답변] MPL 조건의 A코드와 GPL 조건의 B코드를 결합하여 'A+B'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MPL은 'A+B'의 A부분을 MPL로 배포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GPL은 'A+B' 전체를 GPL로 배포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A+B'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B' 프로그램의 배포를 강행하였다면, 적어도 GPL 혹은 MPL 중 어느 한쪽 라이선스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A 혹은 B 프로그램의 원 저작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A+B'를 배포한 자는 저작권법 내지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 LGPL 소스 이용 시 소스 공개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또한, 라이선스 문서에 표기해야 할 정보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LGPL의 경우 소스코드의 공개범위는 Work based on the Library이나 Work that uses the Library이냐를 기준으로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LGPL 제5조에 의해 Work that uses the Library인 경우 LGPL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 유형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기 보다 기술적인 방식에 의해 구분됩니다. LGPL 제6조 b항에 의해 dynamic linking인 경우에는 링크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또는 목적코드를 공개할 필요가 없으나(원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는 공개해야함) 제6조 a항에 의해 static linking인 경우에는 결합되는 부분의 목적코드 또는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합니다.(원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는 공개해야함) 라이선스 문서가 저작권 고지를 의미한다고 할 때 구체적인 의무사항은 각 라이선스에 따라 상이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원저작권자 및 적용 라이선스 표시, 라이선스 사본 첨부, 보증 부인의 명기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opyleft 계열의 경우 소스코드를 첨부하거나 소스코드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명기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BSD 라이선스는 2차저작물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주요 의무사항이 궁금합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라이선스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주요 의무사항은 소스코드 및 바이너리 재배포시에 배포와 함께 제공된 문서안에 저작권 고지, 보증부인(disclaimer) 리스트를 포함해야 하며 contributor의 이름이나 조직을 홍보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m 라이선스에는 MIT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질문] 공개SW 라이선스의 소스코드를 적용하였는데, 코드의 원저작권자가 다른 SW의 특허침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어 법률적인 이슈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3의 개발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답변] 원칙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배포한 m회사가 특허침해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질문] 공개SW를 사용하여 개발한 SW를 특허 등록 할 경우 이슈가 궁금합니다.

[답변] 많은 공개SW 라이선스들이 '특허보복조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공개SW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질문] 기업내의 여러 부서에서 SW를 개발하여 기업명의로 특허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GPL 라이선스를 포함하는 SW를 개발하고 그에 매칭되는 특허를 등록하였습니다. 이 경우 라이선스들에게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개발한 비공개SW에 같은 특허가 사용되고 있을 경우 GPL 라이선시들에게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답변] 공개SW에 매칭되는 특허를 행사하면 해당 공개SW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업으로서는 공개SW를 사용하면서 특허를 행사하지 않든가, 아니면 특허를 행사하고 공개SW 라이선스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특허라면, 비공개 소프트웨어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공개SW가 아닌 다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라이선시들에게는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기업 도입 시 공개SW 라이선스 도입 검토 방안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기업에서 공개SW 도입 시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GPL, LGPL, AGPL, EPL 등과 같이 2차 저작물의 소스 공개의무가 있는 라이선스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Apache, MIT 등의 라이선스를 선호하는 이유는 2차 저작물의 공개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 소스코드를 공개할 수 밖에 없는 계열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를 대체할 만한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거나 자체 개발하기에는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코드 공개를 감수하고서라도 해당 라이선스를 도입하거나, 상용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 공개SW 사용 시 개발 산출물을(2차 저작물) 공개해야 하는건지, 어떤 소스를 사용했다고(고지) 공개해야 하는건지 '소스공개'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소스를 공개한다"는 것은 공개 SW를 이용한 2차 저작물의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혹은 제3자가 운영하는 공개SW 관련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거나, 소스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메일 주소 등을 알려주는 형태로 공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GPL의 경우 GPL 코드와 링크된 코드도 공개해야 하는 반면에 LGPL의 경우에는 LGPL 코드와 링크된 코드의 공개의무는 없고, 수정된 LGPL 코드 공개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EPL은 EPL 코드를 포함하는 모듈 단위로만 개작된 내용의 공개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라이선스에 따라 공개 대상이 되는 2차 저작물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대부분의 공개SW 라이선스는 사용자에게 배포되는 Product 내에 어떤 공개SW가 사용되었는지, 그 저작자가 누구인지 등을 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소스코드의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와 구별됩니다.

[질문] 공개SW 라이선스에 대한 법적 규제 및 한계가 궁금합니다.

[답변] 법률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공개SW 라이선스는 저작권법과 민법상의 계약 법리에 따라 규율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공개SW는

인터넷상에서 소스코드를 쉽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저작권이나 계약에 기초한 권리가 아예 없는 것처럼 오인받기도 합니다만, 공개SW 역시 엄연한 저작물이고, 한국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저작물의 이용 허락 시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SD, MIT, GPL 등 라이선스 종류를 불문하고, 공개SW를 사용하더라도 원 저작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질문] 국내 공개SW 활용방안과 필요인력 수급방안이 궁금합니다.

[답변] 기업 입장에서 공개 SW는 손쉽게 입수 가능하고, 무료이며, 라이선스에 따라서는 공개의무조차 없이 개작의 자유가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프로그램의 품질 보증이 되지 않고, 사후 관리나 기술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위험성도 일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개 SW의 활용 시에는 위와 같은 공개 SW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공개 SW 라이선스의 준수 가능성 등을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인력 수급에 있어서는 프로그래머를 공개 SW 분야에 배치하고 훈련시키는 방법과, 공학 Background의 법률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실무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주요 라이선스(GPL, LGPL, BSD, MPL, QPL, Apache 등)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또한, 공개SW 이용 시 주의사항이 알고 싶습니다.

[답변] GPL, LGPL, MPL 및 QPL은 일정한 경우 2차 저작물의 공개 의무, 즉 상호주의(Reciprocity)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BSD, Apache와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들 4가지 라이선스는 Reciprocity의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GPL은 독립된 저작물로 볼 수 없는 파생 저작물 전체를 공개해야 하고, LGPL은 수정 코드의 공개의무는 존재하지만 Static/Dynamic 링크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의무가 면제되며, MPL은 파일 단위로, QPL은 수정본에 대하여 공개 의무가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개SW 이용 시에는 공개SW라도 결코 저작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며,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용 조건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질문] 공개SW 활용 기업에 대한 유지관리 서비스가 궁금합니다.

[답변] 공개SW의 "유지관리 서비스"는 공개SW의 제품상 오류 및 결함의 수정, 운영상의 문제점 해결, 패치 제공, 최적화, 업데이트 등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개SW는 무료로 제공되고, 그 사용상의 책임은 사용자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공개SW를 다룰 수 있는 내재화된 인력을 갖추고 있다면 해당 인력으로 유지관리를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액제 혹은 콜베이스제 등의 방식으로 기술력을 갖춘 외부 업체를 이용하여 유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예규 제 41호 "공개SW 유지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공개SW의 장점은 살리면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라이선스 및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공개SW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copyleft 조항이 없는 MIT, Apache 등의 라이선스를 기업의 전용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2차 저작물에 관한 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공개SW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GPL 등 준수 요건이 까다로운 공개SW 라이선스를 적용하여 배포하되, GPL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상용 라이선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Dual License 옵션을 주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코더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X.264의 경우, GPL 의무가 면제된 상용 라이선스와 GPL 라이선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개SW 커뮤니티에 기여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사업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질문] 국내 기업들의 공개SW 활용 실태가 궁금합니다.

[답변] 최근 기업에서는 공개SW가 개발 비용과 시간, 인력 등을 단축시킬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 공개SW 역량프라자에서 수행한 2013년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결과를 보면 약 95% 이상의 기업에서 공개SW를 활용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질문] 대기업의 경우 기업 내 공개SW 관리 체계가 구축됐다고 하더라도 협력사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공개SW가 유입되는 사례도 많아서 공개SW 저작권 검증을 의무화하는 외주 개발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궁금합니다.

[답변] 외주 개발의 경우 크게 2가지 방식으로 공개SW 저작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외부 협력사와의 연구/개발 계약 조건에 공개SW 사용정보를 기업측에 제공하고, 그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특히, GPL과 같이 2차 저작물의 코드공개 의무가 있는 라이선스 사용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기업측과 협의하도록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연구/개발 계약 조건에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산출물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러한 조항을 공개SW 관리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이미 납품받은 산출물 내에 GPL 코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상용 라이선스의 구매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만약 가능하다면 상용 라이선스를 구매한 완제품을 양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협력사를 통해 유입된 공개SW라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자가 그 위반의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 자체적으로 사용자에게 배포되는 모든 소프트웨어 Product에 대하여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도구를 활용한 공개SW 기술검증을 실시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포함된 하나 이상의 공개SW 라이선스를 법적으로 준수하는 Governance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질문] 중소기업은 비용 때문에 라이선스 검증 도구 등을 구매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대안이 궁금합니다.

[답변] 공개SW 역량프라자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여 지난 2010년부터 중소기업 대상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서비스를 무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기업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전문 컨설팅/교육 서비스도 병행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특정 업체에서 공개SW로 소스코드도 공개하고 바이너리 파일도 제공하고 있는데, 바이너리 파일만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바이너리 파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라이선스만을 검토하면 되는지, 바이너리 파일을 사용하기 위하여 원천소스도 검증을 하고 라이선스에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 하여야 하나요?

[답변] 바이너리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바이너리 파일의 원천소스코드에 대한 라이선스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바이너리 파일의 소스코드에 GPL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 바이너리 파일의 소스코드 공개는 물론, 그 바이너리 파일과 링크되는 귀사의 코드 또한 GPL과 동일조건으로 공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고 Linux Foundation에서도 SPDX(Software Package Data Exchange)라는 워킹그룹을 발족하여 기업 간 공급망에 있어서 바이너리를 구성하고 있는 상재 공개SW 내역을 산출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포맷을 개발 및 배포하고 있습니다.

[질문] 특정 소스코드에 공개SW 혹은 자사의 라이선스 문구를 표준화하여 적용하고 싶습니다. 넣어야 할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련 샘플이 궁금합니다.

[답변] 공개SW 라이선스는 개별 라이선스에 따라 고지 문구가 달라질 수 있고 자사의 상용 라이선스 문구는 기업 및 제품, 서비스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상용 라이선스의 경우 법무팀의 자문을 받아 사업 및 제품, 서비스의 판매와 유지관리 방향에 부합되도록 라이선스 문구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GPL라이선스에 대한 소스코드 고지사항 샘플입니다.

/*

Copyright (C) <year> <name of author or company>

This program is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modify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2 of the License, or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This program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You should have received a copy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long with this program; if not, write to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9 Temple Place, Suite 330, Boston, MA 02111-1307 USA

*/

[질문] 소스코드 공개 없이 제품 출시 후에 일반 사용자들(혹은 개발자들)이 라이선스 위반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저희 제품은 일반인들이 제품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답변] 대부분의 공개SW라이선스 분쟁은 소스코드 공개 혹은 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스코드 공개 없이 출시된 제품, 서비스가 있을 경우 전 세계 유사분야의 전문 개발자들이 해당 산출물을 모니터링 하게 되고 코드공개 의무가 있는 GPL과 LGPL의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이에 대한 확인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니터링과 감시 작업은 개발자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서 커뮤니티 형태로 운영되는 데 대표적인 GPL 위반 개발자 모니터링 커뮤니티는 독일의 헤럴드 벨테가 운영하는 gpl-violation.org가 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는 GPL 위반을 감시하는 개발자 집단으로 심지어 각종 도구와 장비를 이용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커뮤니티의 아마인 헤멜이라는 개발자는 바이너리를 분석하여 공개SW 및 라이선스 사용 유무를 체크하는 Binary analysis tool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gpl compliance engineering guide](#)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보시면 소스코드 공개 없이 어떻게 오픈소스 사용여부를 확인하는지에 대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질문] B사는 A사의 공개SW 소스코드를 참고하여 모든 기능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완전히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B사는 라이선스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요?

[답변] 오라클과 구글의 소송에서 볼 수 있듯이 구글은 모든 소스코드를 새로 작성하여 동일 기능을 구현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바 있습니다. 동일한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일지라도 소스코드를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재작성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특허 보복 조항이 무엇인가요?

[답변] 공개SW 사용자가 라이선스로 해당 프로그램 저작권자 또는 다른 사용자 등 누군가를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제기일에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에게 부여되었던 저작권 또는 특허 라이선스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료되는 라이선스의 범위는 각 라이선스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들어 Apache License 2.0의 경우 특허권 라이선스만을 종료시키며, GPL 3.0의 경우 저작권 라이선스와 특허 라이선스가 모두 종료되게 됩니다.

[질문] 특정 기업에서 Subscription 형식으로 판매하는 공개SW를 다운로드 받아 자사 서버에 탑재하여 해당 제품을 탑재한 서버라고 홍보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공개SW는 상업적 이용이 자유롭다고 들었는데, 이로 인한 문제는 없나요?

[답변] Subscription 계약을 하지 않고 배포기업의 브랜드를 이용하는 것은 공개SW 라이선스 위반보다는 상표권 침해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충분히 저작권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붙임4] 주요 공개SW 라이선스 전문(한글 번역본)

- ▶ 라이선스 번역문에 대한 참고사항
- ▶ 번역된 공개SW 라이선스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영문 공개SW 라이선스를 이해하는데 참고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은 어떠한 언어에 대한 번역문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계획 또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개SW 라이선스는 오직 영문판에 의해서만 그 법률적 효력이 올바르게 발생될 수 있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 이 번역문은 법률적 검토와 문서간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이며, 이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을 지도 모를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 GPL 2.0 라이선스 한글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2판, 1991년 6월

Copyright (C) 1989, 1991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1 Franklin Street, Fifth Floor, Boston, MA 02110-1301, USA

누구든지 본 사용 허가서를 있는 그대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대한 수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 문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사용 허가서(license)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과 공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이하, "GPL"이라고 칭합니다.)는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과 공유의 자유를 모든 사용자들에게 보장하기 위해서 성립된 것입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GPL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으며, 몇몇 소프트웨어에는 별도의 사용 허가서인 GNU 라이브러리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를 대신 적용하기도 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란, 이를 사용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자유와 권리가 함께 양도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프로그램 저작자의 의지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프로그램에도 GPL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든 프로그램에도 GPL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를 언급할 때 사용되는 "자유"라는 단어는 무료(無料)를 의미하는 금전적인 측면의 자유가 아니라 구속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며, GPL은 자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복제와 개작, 배포와 수익 사업 등의 가능한 모든 형태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시 코드(source code)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용해서 개선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며, 자신에게 양도된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GPL은 GPL 안에 소프트웨어를 양도받을 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과 단서를 별항으로 추가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작과 배포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무조건적인 권리 양도 규정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GPL 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유료 판매나 무료 배포에 관계없이 자신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권리를, 프로그램을 받게 될 사람에게 그대로 양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프로그램의 원시 코드를 함께 제공하거나 원시 코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알려주어야 하고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사용자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사용자들을 권리를 보호합니다. (1) SW에 저작권을 설정합니다. (2) 저작권의 양도에 관한 실정법에 의해서 유효한 법률적 효력을 갖는 GPL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복제하거나 개작 및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들에게 부여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복적인 재배포 과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자체에 수정과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이는 최초의 저작자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개연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작과 재배포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발생된 문제로 인해 프로그램 원저작자들의 신망이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GPL에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프로그램 원저작자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특허 제도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위협하는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 프로그램을 재배포하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특허를 취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독점 소프트웨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떠한 특허에 대해서도 그 사용 권리를 모든 사람들(이하, “공중(公衆)”이라고 칭합니다.)에게 자유롭게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유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복제(copying)와 개작(modification) 및 배포(distribution)에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한 조건과 규정

제 0 조. 본 허가서는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의 규정에 따라 배포될 수 있다는 사항이 저작권자에 의해서 명시된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고 칭합니다.)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 등의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고 칭합니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및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의미하고, “2차적 프로그램”이란 전술한 프로그램 자신 또는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원용하거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을 포함할 수 있는 개작 과정을 통해서 창작된 새로운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이후로 다른 언어로의 번역은 별다른 제한없이 개작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피양도자”란 GPL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양도받은 사람을 의미하고, “원(原)프로그램”이란 프로그램을 개작하거나 2차적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최초의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본 허가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와 개작 그리고 배포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프로그램의 결과물(output)에는, 그것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생성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결과물의 내용이 원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2차적 프로그램을 구성했을 때에 한해서 본 허가서의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2차적 프로그램의 구성 여부는 2차적 프로그램 안에서의 원프로그램의 역할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제 1 조. 적절한 저작권 표시와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각각의 복제물에 명시하는 한, 피양도자는 프로그램의 원시 코드를 자신이 양도받은 상대 그대로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복제와 배포가 이루어 질 때는 본 허가서와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되었던 모든 내용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하며, 영문판 GPL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배포자는 복제물을 물리적으로 인도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선택 사항으로 독자적인 유료 보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2 조. 피양도자는 자신이 양도받은 프로그램의 전부나 일부를 개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2차적 프로그램을 창작할 수 있습니다. 개작된 프로그램이나 창작된 2차적 프로그램은 다음의 사항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또다시 복제되고 배포될 수 있습니다.

제 1 항. 파일을 개작할 때는 파일을 개작한 사실과 그 날짜를 파일 안에 명시해야 합니다.

제 2 항. 배포하거나 공표하려는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받은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면, 저작물 전체에 대한 사용 권리를 본 허가서의 규정에 따라 공중에게 무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제 3 항. 개작된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실행 형태가 대화형 구조로 명령어를 읽어 들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저작권 표시와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 (별도의 보증을 설정한 경우라면 해당 내용) 그리고 양도받은 프로그램을 본 규정에 따라 재배포할 수 있다는 사실과 GPL 사본을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이 함께 포함된 문구가 프로그램이 대화형 구조로 평이하게 실행된 직후에 화면 또는 지면으로 출력되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예외 규정: 양도받은 프로그램이 대화형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실행 환경에서 전술한 사항들이 출력되지 않는 형태였을 경우에는 이를 개작한 프로그램 또한 관련 사항들을 출력시키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위의 조항들은 개작된 프로그램 전체에 적용됩니다. 만약, 개작된 프로그램에 포함된 특정 부분이 원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닌 별도의 독립 저작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개별적인 배포에는 본 허가서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물이 2차적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함께 배포된다면 개별적인 저작권과 배포 기준에 상관없이 저작물 모두에 본 허가서가 적용되어야 하며, 전체 저작물에 대한 사용 권리는 공중에게 무상으로 양도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개별적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원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2차적 프로그램이나 수집 저작물의 배포를 일관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프로그램이나 원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2차적 프로그램을 이들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다른 저작물과 함께 단순히 저장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동일한 매체에 모아 놓은 집합물의 경우에는, 원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다른 저작물에는 본 허가서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3 조. 피양도자는 다음 중 하나의 항목을 만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또는 제2조에서 언급된 2차적 프로그램)을 목적 코드(object code)나 실행물(executable form)의 형태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제 1 항. 목적 코드나 실행물에 상응하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원시 코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원시 코드는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될 수 있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의 교환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제 2 항. 배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목적 코드나 실행물에 상응하는 완전한 원시 코드를 배포하겠다는, 최소한 3년간 유효한 약정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이 약정서는 약정서를 갖고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유효해야 합니다. 원시 코드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하고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될 수 있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의 교환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제 3 항. 목적 코드나 실행물에 상응하는 원시 코드를 배포하겠다는 약정에 대해서 자신이 양도받은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제3항은 위의 제2항에 따라 원시 코드를 배포하겠다는 약정을 프로그램의

목적 코드나 실행물과 함께 제공 받았고, 동시에 비상업적인 배포를 하고자 할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저작물에 대한 원시 코드란 해당 저작물을 개작하기에 적절한 형식을 의미합니다. 실행물에 대한 완전한 원시 코드란 실행물에 포함된 모든 모듈들의 원시 코드와 이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모두, 그리고 실행물의 컴파일과 설치를 제어하는데 사용된 스크립트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예외의 하나로서, 실행물이 실행될 운영체제의 주요 부분(컴파일러나 커널 등)과 함께 (원시 코드나 바이너리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구성 요소들은 이러한 구성 요소 자체가 실행물에 수반되지 않는 한 원시 코드의 배포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목적 코드나 실행물을 지정한 장소로부터 복제해 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배포할 경우, 동일한 장소로부터 원시 코드를 복제할 수 있는 동등한 접근 방법을 제공한다면 이는 원시 코드를 목적 코드와 함께 복제되도록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시 코드를 배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4 조. 본 허가서에 의해 명시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 한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와 개작 및 하위 허가권 설정과 배포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무효이며 본 허가서가 보장한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러나 본 허가서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복제물이나 권리를 양도받았던 제3자는 본 허가서의 규정들을 준수하는 한, 배포자의 권리 소멸에 관계없이 사용상의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본 허가서는 서명이나 날인이 수반되는 형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양도자가 본 허가서의 내용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에 기반한 2차적 프로그램에 대한 개작 및 배포를 허용하는 것은 본 허가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본 허가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법률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또는 프로그램에 기반한 2차적 프로그램)을 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이에 따른 본 허가서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한 본 허가서의 조건과 규정들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간주됩니다.

제 6 조. 피양도자에 의해서 프로그램(또는 프로그램에 기반한 2차적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재배포될 경우, 각 단계에서의 피양도자는 본 허가서의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의 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대한 권리를 최초의 양도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자동적으로 간주됩니다. 프로그램(또는 프로그램에 기반한 2차적 프로그램)을 배포할 때는 피양도자의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양도자에게, 재배포가 일어날 시점에서의 제3의 피양도자에게 본 허가서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책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 7 조. 법원의 판결이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주장 또는 특허 문제에 국한되지 않은 그밖의 이유들로 인해서 본 허가서의 규정에 배치되는 사항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항이 선행하거나 본 허가서의 조건과 규정들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의 명령이나 합의 등에 의해서 본 허가서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발생한 상황이라도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프로그램은 배포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특허 관련 허가가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양도받은 임의의 제3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재배포할 수 있게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허가와 본 사용 허가를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본 조항은 특정한 상황에서 본 조항의 일부가 유효하지 않거나 적용될 수 없을 경우에도 본 조항의

나머지 부분들을 적용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 졌습니다. 따라서 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본 조항을 전체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본 조항의 목적은 특허나 저작권 침해 등의 행위를 조장하거나 해당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GPL을 통해서 구현되어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배포 체계를 통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포 체계에 대한 신뢰있는 지원을 계속해 줄으로써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분야에 많은 공헌을 해 주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어떠한 배포 체계로 배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작자와 기증자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일반 사용자들이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본 조항은 본 허가서의 다른 조항들에서 무엇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 8 조. 특허나 저작권이 설정된 인터페이스로 인해서 특정 국가에서 프로그램의 배포와 사용이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본 사용 허가서를 프로그램에 적용한 최초의 저작권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국가에 한해서 프로그램을 배포한다는 배포상의 지역적 제한 조건을 명시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본 허가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제 9 조.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때때로 본 사용 허가서의 개정판이나 신판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공표될 판은 당면한 문제나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근본 정신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각각의 판들은 판번호를 사용해서 구별됩니다. 특정한 판번호와 그 이후 판을 따른다는 사항이 명시된 프로그램에는 해당 판이나 그 이후에 발행된 어떠한 판을 선택해서 적용해도 무방하고, 판번호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어떠한 판번호의 판을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제 10 조. 프로그램의 일부를 본 허가서와 배포 기준이 다른 자유 프로그램과 함께 결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청을 수락하기 위해서 때때로 예외 기준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일반적으로 자유 소프트웨어의 2차적 저작물들을 모두 자유로운 상태로 유지시키려는 목적과 소프트웨어의 공유와 재활용을 증진시키려는 두가지 목적을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보증의 결여 (제11조, 제12조)

제 11 조. 본 허가서를 따르는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양도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 배포자가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별도의 보증을 서면으로 제공할 때를 제외하면, 특정한 목적에 대한 프로그램의 적합성이나 상업성 여부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이 프로그램을 배포합니다.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피양도자에게 인수되며 이에 따른 보수 및 복구를 위한 제반 경비 또한 피양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제 12 조. 저작권자나 배포자가 프로그램의 손상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발생한 손실이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고 있거나 이에 대한 별도의 서면 보증이 설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자나 프로그램을 원래의 상태 또는 개작한 상태로 제공한 배포자는 프로그램의 사용이나 비작동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이나 프로그램 자체의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면책 조건은 사용자나 제3자가 프로그램을 조작함으로써 발생된 손실이나 다른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을 함께 동작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데이터의 상실 및 부정확한 산출 결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생된 손실의 일반성이나 특수성 뿐 아니라 원인의 우발성 및 필연성도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한 조건과 규정의 끝.

새로운 프로그램에 GPL을 적용하는 방법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본 허가서의 규정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개작하고 재배포할 수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프로그램을 자유 소프트웨어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프로그램에 추가하면 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원시 코드 파일의 시작 부분에 이러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파일에는 최소한 저작권을 명시한 행과 본 사용 허가서의 전체 내용을 참고할 수 있는 위치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이름과 용도를 한 줄 정도로 설명합니다.

Copyright (C) 20yy년 <프로그램 저작자의 이름>

이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의 피양도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2판 또는 그 이후 판을 임의로 선택해서, 그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작하거나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서 배포되고 있지만, 특정한 목적에 맞는 적합성 여부나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묵시적인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이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됩니다. 만약, 이 문서가 누락되어 있다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9 Temple Place - Suite 330, Boston, MA 02111-1307, USA)

또한,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배포한 사람에게 전자 메일과 서면으로 연락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명령어 입력 방식에 의한 대화형 구조를 택하고 있다면, 프로그램이 대화형 방식으로 실행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이 출력되어야 합니다.

Gnomovision version 69, Copyright (C) 20yy년 <프로그램 저작자의 이름>

Gnomovision 프로그램에는 제품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show w' 명령어를 실행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배포 규정을 만족시키는 조건하에서 자유롭게 재배포될 수 있습니다. 배포에 대한 규정들은 'show c' 명령어를 통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show w’와 ‘show c’는 GPL의 해당 부분을 출력하기 위한 가상의 명령어입니다. 따라서 ‘show w’나 ‘show c’가 아닌 다른 형태를 사용해도 무방하며, 마우스 클릭이나 메뉴 방식과 같은 프로그램에 적합한 다른 형식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만약, 프로그램 저작자가 학교나 기업과 같은 단체나 기관에 고용되어 있다면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배포를 위해서 고용주나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포기 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형식이 될 수 있다. (아래의 문구를 실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예로 사용된 이름들을 실제 이름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본사는 제임스 해커가 만든 (컴파일러에서 패스를 생성하는) ‘Gnomovision’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든 저작권을 포기합니다.

1989년 4월 1일

Yoyodye, Inc., 부사장: Ty Coon

서명: Ty Coon의 서명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독점 소프트웨어와 함께 결합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작성된 프로그램이 서브루틴 라이브러리일 경우에는 독점 소프트웨어가 해당 라이브러리를 링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 허가서 대신 GNU 라이브러리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를 사용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 출처 : <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gpl.ko.html>

□ GPL 3.0 라이선스 한글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

버전 3, 2007년 6월 29일

Copyright (C) 2007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http://fsf.org/>>

누구라도 본 라이선스를 원문 그대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다. 그러나 본문에 대한 수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문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 및 기타 다른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와 기타 실용적 저작물에 설정된 라이선스들은 저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를 제약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반면에 GNU 일반 공중라이선스는 특정 프로그램의 모든 버전을 공유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즉, 해당 프로그램이 모든 사용자에게 자유 소프트웨어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제작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와, 그 외에 저작자가 설정한 모든 저작물에 적용된다. 또한 자신의 프로그램에 이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다.

자유 소프트웨어를 언급할 때 사용하는 '자유FREE'라는 단어는 무료(無料)라는 금전적 의미가 아니라 자유를 의미한다. 우리의 일반 공중 라이선스들은 자유 소프트웨어의 복제본을 (원한다면 유료로) 배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더불어 당신이 소스 코드를 받거나 원하는 경우 얻을 수 있다는 점과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그것의 일부를 새로운 자유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장하고, 또한 이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당신으로 하여금 이러한 권리를 거부하거나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당신은 소프트웨어의 복제본을 배포하거나 수정할 경우에 특정한 의무를 지닌다. 바로 다른 이들의 자유를 존중할 의무이다.

예를 들면, 그러한 프로그램의 복제본을 무상이나 유상으로 배포할 경우에는 당신이 양도받았던 동일한 자유를 수취인에게도 전달해야 한다. 당신은 수취인 역시 소스 코드를 받거나 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항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어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GNU GPL을 사용하는 개발자들은 다음의 두 단계를 통해 당신의 권리를 보호한다: 첫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설정하고, 둘째, 본 라이선스를 당신에게 제공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한다.

GPL은 개발자와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본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해 아무런 보증도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GPL은 사용자와 저작자 양측 모두를 위해 수정이 가해진 버전들은 수정본이라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수정된 버전이 야기하는 문제점들로 인해 본래 버전의 저작자가 비난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특정 기기들은 제조자 외에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의 수정된 버전을 기기 내에 설치하거나 실행할 수 없도록 고안되어 있다. 이러한 행위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리와 상충한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용 제품의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일어나는데, 개인용 제품 분야야말로 이러한 권리 남용 행위가 가장 용납될 수 없는 영역이다. 따라서 GPL 본 버전은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사용자 권리

제한 행위를 막기 위해 고안되었다. 만약 이와 같은 문제들이 다른 영역에서도 상당수준으로 발생한다면, GPL의 미래 버전은 그 영역들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특허에 의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범용 컴퓨터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특허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행여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우리는 특허가 지니는 특별한 위험성, 즉 자유 소프트웨어에 특허가 적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유(proprietary) 소프트웨어가 되어버리는 위험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GPL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허에 의해 프로그램의 자유성이 박탈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복제와 배포, 수정에 관한 정확한 규정과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규정과 조건

제0조. 정의

“본 라이선스”는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를 지칭한다.

“저작권”은 반도체 마스크와 같은 다른 종류의 저작물에 적용되는 저작권 유사법률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프로그램”은 본 라이선스로 사용허가를 받은, 저작권 설정이 가능한 모든 저작물을 지칭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당신”으로 칭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과 “수취인”은 개인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다. 작품을 “수정”하는 것은 저작물을 원본 그대로 복제하는 것 외에, 저작권 허가를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의 전체나 부분을 복제하거나 차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물은 기존 저작물의 기존 저작물의 “수정된 버전”이나 기존 저작물에 “기반한” 저작물로 불린다.

“GPL 적용 저작물”은 수정되지 않은 원 프로그램이나 그 프로그램에 기반한 저작물 둘 중의 하나를 의미한다.

어떤 저작물을 “프로퍼게이트”하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할 시에 해당 저작권 법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접적이거나 이차적인 처벌을 가능케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단, 컴퓨터 상에서 이 저작물을 실행하거나 개인적으로 소유한 복제본을 수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프로퍼게이트 행위는 복제, (원본이나 수정본의) 배포 및 일반 대중이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행위를 포함하며, 국가에 따라 이외의 활동이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저작물을 “컨베이”하는 것은 제3자가 복제본을 제작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가능케 해주는 모든 종류의 프로퍼게이트 행위를 의미한다. 복제본을 양도하지 않고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은 컨베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화형 구조로 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이 “적절한 법적 고지”를 용이하고 명백한 방식으로 표시한다. 첫째, 적절한 저작권을 고지하고, 둘째, 저작물에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보증이 제공되는 경우 제외)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본 라이선스에 의거하여 저작물을 컨베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본 라이선스의 복제본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사용자에게 표시한다. 만약 그 인터페이스가 사용자 명령이나 옵션의 목록을 하나의 메뉴 등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목록 내에 고지를 명시하는 것도 위 기준에 부합된다.

제1조. 소스 코드

저작물의 “소스 코드”란 저작물에 수정을 가하는 행위를 위해 선호되는 저작물의 형태를 의미한다.

“오브젝트 코드”란 저작물의 비(非)소스적 형태 전부를 의미한다.

“표준 인터페이스”는 인지도 있는 표준 기관이 정의한 공식적인 표준이거나, 혹은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에 특화된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는 그 언어로 작업을 하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는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실행 가능한 저작물의 “시스템 라이브러리”는 저작물 전체를 제외한 모든 것 중에서, (a) 주요 구성요소를 패키징하는 일반적 형태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주요 구성요소의 일부가 아닌 것과 (b) 주요 구성요소와의 작동을 가능하게끔 도와주기만 하거나 혹은 표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만 하는 것으로서 그 구현이 대중에게 소스 코드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 맥락에서 “주요 구성요소”는 실행 가능한 저작물을 구동할 수 있는 특정 운영체계의 주요 필수 구성요소(커널, 윈도우 시스템 등)나 그 저작물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컴파일러, 또는 저작물을 실행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오브젝트코드 인터프리터를 의미한다.

오브젝트 코드 형태를 띤 저작물의 “해당 소스”란 오브젝트 코드를 생성, 설치, 그리고 (실행 가능한 저작물의 경우) 구동하고, 그 저작물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소스 코드를 의미하며, 이러한 활동들을 제어하는 스크립트를 포함한다. 그러나, 저작물의 시스템 라이브러리와 범용적인 툴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위의 활동들을 실행시키는데 수정 없이 사용되면서도 저작물의 일부가 아닌 여타 자유 소프트웨어도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해당 소스에는 저작물의 소스 파일과 연관된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이 포함되고, 또한 저작물의 서브 프로그램과 다른 부분들 사이의 제어 흐름이나 밀접한 데이터 통신 등을 통해 저작물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동적 링크된 하위 프로그램과 공용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가 포함된다. 해당 소스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사용자가 자동적으로 재 생성시킬 수 있는 것은 해당 소스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소스 코드 형태를 띤 저작물의 해당 소스는 저작물 그 자체이다.

제2조. 기본적인 허용사항

본 라이선스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권리는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조항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며,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한 취소될 수 없다. 본 라이선스는 수정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권리를 제한 없이 허용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약한다. GPL 적용 저작물을 실행함으로써 얻는 결과물은 그것의 내용이 GPL 적용 저작물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본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는다. 본 라이선스는 저작권법이 제공하는 바에 따라, 공정 사용과 여타 동등한 사용방식을 인정한다.

당신은 당신의 라이선스가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당신이 컨베이 하지 않은 GPL 적용 저작물을 무제한적으로 제작 및 실행, 배포할 수 있다. 당신은 저작권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 모든 저작물을 컨베이하는 데 있어서 본 라이선스의 조항들을 따른다는 전제하에, 타인으로 하여금 당신을 위해 저작물에 수정을 가하게 하거나 그 저작물들을 실행시키는데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목적에 한해 GPL 적용 저작물을 타인에게 컨베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GPL 적용 저작물을 당신만을 위해 제작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지시와 통제 하에서, 당신을 위한 목적으로만 일을 해야 하며, 당신과 관계된 일 이외에 당신의 저작권 해당물의 복제본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들에 따라야 한다.

기타 다른 상황 하에서의 컨베이 행위는 아래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전부 허용된다. 하위 사용허가 부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제 10조에 의해 불필요한 행위로 규정된다.

제3조. 우회금지법으로부터 사용자의 법적 권리 보호

어떤 GPL 적용 저작물도 1996년 12월 20일에 채택된 WIPO 저작권 조약의 제11조의 의무사항을 따르는 적용 법률, 혹은 유효한 기술수단의 우회행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유사 법률에 의해 유효한 기술수단의

일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GPL 적용 저작물을 컨베이하는 것은 곧 그 저작물에 대한 기술수단의 우회행동을 금지하는 모든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그 저작물과 관련하여 본 라이선스가 행사하는 권리가 그러한 우회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만큼 적용된다. 또한 저작물에 대한 조작과 수정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대하여 당신과 제 3자의 기술수단에 대한 우회행위 금지의 법적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모든 의도를 부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4조. 수정되지 않은 복제본의 컨베이 행위

당신은 다음의 사항들을 충족시킨다는 조건 하에 프로그램 소스 코드의 복제본을 수정을 가하지 않은 양도받은 상태 그대로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컨베이할 수 있다. 즉, 각 복제본에 적절한 저작권 고지를 명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공표해야 하고, 본 라이선스와 제7조에 따라 추가된 비허락적(non-permissive) 조항들이 코드에 적용된다는 내용의 고지를 모두 있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어떤 보증도 제공되지 않는다는 고지들을 전부 있는 그대로 유지하고, 수취인 모두에게 프로그램과 함께 본 라이선스의 복제본을 전달해야 한다.

복제본은 무상이나 유상으로 컨베이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받고 지원이나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수정된 소스의 컨베이 행위

당신은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킨다는 조건 하에, 제4조에 의거하여 프로그램에 기반한 저작물이나, 그 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사용된 수정물을 소스 코드 형태로 컨베이할 수 있다.

- a) 당신이 수정을 가했다는 사실 및 수정 일시를 명시하는 눈에 띄는 고지가 저작물에 담겨 있어야 한다.
- b) 저작물이 본 라이선스 및 제7조에 추가된 모든 조건들에 의거하여 릴리스 됨을 밝히는 눈에 띄는 고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 본 요구사항은 “모든 고지를 있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제4조의 요구사항에 수정을 가하게 된다.
- c) 당신은 저작물 전체에 대해 본 라이선스를 설정하여, 저작물의 복제본을 소유하게 되는 모든 이에게 본 라이선스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 따라서 본 라이선스는 제7조의 추가적 조항들과 함께 저작물의 패키징 방식과 관계없이 저작물 전체와 모든 부분들에 적용된다. 본 라이선스는 그 외에 어떤 방식으로든 저작물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당신이 별도로 얻은 권한을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 d) 저작물이 대화형 구조의 유지 인터페이스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각 인터페이스가 적절한법적 고지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대화형 구조 인터페이스가 적절한 법적 고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 당신의 저작물에서 고지를 표시하도록 만들 필요는 없다.

GPL 적용 저작물과 기타 독립적인 저작물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저장 장치나 배포매체에 저장한 저작물들은, 독립적 저작물들이 그 본질상 GPL 적용 저작물의 확장형태가 아니고, 더 큰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결합된 것도 아니며, 저장된 저작물들과 해당 저작권이 각각의 개별 저작물의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정도로 사용자들의 접근이나 법적 권한을 제한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집합물”로 지칭된다. 집합물에 GPL 적용 저작물이 포함된다고 해서 본 라이선스가 그 집합물의 다른 부분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6조. 비(非)소스 형태의 컨베이 행위

당신은 본 라이선스에 따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해당 소스도 함께 컨베이한다는 조건 하에, 제4조와 제5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로 GPL 적용 저작물을 오브젝트 코드의 형태로 컨베이할 수 있다.

- a) 오브젝트 코드를 (물리적 배포 매체를 포함한) 물리적 제품 내에 컨베이하되, 소프트웨어 상호교환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내구성 있는 물리적 매체에 해당 소스를 제품과 동봉하는 방식.
- b) 오브젝트 코드를 (물리적 배포 매체를 포함한) 물리적 제품 내에 컨베이하되, 적어도 3년 이상 유효하고 당신이 그 제품 모델에 대한 고객지원이나 부품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유효한 서면 약정서를 제품과 동봉하는 방식. 이 약정서는 오브젝트 코드를 소유하게 되는 모든 이에게 (1) 소스의 컨베이 행위에 투여되는 물리적 비용에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일정 금액을 받고, 소프트웨어 교환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내구성 있는 물리적 매체를 통해 본 라이선스가 적용된 제품 속 모든 소프트웨어의 해당 소스 복제본을 부여하거나, (2) 무상으로 네트워크 서버로부터 해당 소스를 복제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 c) 해당 소스를 제공한다는 서면 약정서의 복제본 한 부와 오브젝트 코드의 개별적인 복제본을 컨베이하는 방식. 이 방식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비상업적으로만 허용되며, 서면 약정서와 함께 제6조의 b)항에 따라 오브젝트코드를 수령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 d) 지정된 장소에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오브젝트 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추가 비용 없이 같은 방법으로 해당 소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법을 제공하여 오브젝트코드를 컨베이하는 방식. 수취인이 오브젝트코드와 함께 해당 소스까지 복제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 오브젝트 코드를 복제할 수 있는 곳이 네트워크 서버인 경우, 해당 소스는 동등한 복제 수단을 제공하는 (당신이나 제3자가 운영하는) 다른 서버에 둘 수 있다. 단, 오브젝트 코드 옆에 해당 소스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 분명한 고지를 공지해야 한다. 해당 소스를 제공하는 서버의 종류와 관계없이 당신은 이러한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 해당 소스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 e) 오브젝트 코드를 P2P 전송을 이용하여 컨베이하는 방식. 단, 이 경우, 다른 P2P 사용자들에게 저작물의 오브젝트 코드와 해당 소스가 제6조 d항에 따라 무상으로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는 장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오브젝트 코드의 해당 소스 중 시스템 라이브러리로 배제되어 분리 가능한 소스 코드 부분은 오브젝트코드 저작물을 컨베이할 때 반드시 포함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사용자 제품” 은 (1) 개인이나 가족, 가사의 용도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개인적인 유형 자산을 의미하는 “소비자 제품”이거나, (2) 거주지를 구성할 목적으로 디자인되거나 판매되는 모든 것에 해당한다. 어떤 제품이 소비자 제품인가 아닌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애매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 범위를 토대로 결정되어야 한다. 특정한 사용자가 수취한 특정 제품의 경우, “통상적인 사용 방식”이라 함은 그 유형의 제품이 전형적으로 혹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을 뜻하는 것으로, 그 사용자의 지위 내지는 그 특정한 사용자가 그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이나 사용하리라 기대되는 방식, 혹은 그가 제품에 기대하는 바와 무관하다. 실질적으로 상업적, 산업적 혹은 비(非) 소비재적 용도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용도가 제품의 유일하고 주요한 사용 방식이 아니라면 그 제품은 소비자 제품으로 규정된다. 사용자 제품의 “설치 정보”란 해당 소스의 수정본으로부터 발생한 사용자 제품 내의 저작물의 수정된 버전을 설치하고 실행하기 위한 모든 방법과 절차, 인증키, 기타 필요한 정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는 수정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인해 수정된 오브젝트 코드의 작동이 방해되거나 간섭 받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오브젝트 코드 저작물을 사용자 제품의 내부에 포함된 형태로 컨베이하거나 제품 자체와 함께, 혹은 제품 내에서 사용할 특정한 목적을 위해 컨베이하할 경우, 그리고 이러한 컨베이 행위가 사용자 제품의 소유권과 사용권이 수취인에게 영구적으로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이전되는 거래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거래의 형태와 관계없이) 본 조항에 따라 컨베이되는 해당 소스는 설치 정보를 수반해야 한다. 단, 당신이나 제3자가 수정된 오브젝트코드를 사용자 제품에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령, 저작물이 ROM에 설치된 경우) 이 요구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설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는 수취인에 의해 수정되거나 설치된 저작물이나 그 저작물이 수정되거나 설치된 사용자 제품에 대한 지원 서비스나 보증,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정행위 자체가 네트워크의 작동에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 규칙 및 프로토콜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거부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컨베이되는 해당 소스 및 역시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설치 정보는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그리고 소스 코드의 형태로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춰야 하며, 이를 풀어내거나 읽거나 복제하는 데 있어 특별한 암호나 키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추가 조건들.

“추가허용사항”은 본 라이선스의 조건들 내에서 하나 이상의 예외 조건들을 만듦으로써 이들을 보완하는 조건들이다. 프로그램 전체에 적용 가능한 추가허용사항은 관련 법률의 적절한 범위 내에서 본 라이선스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추가허용사항들이 프로그램의 일부에만 적용된다면, 해당 부분은 그 허용사항들 하에서 별도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프로그램은 추가허용사항과 관계없이 본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는다.

GPL 적용 저작물의 복제본을 컨베이하할 때는 임의대로 추가허용사항들을 복제본 전체나 일부로부터 제외시킬 수 있다. (어떤 추가허용사항은 저작물을 수정하는 특정한 경우에 그 추가허용사항을 반드시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작성될 수도 있다.) 당신은 GPL 적용 저작물에 추가한 부분으로서, 당신이 적절한 저작권 허가를 가지고 있거나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허용사항을 설정할 수 있다. 본 라이선스의 다른 규정들과 관계없이 당신이 GPL 적용 저작물에 추가한 자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 저작권 소유자가 허가한 경우) 당신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추가함으로써, 본 라이선스의 조건들을 보완할 수 있다:

- a) 본 라이선스의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보증책임을 부인하거나 면책하는 조항, 또는
- b) 해당 자료나 그것을 포함하는 저작물이 표시하는 적절한 법적 고지 내에 상술된 적절한 법적 고지나 저작자 표시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조항, 또는
- c) 해당 자료의 출처의 그릇된 표현을 금지하거나 해당 자료의 수정된 버전이 원본과 다른 적절한 방식으로 표시되도록 요구하는 조항, 또는
- d) 해당 자료의 저작자나 사용허가자의 이름을 홍보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 또는
- e) 상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사용에 대해 상표법에 따르는 권리 부여를 거부하는 조항, 또는

f) 계약에 의해 수취인이 책임을 인수하게 되는 프로그램 또는 그것의 수정본을 컨베이하는 자에 대해서, 이 계약상 인수(contractual assumptions)들이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자와 사용 허가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모든 의무에 대하여 그 저작자나 사용 허가자들을 면책하도록 요구하는 조항.

기타 비(非)허가적 추가조건들은 제10조의 해석 하에 “추가적 제한사항”으로 간주된다. 당신이 받은 프로그램의 전부 혹은 일부가 본 라이선스와 더불어 추가적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조건이 적용된다는 고지를 포함할 경우, 그 추가적 제한조건을 삭제할 수 있다. 어떤 라이선스 문서가 추가적 제한조건을 포함하되 본 라이선스에 의거한 재사용허가나 컨베이를 허용한다면, 당신은 그 라이선스 문서의 조건들이 적용된 자료를 GPL 적용 저작물에 추가할 수 있다. 단, 이는 추가적 제한조건들이 그러한 재사용허가나 컨베이 행위보다 오래 존속될 수 없다는 조건 하에 가능하다.

본 조항에 따라 GPL 적용 저작물에 조건들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파일에 적용되는 추가적 조건들에 대한 설명, 혹은 이 조건들을 찾을 수 있는 위치를 표시한 고지를 관련된 소스 파일 내에 수록해야 한다. 추가조건은, 허가적이든 제한적이든 그 성격에 관계없이 별도의 서면 라이선스의 형태로 명시되거나 혹은 예외조항으로 제시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위의 요구사항들이 적용된다.

제8조. 종료

본 라이선스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GPL 적용 저작물을 프로퍼게이트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다른 방법으로 프로퍼게이트하거나 수정하려는 시도는 전부 무효하며, 본 라이선스 (및 제11조의 세 번째 단락에 따라 부여된 모든 특허 라이선스)가 부여하는 당신의 권리는 자동적으로 박탈된다.

그러나 만약 본 라이선스에 대한 위반 행위를 모두 중단할 경우, 특정한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받은 당신의 라이선스는 (a) 저작권 소유자가 최종적으로 당신의 라이선스를 명백하게 종료시키지 않는 한, 혹은 종료시킬 때까지 조건부로 회복되며, (b) 위반 행위를 중단한지 60일이 지나기까지 저작권 소유자가 적절한 수단을 통해 당신에게 위반 사실을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회복된다.

또한 저작권 소유자가 적절한 수단을 통해 당신에게 위반사실을 통지하고, 그것이 이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받은 최초의 위반 통지이며, 당신이 통지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위반 행위를 교정하는 경우에도 특정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받은 당신의 라이선스는 영구적으로 회복된다.

본 조항에 의거하여 당신의 권리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당신으로부터 본 라이선스를 통해 복제본이나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들의 라이선스까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의 권리가 종료되고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못했다면, 당신은 제 10조에 의해 동일한 자료에 대한 새로운 라이선스를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제9조. 복제본 소유에 대한 라이선스 수용의 조건

프로그램의 복제본을 수취하거나 실행할 때는 본 라이선스를 수용할 필요가 없다. GPL 적용 저작물의 사본을 받기 위해 P2P 전송 방식을 사용한 결과로 발생한 부수적 프로퍼게이트 행위 역시 본 라이선스의 수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GPL 적용 저작물을 프로퍼게이트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본 라이선스가 유일하다. 본 라이선스를 수용하지 않고 행하는 프로퍼게이트나 수정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GPL 적용 저작물에 대한 수정 혹은 프로퍼게이트 행위는 자동적으로 본 라이선스를 수용한다는 의미가 된다.

제10조. 수취인의 자동적인 사용허가

GPL 적용 저작물을 컨베이하를 때마다 수취인은 본 라이선스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저작물을 실행, 수정

및 프로퍼게이트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최초의 사용 허가자로부터 자동적으로 받게 된다. 당신은 제3자가 본 라이선스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의무는 없다.

“법인거래”란 하나의 조직 또는 그 조직의 실질적인 모든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하거나, 하나의 조직을 분할하거나 여러 개의 조직들을 합병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어떤 GPL 적용 저작물의 프로퍼게이트 행위가 법인 거래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저작물의 복제본을 양도 받는 거래의 각 당사자는 전임자가 소유 및 양도할 수 있었던 모든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를 함께 받는다. 이와 더불어 만약 전임자가 저작물의 해당 소스를 확보하고 있거나 적절한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다면, 그 해당 소스에 대한 소유권 역시 함께 받게 된다.

본 라이선스가 부여하거나 인정한 권리의 행사에 대해 어떤 추가적 제한도 가해져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본 라이선스가 부여하는 권리의 이행에 대해 사용허가 수수료, 로열티를 비롯한 기타 부과금을 강제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 전체나 일부를 타인이 제작, 사용, 판매, 판매를 위한 청약 또는 수입함으로써 특허 소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교차청구 및 반소를 포함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 특허

“기여자”란 본 라이선스에 의거하여 프로그램 혹은 프로그램에 기반한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해주는 저작권자이다. 이런 식으로 사용허가가 이루어진 저작물을 “기여자 버전”이라고 부른다. 기여자의 “필수 특허청구범위”란 기여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현존 또는 잠재적 특허 전부에 대한 특허청부범위로서, 기여자 버전을 제작하거나 사용하거나 판매함에 있어 본 라이선스가 허용하는 일부 방식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특허 청구 범위이다. 그러나 기여자 버전의 수정에 의해서만 침해되는 청구범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본 정의와 관련하여 “통제”는 본 라이선스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특허 재실시권을 부여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각 기여자는 필수 특허청구범위 하에 전세계적으로 사용가능하고 로열티가 없는 비독점 특허 라이선스를 당신에게 부여한다. 이 특허를 통해 기여자 버전을 제작, 사용, 판매, 판매를 위한 청약, 수입 및 다른 방식으로 실행, 개조 및 프로퍼게이트할 수 있다.

아래의 세 단락에서 “특허 라이선스”란 이름에 관계없이 특허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동의나 위임(특허 사용에 대한 명확한 허가나 특허 침해에 대해 고소하지 않겠다는 서약 등)을 의미한다. 특허 라이선스를 “부여”한다는 것은 라이선스를 부여 받는 사람에 대해 특허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계약이나 약속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당신이 특허 라이선스를 인지하고 그것에 의존하여 GPL 적용 저작물을 컨베이하할 때, 그 저작물의 해당 소스가 본 라이선스의 조건하에 누구라도 공공적인 네트워크 서버나 기타 접근이 용이한 수단을 통해 무료로 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면, (1) 그런 방식으로 해당 소스를 접근 가능하게 만들거나, 혹은 (2) 이 특정 저작물의 특허 라이선스가 당신에게 부여하는 이권을 제거하거나, 혹은 (3) 본 라이선스가 요구하는 바에 준하는 방식으로 후방(downstream) 수취인들에게도 특허 라이선스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허 라이선스를 “인지하고 그것에 의존한다”는 것은 특허 라이선스에도 불구하고, 특정 국가에서 GPL 적용 저작물을 컨베이하하는 행위 또는 수취인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해당 국가에서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특허를 한 개 이상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개별 거래나 협정에 의하거나 그와 관련되어 GPL 적용 저작물을 컨베이하하거나, 혹은 컨베이하 행위를 알선함으로써 프로퍼게이트할 경우에, 수취인 중 일부에게 특허 라이선스를 부여함으로써 저작물의 특정 복제본을 사용, 프로퍼게이트, 수정, 혹은 컨베이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면, 당신이 부여한 특허

라이선스는 해당 GPL 적용 저작물 및 이에 기반한 저작물을 양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자동적으로 확장된다. 어떤 특허 라이선스가 본 라이선스가 부여하는 한 개 이상의 특정 권리를 그 적용범위 내에 포함하지 않거나 그 권리들의 실행을 금지하는 경우, 혹은 그 권리들의 불이행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 그 특허 라이선스는 “차별적”인 것이다. 만약 어떤 소프트웨어 배포 사업을 하는 제3자와 협정을 맺어, 저작물을 컨베이하는 활동 범위에 따라 제3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제3자가 당신에게서 GPL 적용 저작물을 양도 받은 사람들에게 (a) 당신이 컨베이하 GPL 적용 저작물의 복제본과 관련된 방식, 혹은 (b) GPL 저작물을 포함하는 특정 제품이나 편집 저작품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관련된 방식으로 차별적인 특허 라이선스를 부여한다면, GPL 적용 저작물을 컨베이하할 수 없다. 단, 본 사항은 제3자와의 협정이나 특허 라이선스의 부여가 2007년 3월 28일 이후에 이루어졌을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본 라이선스의 내용 중 그 무엇도 관련 특허 법률이 허용하는 묵시적 라이선스나 기타 특허침해에 대한 방어책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12조. 타인의 자유 보장

만약 본 라이선스의 조건들에 위배되는 조건들이 (법령이나 합의 등의 방식으로) 당신에게 부과될 경우라도 본 라이선스의 규정들로부터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GPL 적용 저작물을 컨베이하하는 데 있어 본 라이선스의 의무사항과 기타 다른 관련 의무사항들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컨베이하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당신이 프로그램을 컨베이하하는 수취인으로부터 로열티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 그 조건과 본 라이선스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컨베이하 행위 자체를 하지 않는 것밖에 없다.

제13조. GNU Affero 일반 공중 라이선스와의 병행사용

본 라이선스의 다른 어떤 조항들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GPL 적용 저작물을 GNU Affero 일반 공중 라이선스 버전3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과 결합하거나 연결하여 하나의 저작물로 만들 수 있고, 그 결과로 생긴 저작물을 컨베이하할 수 있다. GPL 적용 저작물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본 라이선스의 조건들이 지속적으로 적용되지만, GNU Affero 일반 공중 라이선스 제13조에 제시된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작용에 관한 특별 조건들은 결합된 형태의 저작물 전체에 적용된다.

제14조. 본 라이선스의 개정판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때때로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개정판이나 신규 버전을 공표할 수 있다. 새롭게 공표될 신규 버전은 기본적인 취지에 있어 원판과 변함이 없을 것이지만, 새로운 문제나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각각의 판들은 버전 넘버를 사용해서 구별된다.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어떤 특정한 버전 넘버 또는 “그 이후에 출시된 버전(any later version)”을 따른다는 사항이 명시된 프로그램에는 해당 버전이나 그 이후에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발행된 어떤 버전을 선택해서 적용해도 무방하다.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버전 넘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어떠한 버전의 판을 적용해도 무방하다.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미래 버전의 선택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고 프로그램에 명시된 경우, 그 대리인이 특정 버전의 수용을 공표함으로써 당신이 그 프로그램에 사용하게 될 버전이 영구적으로 결정된다.

이후에 발표될 라이선스 버전들이 허용사항을 추가하거나 다른 허용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버전을 따른다고 해서, 저자 또는 저작권자가 추가적인 의무를 강요 받지 않는다.

제15조. 보증의 부인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되지 않는다.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 배포자가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별도의 보증을 서면으로 제공할 때를 제외하면, 특정한 목적에 대한 프로그램의 적합성이나 상품성 여부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이 프로그램을 배포한다. 프로그램의 품질과 성능에 관련된 모든 위험은 당신에게 있다. 프로그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이에 따라 필요한 보수 및 복구를 위한 제반 경비는 당신이 부담해야 한다.

제16조. 책임의 제한

관련 법규나 서면 동의에 의해 구속되지 않는 한, 저작권자나 제3자가 손해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경우를 포함하여, 어떤 경우에도 저작권자 혹은 위에서 허가한 대로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컨베이션 제3자는 프로그램의 사용이나 작동 불능으로 인해 발생한 일반적이거나 특수한 손해, 우발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은 사용자나 제3자가 프로그램을 조작함으로써 발생된 손실이나 다른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을 함께 동작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데이터의 상실 및 부정확한 산출 결과에도 적용되나, 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제17조. 제15조와 제16조의 해석

상기된 보증의 부인이나 면책이 특정 지역에서 각 조항의 내용에 상응하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면, 해당 법정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민사 책임의 완벽한 포기여 가장 근접한 지역법을 적용해야 한다. 요금을 지불한 대가로 프로그램의 복제본과 함께 보증을 제공하거나 책임을 인수한 경우는 예외이다.

규정과 조건의 끝

새로운 프로그램에 본 규정들을 적용시키는 방법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것이 대중에게 가장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면, 누구나 본 규정들에 따라 그 프로그램을 재배포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고지들을 프로그램에 부착하면 된다. 보증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각 소스 파일의 시작 부분에 부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각각의 파일에는 적어도 “저작권” 부분과 전체 고지 사항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는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이름과 용도를 한 줄 정도로 설명한다.

Copyright (C) <연도> <저작자의 이름>

이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입니다. 당신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 버전 3 또는 그 이후 버전을 임의로 선택해서 그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서 배포되고 있지만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품성 또는 특정 목적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 역시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는 이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됩니다. 만약, 라이선스를 받지 못했다면,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www.gnu.org/licenses>>

또한, 당신에게 전자 메일과 서면으로 연락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해야 한다.

만약 프로그램이 단말기 간의 대화형 구조로 되어 있다면, 대화형 방식이 실행되는 순간에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출력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저작권 (C) <연도> <저작자명>

이 프로그램에는 제품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show w' 명령어를 입력하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로서 배포규정을 만족시키는 조건 하에서 자유롭게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show w' 명령어를 통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show w'와 'show c' 는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해당 부분을 보여주는 가상의 명령어이다. 물론 당신의 프로그램에 다른 형태의 명령어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GUI 인터페이스라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학교나 기업 등에 소속되어 있다면, 필요할 경우 고용주나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포기 각서를 받아야 된다. 이와 관련한 정보나 GNU GPL의 적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gnu.org/licenses>> 를 참고하면 된다.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유(proprietary) 소프트웨어와 함께 결합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의 프로그램이 서브루틴 라이브러리일 경우에는 사유 소프트웨어가 해당 라이브러리를 링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 라이선스 대신 GNU 라이브러리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를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먼저 다음 사이트의 내용을 읽어보기 바란다. <<http://www.gnu.org/philosophy/why-not-lgpl.html>>

※ 출처 : <http://wiki.kldp.org/wiki.php/GNU/GPLV3Translation>

□ LGPL 2.1 라이선스 한글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2.1판, 1999년 2월

Copyright (C) 1991, 1999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1 Franklin Street, Fifth Floor, Boston, MA 02110-1301, USA

누구든지 본 사용 허가서를 있는 그대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대한 수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의 이름으로 공표된 최초의 판본입니다.

본 사용 허가서는 GNU 라이브러리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2판의 후속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2.1의 판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전 문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사용 허가서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과 공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들은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과 공유의 자유를 모든 사용자들에게 보장하기 위해서 성립된 것입니다.

본 사용 허가서인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이하, "LGPL"이라고 칭합니다.)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과 그밖의 저작자들이 이를 채택하기로 결정한, 주로 라이브러리와 같은 일부 특정한 소프트웨어 꾸러미에 적용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프로그램에 LGPL을 적용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용 허가서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나은 전략인지에 대해서 다음의 설명을 기준으로 먼저 신중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말에서 사용된 "자유"라는 단어는 무료를 의미하는 금전적인 측면의 자유가 아니라 구속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며,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들은 자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복제와 개작 및 배포와 수익 사업 등의 가능한 모든 형태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시 코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용해서 보다 개선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자신에게 양도된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양도받은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포자들이 이러한 권리를 부정하거나 포기하도록 피양도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사항은 라이브러리를 개작하거나 배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없이 지켜야 할 의무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LGPL 라이브러리를 배포할 경우에는 이를 유료로 판매하거나 무료로 배포하는 것에 관계없이 자신이 해당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권리를 피양도자에게 그대로 양도해 주어야 하고, 라이브러리의 원시 코드를 함께 제공하거나 원시 코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라이브러리에 다른 코드를 링크시켰다면, 라이브러리를 수정한 뒤에도 정상적으로 컴파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링크 되었던 코드에 해당하는 완전한 목적 파일 전체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피양도자에게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1) 라이브러리에 저작권을 설정합니다. (2) 저작권의 양도에 관한 실정법에 의해서 유효한 법률적 효력을 갖는 LGPL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복제하거나 개작 및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합니다.

모든 배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 라이브러리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둡니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복적인 재배포 과정을 통해 라이브러리 자체에 수정과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이는 최초의 저작자가 만든 라이브러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개연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작과 재배포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발생한 문제로 인해 라이브러리의 원저작자의 신망이 실추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특허 제도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존재를 위협하는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특허권자로부터 기업이 제한적인 사용 허가를 얻은 뒤에 이를 통해 자유 프로그램의 사용자들을 규제할 수 없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정한 버전의 라이브러리에 대한 어떠한 특허 사용 허가의 취득도 LGPL에 규정된 자유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몇몇 라이브러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GNU 소프트웨어에는 GPL이 적용됩니다. 본 사용 허가서인 LGPL은 특정한 라이브러리에만 적용되며 GPL과는 상당히 다른 면을 갖고 있습니다. LGPL은 특정한 라이브러리가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과 함께 링크되는 것을 허용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라이브러리와 함께 링크된다면, 라이브러리가 정적으로 링크되든지 공유 라이브러리로 사용되든지 간에 이 두개의 조합은 법적으로 말할 때 결합 저작물, 즉 최초의 라이브러리로부터 파생된 2차적 저작물로 간주됩니다. GPL은 이러한 형태의 링크가 일어날 경우에 결합된 전체 저작물이 GPL을 만족할 때에 한해서만 링크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LGPL은 보다 유연한 링크 조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사용 허가서를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용자들의 자유를 보호하는 강도를 GPL보다 경감시켰기 때문입니다. 또한 LGPL은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과 경쟁하는데 있어서 자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GPL보다 이점을 덜 제공합니다. 우리가 많은 종류의 라이브러리에 LGPL이 아닌 일반적인 GPL을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LGPL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극히 드문 예이긴 하지만, 어떤 라이브러리의 사용 폭을 가능한 넓게 유도해서 그것을 사실상의 표준으로 만들어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도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보다 흔한 또 한가지 예로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라이브러리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을 때 이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자유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유 라이브러리의 사용을 자유 소프트웨어에만 한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LGPL을 사용합니다.

또 하나의 예는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에 특정한 라이브러리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들이 GNU C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사람들이 GNU 운영체제와 GNU/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LGPL이 사용자의 자유를 보다 약소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GPL로 설정된 라이브러리와 링크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라이브러리가 개작되더라도 개작된 버전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확실한 자유와 이에 필요한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과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의 차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전자는 라이브러리로부터 파생된 코드를 담고 있는 저작물을 의미하는데 반해서 후자는 실행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와 결합되어야 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한 조건과 규정

제 0 조. 본 사용 허가 계약은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이하, “**LGPL**”이라고 칭합니다.)의 규정에 따라 배포될 수 있다는 사항이 저작권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자에 의해서 명시된 모든 종류의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고 칭합니다.)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피양도자**”란 **LGPL**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양도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라이브러리”란 소프트웨어 함수와 데이터를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수집해 놓은 것으로 이들 중 일부를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과 링크되어 실행물을 생성하는데 편리하도록 미리 준비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하로 언급되는 “라이브러리”는 본 사용 허가서에 의해서 배포되고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와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은 라이브러리 또는 저작권법에 따른 라이브러리의 2차적 저작물을 모두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술한 라이브러리 자신 또는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라이브러리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원용하거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을 포함할 수 있는 개작 과정을 통해서 창작된 새로운 라이브러리와 이와 관련된 저작물입니다. (이후로 다른 언어로의 번역은 별다른 제한 없이 개작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저작물에 대한 “**원시 코드**”란 해당 저작물을 개작하기에 적절한 형식을 의미합니다. 라이브러리에 대한 완전한 원시 코드는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모든 모듈들의 원시 코드와 이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모두, 그리고 라이브러리의 컴파일과 설치를 제어하는데 사용된 스크립트 전부를 의미합니다.

본 허가서는 복제와 개작 및 배포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결과물에는, 결과물을 생성하기 위한 도구로 라이브러리가 사용되었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결과물이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을 구성했을 때에 한해서 본 허가서의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2차적 저작물의 구성 여부는 2차적 저작물 안에서의 라이브러리의 역할과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프로그램의 역할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제 1 조. 적절한 저작권 표시와 라이브러리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각각의 복제물에 명시하는 한, 피양도자는 라이브러리의 원시 코드를 자신이 양도받은 상태 그대로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복제와 배포가 이루어 질 때는 본 허가서와 라이브러리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되었던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하며, 영문판 **LGPL**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배포자는 복제물을 물리적으로 인도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선택 사항으로 독자적인 유료 보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2 조. 피양도자는 자신이 양도받은 라이브러리의 전부나 일부를 개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습니다. 개작된 라이브러리나 창작된 2차적 저작물은 다음의 사항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또다시 복제되고 배포될 수 있습니다.

제 1 항. 개작된 저작물은 반드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어야 합니다.

제 2 항. 파일을 개작할 때는 파일을 개작한 사실과 그 날짜를 파일 안에 명시해야 합니다.

제 3 항. 저작물 전체에 대한 사용 권리를 본 허가서의 규정에 따라 공중에게 무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제 4 항. 개작된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기능이 그 기능을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제공되는 함수나 데이터 테이블을 참조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능이 호출되었을 때 매개 인수를 전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용 프로그램이 그러한 함수나 테이블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능이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목적하는 모든 부분이 확실하게 유효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제공된 연산 함수는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명확하고 완전하게 독립적인 형태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제2조 4항은 제공된 연산 함수가 어떠한 응용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함수나 테이블도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않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규정합니다. 즉, 응용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기능 없이도 제공된 연산 함수가 제공근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의 조항들은 개작된 라이브러리 전체에 적용됩니다. 만약, 개작된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특정 부분이 라이브러리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닌 별도의 독립 저작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개별적인 배포에는 본 허가서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물이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의 일부로서 함께 배포된다면 개별적인 저작권과 배포 기준에 상관없이 저작물 모두가 본 허가서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하며, 전체 저작물에 대한 사용 권리는 공중에게 무상으로 양도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개별적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라이브러리로부터 파생된 2차적 저작물이나 수집 저작물의 배포를 일관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이브러리나 라이브러리로부터 파생된 2차적 저작물을 이들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다른 저작물과 함께 단순히 저장하거나 배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한 매체에 모아 놓은 집합물의 경우에는, 라이브러리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다른 저작물에는 본 허가서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3 조. 피양도자는 자신이 양도받은 라이브러리의 복제물에 LGPL 대신 GPL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LGPL에 대해서 언급되었던 모든 사항을 GPL 2판으로 대체시켜야 합니다. (GPL 2판보다 신판이 공표되었을 경우에는 원한다면 신판의 판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사항들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복제물에 대해서 이러한 수정이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GPL로 변경된 사용권 허가를 다시 변경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서 해당 복제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든 저작물과 복제물에는 GPL이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선택 사항은 라이브러리의 코드 일부분을 라이브러리가 아닌 일반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 유용합니다.

제 4 조. 피양도자는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라이브러리(또는 제2조에 의한 라이브러리의 일부나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를 목적 코드나 실행물의 형태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목적 코드나 실행물에 상응하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원시 코드를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교환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목적 코드를 지정한 장소로부터 복제해 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배포할 경우, 동일한 장소로부터 원시 코드를 복제할 수 있는 동등한 접근 방법을 제공한다면 이는 원시 코드가 목적 코드와 함께 복제되도록 설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시 코드를 배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5 조. 라이브러리의 어떠한 부분으로부터의 파생물도 포함하지 않지만, 컴파일 또는 링크를 통해서 라이브러리와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이 됩니다. 이러한 저작물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을 때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파생물이 아니므로 본 사용 허가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이 라이브러리와 링크된 결과로 생성된 실행물은, 실행물 안에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을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생성된 실행물은 본 사용 허가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6조는 이러한 종류의 실행물의 배포를 위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이 라이브러리의 일부인 헤더 파일의 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한 저작물의 원시 코드가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목적 코드는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이 성립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러한 저작물 자체가 라이브러리가거나 저작물에 사용된 라이브러리 없이도 링크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차이를 갖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성립될 수 있는 명확한 판단 기준은 법률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와같은 형태의 목적 파일이 단지 숫자 매개 변수와 자료 구조의 설계 형태 및 이에 대한 접근 도구 그리고 10행 미만으로 이루어진 작은 인라인 함수와 매크로만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법적 기준에 의한 2차적 저작물의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 코드와 라이브러리의 일부가 함께 포함된 실행물은 여전히 제6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저작물이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이라면 해당 저작물에 대한 목적 코드는 제6조에 따라 배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저작물을 포함한 실행물들은 기반이 된 라이브러리에 직접 링크되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제6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 6 조. 위의 조항들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라이브러리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을 함께 결합하거나 링크시켜서 라이브러리의 일부분이 포함된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이를 자신이 선택한 규정에 따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포 규정에는 피양도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저작물을 개작할 수 있으며 개작에 따른 디버깅을 위해 코드역분석(reverse engineering)을 허용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이브러리와 라이브러리의 사용에는 본 사용 허가서가 적용된다는 것과 저작물 안에 이러한 라이브러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담고 있는 안내 문구를 모든 복제물에 분명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영문판 LGPL 사본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저작물이 실행될 때 저작권 사항이 표시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 라이브러리에 대한 저작권 사항도 함께 포함시켜야 하며 LGPL 사본을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중 하나의 사항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합니다.

제 1 항. 저작물에 포함된 라이브러리에 어떠한 수정이 가해졌다 하더라도 해당 라이브러리에 대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원시 코드를 저작물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이 원시 코드는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저작물이 라이브러리와 링크되는 실행물이었을 경우에는 피양도자가 실행물과 링크되는 라이브러리를 개작한 뒤에도 링크를 통해 새로운 실행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저작물”로서 배포된 저작물에 해당하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원시 코드와 목적 코드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제공해야 합니다.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정의 파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정의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반드시 다시 컴파일할 필요는 없다는 점은 인정됩니다.)

제 2 항. 라이브러리는 적절한 공유 라이브러리 방식을 사용해서 링크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방식이란, (1) 라이브러리의 함수를 실행물 속으로 직접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시점에서 볼 때 이미 사용자의 컴퓨터 시스템 상에 존재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의 복제물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2) 사용자가 개작된 라이브러리를 설치한 경우에도 개작된 라이브러리가 저작물을 만들 때 사용된 라이브러리의 버전과 인터페이스상으로 호환되는 한, 적절하게 동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3 항. 배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피양도자에게 제6조 1항에 규정된 자료를 배포하겠다는, 최소한 3년간 유효한 약정서를 저작물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제 4 항. 저작물을 지정한 장소로부터 복제해 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배포하는 경우, 동일한 장소로부터 제6조 1항에 규정된 자료를 복제할 수 있는 동등한 접근 방법을 제공하는 것은 저작물에 대한 배포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5 항. 피양도자가 제6조 1항에 규정된 자료의 복제물을 이미 수령했는지 확인하거나 자신이 피양도자에게 그러한 자료를 이미 송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행물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의 형태로 배포된다면 여기에는 실행물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틸리티 프로그램과 데이터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예외의 하나로서, 실행물이 실행될 운영체제의 주요 부분(컴파일러나 커널 등)과 함께 (원시 코드나 바이너리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배포되는 구성 요소들은 이러한 구성 요소 자체가 실행물에 수반되지 않는한 배포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운영체제에 함께 수반되지 않는 독점 라이브러리들의 사용 허가서와 충돌하게 될 경우에는 배포하고자 하는 실행물 안에 본 사용 허가서가 적용되는 라이브러리와 독점 라이브러리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로서의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본 사용 허가서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라이브러리의 일부와 하나의 라이브러리 안에 병존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합 라이브러리를 배포할 경우에는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라이브러리가 별도로 배포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하며 다음의 두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 1 항. 결합 라이브러리를 구성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의 복제물을 결합되지 않은 독립된 상태로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이 복제물의 배포에는 위의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제 2 항.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의 일부가 결합 라이브러리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제7조 1항에 의해서 제공된 결합되지 않은 상태의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의 위치 정보를 명기해야 합니다.

제 8 조. 본 허가서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 한 라이브러리에 대한 복제와 개작, 하위 허가권 설정과 링크 및 배포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무효이며 본 허가서가 보장한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러나 본 허가서의 규정에 따라 라이브러리의 복제물이나 권리를 양도받았던

제3자는 본 허가서의 규정들을 준수하는 한, 배포자의 권리 소멸에 관계없이 사용상의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본 허가서는 서명이나 날인이 수반되는 형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양도자가 본 허가서의 내용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라이브러리나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개작 및 배포를 허용하는 것은 본 허가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본 허가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법률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라이브러리(또는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을 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이에 따른 본 허가서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한 본 허가서의 조건과 규정들을 모두 받아들여야겠다는 의미로 간주됩니다.

제 10 조. 피양도자에 의해서 라이브러리(또는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이 반복적으로 재배포될 경우, 각 단계에서의 피양도자는 본 허가서의 규정에 따른 라이브러리의 복제와 개작, 링크, 배포에 대한 권리를 최초의 양도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자동적으로 간주됩니다. 라이브러리(또는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을 배포할 때는 피양도자의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양도자에게 재배포가 일어날 시점에서의 제3의 피양도자에게 본 허가서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책임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 11 조. 법원의 판결이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주장 또는 특허 문제에 국한되지 않은 그밖의 이유들로 인해서 본 허가서의 규정에 배치되는 사항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항이 선행하거나 본 허가서의 조건과 규정들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의 명령이나 합의 등에 의해서 본 허가서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발생한 상황이라도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라이브러리는 배포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특허 관련 허가가 라이브러리의 복제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양도받은 임의의 제3자에게 해당 라이브러리를 무상으로 재배포할 수 있게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허가와 본 사용 허가를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라이브러리를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본 조항은 특정한 상황에서 본 조항의 일부가 유효하지 않거나 적용될 수 없을 경우에도 본 조항의 나머지 부분들을 적용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 졌습니다. 따라서 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본 조항을 전체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본 조항의 목적은 특허나 저작권 침해 등의 행위를 조장하거나 해당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공중 사용 허가서들을 통해서 구현되어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배포 체계를 통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포 체계에 대한 신뢰있는 지원을 계속해 줌으로써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분야에 많은 공헌을 해 주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어떠한 배포 체계를 통해 배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작자와 기증자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일반 사용자들이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본 조항은 본 허가서의 다른 조항들에서 무엇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 12 조. 특허나 저작권이 설정된 인터페이스로 인해서 특정 국가에서 라이브러리의 배포와 사용이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본 사용 허가서를 라이브러리에 적용한 최초의 저작권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국가에 한해서 라이브러리를 배포한다는 배포상의 지역적 제한 조건을 명시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본 허가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제 13 조.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때때로 본 사용 허가서의 개정판이나 신판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공표될 판은 당면한 문제나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근본정신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각각의 판들은 판번호를 사용해서 구별됩니다. 특정한 판번호와 그 이후 판을 따른다는 사항이 명시된 라이브러리에 해당 판이나 그 이후에 발행된 어떠한 판을 선택해서 적용해도 무방하고, 판번호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어떠한 판번호의 판을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제 14 조.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본 허가서와 배포 기준이 다른 자유 프로그램과 함께 결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청을 수락하기 위해서 때때로 예외 기준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일반적으로 자유 소프트웨어의 2차적 저작물들을 모두 자유로운 상태로 유지시키려는 목적과 소프트웨어의 공유와 재활용을 증진시키려는 두가지 목적을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보증의 결여 (제15조, 제16조)

제 15 조. 본 허가서를 따르는 라이브러리는 무상으로 양도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라이브러리의 저작권자와 배포자가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별도의 보증을 서면으로 제공할 때를 제외하면, 특정한 목적에 대한 라이브러리의 적합성이나 상업성 여부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이 라이브러리를 배포합니다. 라이브러리와 라이브러리의 실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피양도자에게 인수되며 이에 따른 보수 및 복구를 위한 제반 경비 또한 피양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제 16 조. 저작권자나 배포자가 라이브러리의 손상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발생한 손실이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고 있거나 이에 대한 별도의 서면 보증이 설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자나 라이브러리를 원래의 상태 또는 개작한 상태로 제공한 배포자는 라이브러리의 사용이나 비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나 라이브러리 자체의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면책 조건은 사용자나 제3자가 라이브러리를 조작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이나 다른 소프트웨어와 라이브러리를 함께 동작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데이터의 상실 및 부정확한 산출 결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생한 손실의 일반성이나 특수성 뿐 아니라 원인의 우발성 및 필연성도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한 조건과 규정의 끝.

새로운 라이브러리에 LGPL을 적용하는 방법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고 그 라이브러리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본 허가서나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를 선택적으로 적용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개작하고 재배포할 수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라이브러리를 자유 소프트웨어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라이브러리에 추가하면 됩니다. 라이브러리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원시 코드 파일의 시작 부분에 이러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파일에는 최소한 저작권을 명시한 행과 본 사용 허가서의 전체 내용을 참고할 수 있는 위치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라이브러리의 이름과 용도를 한 줄 정도로 설명합니다.

Copyright (C) 20yy년 <프로그램 저작자의 이름>

이 라이브러리는 자유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의 피양도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2.1판 또는 그 이후 판을 임의로 선택해서, 그 규정에 따라 라이브러리를 개작하거나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서 배포되고 있지만, 특정한 목적에 맞는 적합성 여부나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묵시적인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이 라이브러리와 함께 제공됩니다. 만약, 이 문서가 누락되어 있다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9 Temple Place - Suite 330, Boston, MA 02111-1307, USA)

또한, 사용자들이 라이브러리를 배포한 사람에게 전자 메일과 서면으로 연락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해야 합니다.

만약, 라이브러리의 저작자가 학교나 기업과 같은 단체나 기관에 프로그래머로 고용되어 있다면 라이브러리의 자유로운 배포를 위해서 고용주나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라이브러리에 대한 저작권 포기 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형식이 될 수 있다. (아래의 문구를 실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예로 사용된 이름들을 실제 이름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본사는 제임스 해커가 만든 (설정 옵션을 조정하기 위한) 'Frob' 라이브러리에 관련된 모든 저작권을 포기합니다.

1990년 4월 1일

Yoyodye, Inc., 부사장: Ty Coon

서명: Ty Coon의 서명

이것이 필요한 작업의 전부입니다!

※ 출처 : <http://korea.gnu.org/people/chsong/copyleft/lgpl.ko.html>

□ LGPL 3.0 라이선스 한글

GNU 약소 일반 공중 라이선스

버전 3, 2007년 6월 29일

Copyright (C) 2007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http://fsf.org/>

누구든지 본 라이선스를 원문 그대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다. 그러나 본문에 대한 수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0조. 추가적 정의

본문 중에서 “본 라이선스”는 GNU 약소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버전 3, GNU GPL은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버전3을 의미한다.

“라이브러리”란 아래에 정의된 응용 프로그램이나 결합 저작물을 제외하고 본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는 GPL 적용 저작물을 지칭한다.

“응용프로그램”이란 라이브러리에 의해 제공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만, 라이브러리에 기반하지는 않는 모든 저작물을 의미한다. 라이브러리에 의해 정의된 클래스의 서브클래스를 정의하는 것은 라이브러리에 의해 제공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형식으로 간주된다.

“결합 저작물”이란 라이브러리에 응용프로그램을 결합하거나 링크로 연결하여 생성된 저작물을 의미한다. 결합 저작물을 만들 때 사용된 라이브러리의 특정 버전은 “연결 버전”이라고 지칭한다.

결합 저작물의 “최소 해당 소스”란 결합 저작물의 해당 소스 중에서, 독립적으로 간주될 때 연결 버전이 아닌 응용프로그램에 기반한 결합 저작물의 일부를 위한 소스 코드를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결합 저작물의 “해당 응용프로그램 코드”는 응용프로그램으로부터 결합 저작물을 재생성 시키는데 요구되는 모든 데이터와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포함하며, 결합저작물의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제외한, 응용프로그램을 위한 오브젝트 코드 및 소스코드를 의미한다.

제1조. GNU GPL 3조의 예외

GNU GPL의 제3조의 조건과 관계없이 본 라이선스의 제3조와 제4조의 조항에 따라 GPL 적용 저작물을 컨베이하할 수 있다.

제2조. 수정된 버전에 대한 컨베이하

라이브러리의 복제본을 수정하는데 있어, 어떤 기능이 그 기능을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어떤 함수나 데이터를 언급할 경우 (기능이 호출될 때 전달되는 인수는 제외함),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 수정된 버전의 복제본을 컨베이하할 수 있다.

a) 본 라이선스에 따라서 컨베이하 한다. 단, 응용프로그램이 함수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능이 작동하고 본래의 목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또는,

b) GNU GPL에 따라서 컨베이 한다. 이 경우, 본 라이선스의 추가적 허용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의 자료를 결합하는 오브젝트 코드

응용프로그램의 오브젝트 코드는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구성하는 헤더 파일의 자료를 결합한 형태로 작성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오브젝트 코드와 결합된 자료가 숫자 매개변수, 데이터 구조의 설계형태, 접근도구, 작은 매크로, (10행 이하의) 인라인 함수, 그리고 템플릿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오브젝트 코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조건 하에 당신이 임의로 정한 규정에 따라 컨베이 될 수 있다.

a) 오브젝트 코드 내에 라이브러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라이브러리 및 라이브러리의 사용에 대해 본 라이선스가 적용된다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각 복제본에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b) GNU GPL의 사본 및 본 라이선스 문서를 오브젝트 코드에 첨부해야 한다.

제4조. 결합 저작물

당신은 임의로 정한 조건에 따라 결합 저작물을 컨베이할 수 있다. 단, 당신이 정한 조건들은 결합 저작물 내에 포함된 라이브러리의 일부에 대한 수정 및 그 수정 부분을 디버깅하기 위한 역공학에 대해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되며,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a) 결합 저작물 내에 라이브러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라이브러리 및 라이브러리의 사용에 대해 본 라이선스가 적용된다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각 복제본에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b) GNU GPL의 사본 및 본 라이선스 문서를 결합 저작물과 함께 제공해야 한다.

c) 결합 저작물이 실행되는 도중에 저작권 사항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라이브러리에 대한 저작권 사항도 함께 포함시켜야 하며, GNU GPL 및 본 라이선스의 사본을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d)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0) 해당 소스의 컨베이 행위에 관한 GNU GPL의 제6조에 상술된 방식에 기반하여, 최소 해당 소스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에 따라 컨베이하고, 해당 응용프로그램 코드는 사용자가 응용프로그램과 연결 버전의 수정된 버전을 재결합 혹은 재연결하여 수정된 결합 저작물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이에 적합한 형태로 컨베이 해야 한다.

1) 라이브러리와 연결시키기에 적절한 공유 라이브러리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적절한 방식이란, (a) 실행 시점에서 볼 때 이미 사용자의 컴퓨터 시스템 상에 존재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의 복제물을 사용하는 방식, 그리고 (b) 연결 버전과 인터페이스 상으로 호환되는, 라이브러리의 수정된 버전으로도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한다.

e) GNU GPL의 제6조에 따라 설치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를 받게 될 경우에 한해 설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설치 정보는 응용프로그램과 연결 버전의 수정 버전을 재결합하거나 재연결한 결과로 생성된, 수정된 버전의 결합 저작물을 설치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에 한한다. (제4조 d항의 0번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해당 소스와 해당 응용프로그램 소스와 함께 설치 정보가 동반되어야 한다.

4조d항의 1번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스의 컨베이 행위에 대한 GNU GPL의 제6조에 상술된 방식으로 설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 결합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인 라이브러리의 기능을 본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라이브러리의 기능들과 하나의 라이브러리 내에 병존시키고, 이러한 결합 라이브러리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는 조건 하에, 당신이 임의로 정한 규정에 따라 컨베이할 수 있다.

- a)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의 복제물을 다른 어떤 라이브러리와도 결합되지 않은 독립된 상태로 결합 라이브러리와 함께 제공해야 하며, 이는 본 라이선스의 규정에 따라 컨베이 되어야 한다.
- b) 결합 라이브러리의 일부가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그 저작물의 결합되지 않은 형태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제6조. GNU 약소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개정판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때때로 GNU 약소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개정판이나 신규 버전을 공표할 수 있다. 새롭게 공표될 신규 버전은 기본적인 취지에 있어 원판과 변함이 없을 것이지만, 새로운 문제나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각각의 판들은 버전 넘버를 사용해서 구별된다. GNU 약소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어떤 특정한 버전 넘버와 “그 이후에 출시된 버전”을 따른다는 사항이 명시된 프로그램에는 해당 버전이나 그 이후에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발행된 어떤 버전을 선택해서 적용해도 무방하다. 버전 넘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라이브러리의 경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어떠한 버전의 판을 적용해도 무방하다.

당신이 양도받은 라이브러리가 GNU 약소 일반 공중 라이선스의 버전 선택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고 명시하는 경우, 그 대리인이 특정 버전의 수용을 공표함으로써 당신이 그 라이브러리에 어떤 버전을 사용할지 영구적으로 결정된다.

※ 출처 : http://www.jopenbusiness.com/mediawiki/index.php/GNU_Lesser_General_Public_License_3.0

□ Apache 2.0 라이선스 한글

아파치 라이선스 버전 2.0

아파치 사용 허가서 버전 2.0, 2004년 2월 <http://www.apache.org/licenses/>

사용, 재생산과 배포를 위한 규정과 조건

1. 정의

"사용 허가서"는 이 문서의 1절부터 9절에 제시되어 있는 사용, 재생산과 배포를 위한 규정과 조건을 의미 한다.

"사용허가자"는 사용 허가서를 허가하는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에 의해 지명된 실체를 의미 한다.

"법인"은 행동하는 실체와, 그 실체를 조정 하거나 조정 되는 또는 공통의 조정하에 있는 모든 실체의 연합체를 의미 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조정"은 (i) 계약 또는 다른 것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그 실체를 조정 또는 관리 하는 힘 또는 (ii) 발행 주식 중 50% 이상의 소유권 또는 (iii) 그 실체로부터 수익을 얻는 소유권을 의미 한다.

"사용자"(또는 "사용자들")는 이 사용 허가서에 의해 허가된 권한을 행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 한다.

"소스 코드" 형태는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문서 소스 그리고 구성 파일과 같이 개작에 편리한 형태를 의미 한다. 그렇지만 이 세가지 형태로 국한 되지는 않는다.

"목적 코드" 형태는 컴파일된 목적 코드, 생성된 문서, 여타 미디어 타입으로 변환된 형태를 포함한, 소스 코드 형태를 기계적으로 변환하거나 번역하여 얻은 임의의 결과물을 의미 한다. 그렇지만 이 세가지 형태로 국한 되지는 않는다.

"저작물"은 이 사용 허가서 하에 만들어진 소스 코드 또는 목적 코드 형태의, 저작물에 포함 또는 첨부된 저작권 공지에 의해 명시된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의미 한다. (샘플은 아래 첨부에서 제공 한다.)

"2차 저작물"은 저작물에 기반한 (또는 파생된) 소스 코드 또는 목적 코드 형태의 저작물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편집상 개정, 주석 추가, 상세화 또는 기타 변경이 발생한 저작물을 의미 한다. 이 사용 허가서에 따르면, 2차 저작물은 저작물 그리고 2차 저작물로부터 분리된 형태 또는 인터페이스에 의해 단순히 링크된 (또는 이름에 의해 연결된) 저작물은 포함 하지 않는다.

"기여물"은 저작물 원래 버전 그리고 저작물 또는 그것의 모든 2차 저작물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 사항을 포함한 저작물로서, 저작권자가 직접 또는 저작권자에 의해 지명된 개인 또는 법인이 저작권자를 대신 하여 저작물에 포함 시켜 달라고 제출한 것을 의미 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제출됨"은 사용허가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보내진 전자적, 음성적 또는 기록적인 모든 대화물을 의미 한다. 대화물은 저작물에 관해 논의하고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허가자 또는 사용허가자의 대리인에 의해

관리되는 전자 메일링 리스트, 소스 코드 제어 시스템 그리고 이슈 트래킹 시스템에서의 대화물을 포함하지만 이것에만 국한 되지는 않는다. 다만 저작권자에 의해 "기여물이 아님"이라고 명확하게 표시 또는 기록되어 있는 대화물은 포함 되지 않는다.

"기여자"는 사용허가자 그리고 사용허가자에게 기여물을 보내어 그 기여물이 저작물에 반영 되었을 때 그 기여물을 보낸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 한다.

2. 저작권 사용 허가.

이 사용 허가서의 규정 및 조건에 따라, 각 기여자는 사용자에게 소스 코드 또는 목적 코드 형태로 저작물과 그 2차 저작물을 재생산, 2차 저작물 준비, 일반 공표, 일반 실행, 하위 사용허가 그리고 배포하기 위한 영구적인, 전세계적인, 비 독점적인, 비용 없는, 사용료 없는, 취소될 수 없는 저작권을 허가 한다.

3. 특허 사용 허가.

이 사용 허가서의 규정 및 조건에 따라, 각 기여자는 사용자에게 저작물을 제작, 사용, 판매 제안, 판매, 수입 그리고 전송할 수 있는 영구적인, 전세계적인, 비 독점적인, 비용 없는, 사용료 없는, 취소될 수 없는 (이 절에서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권을 허가 한다. 여기서 특허권은 공헌자에 의해 사용허가 될 수 있고, 기여물 단독 또는 저작물과 기여물의 결합에 의해 침해될 수 밖에 없는 특허 청구에 대해서만 적용 된다. 만일 사용자가 저작물 또는 저작물에 포함된 기여물이 직접적 또는 기여적으로 특허를 침해 했다고 주장하는 개체에 대해서 특허 소송(교차 청구 및 반소를 포함한)을 제기하면, 이 사용 허가서 하에 사용자에게 허가된 특허권은 소송이 신청된 날로부터 종료 된다.

4. 재배포.

사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한 수정 또는 수정 없이, 소스 코드 또는 목적 코드의 형태로, 임의의 미디어로 저작물 또는 2차 저작물의 복사본을 재생산 그리고 배포할 수 있다.

1. 사용자는 저작물 또는 2차 저작물의 수신자에게 이 사용 허가서의 복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2. 사용자는 수정한 파일에 자신이 파일을 수정하였음을 알아보기 쉽게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3. 사용자는 배포 하려는 2차 저작물의 소스에서, 원 저작물의 소스 코드에 있던 모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과 귀속 공지를 유지해야 한다. 단, 2차 저작물과 관계 없는 공지는 제외 한다; 그리고
4. "NOTICE" 파일이 저작물의 배포본에 포함되어 있으면, 사용자가 배포하는 모든 2차 저작물에도 그 NOTICE 파일에 담긴 귀속 공지 사본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포함 되어야 한다. 단, 2차 저작물의 어떤 부분에도 관련이 없는 공지는 제외한다. 그 공지는 적어도 다음과 같이 위치 중 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2차 저작물의 일부로 배포되는 NOTICE 텍스트 파일 안에; 2차 저작물과 함께 배포 되는 소스 또는 문서 안에; 또는 2차 저작물에 의해 생성되는 화면 안에 보통 나타나는 제3자 공지사항으로. NOTICE 파일의 내용은 정보 제공이 목적이므로 사용 허가서 조건을 변경 할 수는 없다. 사용자는 자신이 배포하는 2차 저작물 내에 저작물의 NOTICE 파일에 덧붙여 자신만의 귀속 공지를 배포할 수 있으나 그 귀속 공지가 사용 허가서 조건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만일 저작물에 대한 사용자의 사용, 재생산 그리고 재배포가 이 사용 허가서에 명시된 조건과 호환 된다면, 사용자는 자신이 수정한 부분에 자신의 저작권 문구를 추가하고 수정 부분의 사용, 재생산,

배포권에 대해 또는 2차 저작물 전체에 대해 부가적인 또는 이 사용 허가서와는 다른 규정 및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5. 제출된 기여물.

사용자가 명확하게 다른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저작물에 포함시키기 위해 사용허가자에게 의도적으로 제출한 기여물은 추가적인 규정 또는 조건 없이 이 사용 허가서의 규정과 조건을 따른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기의 어떤 규정도 사용자가 기여물에 관해 사용허가자와 맺은 별도의 사용 허가서의 규정을 대신 하거나 변경 하지 않는다.

6. 상표권.

이 사용 허가서는 사용허가자의 상품명, 등록상표, 서비스 마크, 제품명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저작물의 시초를 밝히거나 NOTICE 파일을 재생산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관습적으로 쓰는 경우에 한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

7. 보증 거부.

법에 의해 요구 되거나 문서상으로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허가자(공헌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포함하는 어떤 종류의 보증 또는 조건 없이, 적법한 권한, 무침해, 상업성, 특정 목적 부합성의 보증 또는 조건, 제한 없이 "있는 그대로"의 저작물(공헌물)을 제공 한다. 사용자는 저작물의 사용 또는 재배포의 적합성을 결정할 전적인 책임이 있고 이 사용 허가서 하에서 권한을 실행하는데 관련된 어떤 위험도 감당해야 한다.

8. 법적 책임의 한계.

기여자가 손해의 가능성에 대해 조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직무 태만을 포함한) 불법 행위, 계약, 또는 다른 형태로든, (고의적인 그리고 전적으로 태만한 행동 같이) 적합한 법률로 강제 되거나 또는 문서로 합의하지 않는 한, 어떤 사건 속에서 그리고 어떤 법률적 이론 하에서도, 기여자는 사용자의 손실에 대해 책임이 없다. 이 손실은 이 사용 허가서 또는 저작물의 사용 중단 또는 저작물의 사용 불가의 결과로 발생하는 직접, 간접, 특별, 우연 또는 중대한 손실을 포함 한다. (이 손실은 선의의, 업무 중단의, 컴퓨터 고장 또는 오동작의 손실, 또는 기타 모든 상업적 손해 또는 손실을 포함하지만 제한 되지 않는다.)

9. 보증 또는 책임의 추가.

저작물과 그것의 2차 저작물을 재배포 할 때, 사용자는 지원, 보증, 손해배상 책임 또는 기타 이 사용 허가서와 일치하는 법적 책임 및 권한을 받아 들이는데 대한 소정의 수수료를 요청하고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책임을 받아 들임에 있어 사용자는 오로지 자신의 책임하에 받아 들여야 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법적 책임 또는 지불 청구 등에 대해 기여자를 대신하여 배상금을 지불하고, 기여자를 보호하고, 각 기여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동의 하여야 한다.

규정과 조건의 끝

저작물에 아파치 사용 허가서를 적용 하는 방법

자신의 저작물에 아파치 사용 허가서를 적용 하려면, 다음의 틀을 갖는 공지에서 대괄호를 둘러 쌓인

부분을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대치해야 한다. (대괄호 자체는 포함해서는 안된다) 아래 공지는 파일 형식에 따라 적절한 코멘트 형식으로 둘러싸야 한다. 제3자의 아카이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파일 또는 클래스 이름과 목적인 "인쇄된 페이지"에 저작권도 같이 공지할 것을 권장 한다.

저작권 [년도] [저작자 명]

아파치 사용허가서, 버전 2.0 ("사용 허가서")에 의해 사용 허가됨 당신은 사용 허가서에 따르지 않고서는 이 파일을 사용 할 수 없다. <http://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에서 이 사용 허가서의 복사본을 구할 수 있다.

적합한 법률을 만족 하지 않거나 쓰기에 동의 하지 않는다면, 이 사용 허가서 하에 배포되는 소프트웨어는 명시적 또는 암시적인 어떤 종류의 보증 또는 조건 없이 기본적으로 "있는 그대로" 배포 된다. 사용 허가서에 따라 특정 언어에 대한 허가와 제한을 다루는 사용 허가서는 볼 수 있다.

※ 출처 : http://www.jopenbusiness.com/mediawiki/index.php/Apache_Software_License_2.0

□ BSD 라이선스 한글

BSD 라이선스

다음은 BSD 라이선스의 템플릿이다. 자신의 라이선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표시된 예에서 <소유권자>, <기관>, <연도> 부분을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대체하면 된다. 또한 선택적으로 3절을 생략하더라도 OSD를 따르는 것에 해당한다.

주의사항: 2008년 1월 9일, OSI 위원회는 FreeBSD 등에 사용되며, 마지막의 “no-endorsement 양도불가” 조항을 삭제하여 결과적으로 MIT 라이선스와 대략적으로 동등해진 “간략 BSD 라이선스”를 승인했다.

역사적 배경: BSD 유닉스에 사용되던 원(原) 라이선스에는 4개의 조항이 있었다. 그중 제3조항인 광고에 대한 조항은 U.C. 버클리코드를 사용하는 제품을 광고할때는 항상 그 코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 조항은 1999년 7월 22일에 캘리포니아주립대학의 기술라이센싱부서의 책임자가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그는 제3조항이 “완전히삭제”되었다고 발표했다. 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라이선스는 OSI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아래의 라이선스는 광고에 대한조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서문은 라이선스의 일부가 아니다.

<소유권자> = 캘리포니아주립대학평의원

<기관> =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버클리

<연도> = 1998

원 BSD 라이선스에서 보증부인의 “저작권 소유자와 기여자” 구문은 “평의원”과 기여자로” 해석된다. 라이선스 템플릿은 다음과 같다:

Copyright (c) <연도>, <소유권자>

All rights reserved.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한, 소스형식과 바이너리형식을 통한재배포와 사용은 수정여부에 관계없이 허용된다.

소스코드의 재배포는 위의 저작권표시와 여기 나열된 조건들, 그리고 아래의 보증부인 고지를 포함해야 한다. 바이너리형식으로 재배포할때는 위의 저작권표시와 여기 나열된 조건들 그리고 아래의 보증부인고지를 배포할 때 제공되는 문서 및 기타자료에 포함해야 한다.

사전에 서면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기관>의 이름이나 기여자의 이름이 본 소프트웨어에서 추출한 제품을 보증하거나 홍보하는데 사용 되어서는 안된다.

저작권자와 기여자는 이 소프트웨어를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제공하며, 상품성 여부나 특정한 목적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손해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저작권자나 기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손해, 우발적이거나 결과적 손해,

특수하거나 일반적인 손해에 대하여, 그 발생의 원인이나 책임론, 계약이나 무과실책임이나 불법행위(과실 등을 포함)와 관계 없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은 대체 재화나 용역의 구입 및 유용성이나 데이터, 이익의 손실, 그리고 영업 방해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출처 : <https://www.olis.or.kr/ossw/license/license/detail.do?lid=1003>

□ MIT 라이선스 한글

MIT 라이선스

저작권(C) <년도> <저작자 명>

이 문서에 의해,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한 제한 없이 소프트웨어를 다루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복사본과 관련된 문서("소프트웨어")를 획득하는 사람에게 변경의 자유가 허용 된다. 제한 없음은 사용, 복제, 수정, 통합, 공포, 배포, 하위 라이선스 그리고/또는 소프트웨어의 복사본의 판매와 공급된 소프트웨어를 가진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권한에 제한 없음을 포함 한다.

위의 저작권 표시와 이 허가 표시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복사본 또는 상당한 일부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소프트웨어는 특정한 목적과 침해 없음을 위해 상업성, 적합성의 보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어떠한 종류의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 된다. 어떤 경우에도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는 소프트웨어의 관계 안과 밖 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계약, 불법 행위 또는 기타 수행에 대해, 어떠한 소송, 손해 또는 다른 책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 출처 : <https://www.olis.or.kr/oss/license/license/detail.do?lid=1006>

[참고 자료]

- [1]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가이드 2.0”,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 2010.
- [2] Open Source Initiative, (<http://opensource.org/>)
- [3] GNU Korea, (<http://korea.gnu.org>)
- [4] 오픈 비즈니스 컨설팅, (<http://www.jopenbusiness.com>)
- [5] 저작권위원회, (<http://olis.or.kr/>)
- [6] Free Software Foundation, (<http://www.gnu.org/licenses/gpl-faq.html>)
- [7] OSS Compliance 핵심역량 구축 세미나, blackduck, 2011
- [8] blackduck, (<http://osrc.blackducksoftware.com/data/licenses/>)
- [9]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Comparison_of_free_software_licenses)
- [10] 삼성전자 오픈소스배포 센터, (<https://opensource.samsung.com/index.jsp>)
- [11] 소니 오픈소스배포 서비스, (<https://products.sel.sony.com/opensource/>)
- [12] Motorola 오픈소스 배포서비스, <http://sourceforge.net/motorola/>
- [13] eXpress Engine, (<http://www.xpressengine.com/>)
- [14] 고프레이어, (<http://gomdevel.gomtv.com>)
- [15] 전자정부프레임워크, (<http://www.egovframe.go.kr/>)
- [16] European Digital Rights, (<http://edri.org/edriagram/number5.15/gpl-skype-trial>)
- [17] “공개SW 라이선스 위반과 저작권 침해”, 김병일, 계간 저작권, 2009.
- [18] KLDP, (<http://kldp.org/node/55839>)
- [19] "공개SW 라이선스 알보면 '큰코'", 디지털타임스, 2006.06.14.
- [20] 블로터닷넷, (<http://www.bloter.net/archives/22387>)
- [21]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http://www.fsf.org/licensing/compliance/>)



공개SW 라이선스 가이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